

ISSN 2734-1275



제5권 제1호

Vol. 5, No.1, Jun 2024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재해석」 제5권 제1호의 오른쪽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 혹은 스마트폰 어플(보이스아이)을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ISSN 2734-1275



제5권 제1호

Vol. 5, No.1, Jun 2024

장애의재해석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REINTERPRETATION
OF DISABILITY



목 차

• 해외 개인예산제도 형성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 이동석	1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탈가족화 및 재가족화 현상과 대안 탐색 김광백, 전지혜	33
•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 이아정, 정진자, 범효이	59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 인식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박영숙, 전희정	85
•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예외적 인정을 중심으로 화지원, 김민지	111
•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비판적 분석 : 장애인 당사자 시각과 대리치유(cure by proxy) 관점 이상현	131
•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내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남미정	157
•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을 통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윤인지, 이준우	181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 – 31

해외 개인예산제도 형성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

이동석*

이 연구는 해외 개인예산제도 형성을 주도한 세력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내에서의 이용자 선택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예산제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8개국, 11개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는 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고,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미국 Cash and Counceling,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는 모두 장애인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장애인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다. 개인예산제도의 이용자 선택 정도와 제도형성 주도 세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 할수록 이용자 선택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 정도의 한 요소인 현금사용의 용통성보다는 다른 한 요인인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과 주도 세력 간의 상관성은 높았다. 즉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할수록 개인예산제도의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4년에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모형으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제도 개발에 장애인 및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개인예산제도, 이용자 선택권, 제도형성 주도 세력, 정보와 지원시스템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현금(cash)을 제공하는 형태를 통칭하는 것으로(Ungerson, 2004), 이를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Glasby & Littlechild, 2009). 하지만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제도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이동석, 2015a).

개인예산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급여 사용의 융통성이 높아야 하고, 정보 및 지원시스템의 기능이 잘 작동하여야 한다(이동석, 2015a). 현금급여로 구매할 수 있는 영역의 폭과 급여별 용도 제한 등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에 따라 선택권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한 일반 재화나 서비스 이용자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보습득의 부족, 관리능력의 부족 등에 따라 정보 및 지원체계가 존재해야만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Arksey and Kemp, 2008; Glasby and Littlechild, 2009). 따라서 개인예산제도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은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 정도와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이동석, 2015a).

현금급여 사용의 융통성은 현금사용 방식의 유연성과 서비스 구매 영역의 다양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즉 케어매니저 등 관리의 정도가 약하고, 서비스 구매 계약 시 단가 등에 관한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다양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이 잘 작동하여야 하는데,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개인예산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사용의 융통성과 정보 및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동석, 2015a).

그런데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선택권 정도가 같은 것은 아니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이동석, 2015a; Arksey & Kemp, 2008). 오스트리아 개인예산제도의 경우 현급급여 사용의 융통성은 상당히 크다. 지원계획이나 사례관리자의 통제가 없으며, 정산도 필요 없고, 지원 인력과의 임금 계약이 자유롭다. 또 고용 관계 외에도 구매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나 재화 구매가 가능하고, 고용관계는 친구 등 모든 제공자와 가능하고, 시설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스웨덴 활동지원수당의 경우 융통성이 상당히 작다. 지원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정산이 상당히 엄격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임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고용 관계에 따른 구매만 가능하다. 또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까지 지원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자 범위는 다양하며, 시설서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의 자기주도지원서비스는 정보제공, 증개, 지불정산과 같은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지불정산지원서비스의 경우 지방정부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에서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장기요양수당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모든 국가의 선택권 정도는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에 모의적용 사업으로 시행한 모형¹⁾의 경우 현금급여 사용의 융통성은 다소 제한적이고, 지원시스템은 부분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개인예산 이용 범위는 유연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이용 범위를 6개 지원 영역으로 제한하고, 또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용 범위를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정산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담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 담인력 1인이 모든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이한나 외, 2024).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전담지원인력 없이 자체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개인예산제도 모형에서 이용자 선택권 차이의 발생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제도를 형성한 주도 세력의 차이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정책 형성이나 정책변동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원용되는 것은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Baumgartner의 단절적 균형모형 등이다(김성수, 최창근, 2019). 이와 같은 모형들은 모두 행위자 또는 주도 세력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특정 정책 이슈를 둘러싼 신념을 중심으로 찬성 및 반대의 옹호연합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연구는 찬성과 반대 행위자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류이현, 송효진, 2022). 정책흐름모형에서는 문제, 정책, 정치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는 데, 언론과 여론 주도 세력과 같이 사회문제를 규정하고 잠재적인 해결 방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계를 중시한다(장진영, 유연정, 2023). 단절적 균형모형에서도 정책 분야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 하위체계 간의 경쟁을 중시한다(오서은, 2023). 이처럼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서 정책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책 형성이나 변동을 주도하는 세력의 신념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제도별로 개인예산제도를 추동한 세력을 살펴보고, 추동 세력에 따

1)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사업 시행모형은 모델1(급여유연화 모형)과 모델2(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로 구분되어 있으나, 모델2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모델1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모델1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라 각국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이 달라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인 예산제도 제도화와 관련된 장애계의 노력 필요성에 함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예산제도 관련 연구에는 제도형성 과정이나 제도 추동 세력과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를 보면, 2010년부터 독일(원소연, 2010; 남용현, 2014), 영국(유동철, 2012; 이동석, 김용득, 2013; 이승기, 이성규, 2014; 정성희, 문영임, 2023), 미국(이동석, 2015a; 김경미, 2020), 호주(송승연, 김효정, 장선미, 2022; 이한나, 2022; 장선미, 2022)의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또는 함의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해 봄에 따라 실천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김동홍, 정종화, 2021; 광설아, 정종화, 2022)가 나타났고, 개인예산제 도입 논쟁에 따라 개인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연구(허준기 외, 2022; 안형진, 진형식, 2023)가 진행되었다. 이후 개인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구체적인 운영 모형을 찾게 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한나 외, 2020; 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실행이 가능한 모형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룰 뿐, 우리나라의 정책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및 변동을 위한 주도 세력을 살펴보고, 이후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미 발표된 개인예산제 이용자 선택권 정도와 관련된 연구(이동석, 2015a)와 비교를 통해 개인예산제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과 같은 8개국에서의 정책 형성 주도 세력을 살펴보자 하였다. 이후 개인예산제 도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주도 세력이 장애인 당사자일수록 이용자 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의미가 있다.

II. 개인예산제도의 소비자주의와 권한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도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용자 선택권의 증진은 신자유주의 진영에서도 찬성하였고,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을 주장하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권한강

화를 응호한 장애 운동 진영도 찬성하였다. 그러나 보니 일부에서는 개인예산제도가 공공지출을 제한하면서 소비자주의 개념을 사회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집합주의와 공공서비스 정신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개인예산제도를 주도한 세력은 크게 장애인 당사자의 임파워먼트를 중시하는 장애 운동과 신자유주의 영향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이동석, 2015b).

1. 신자유주의 진영의 논리

1970년대 경제위기 및 정치 양극화 이후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시장경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방해할 정도로 공공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독점이 다양한 욕구 만족 방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감소시켰으며, 또한 전문가주와 관료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이었던 교육, 주거, 보건,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서 소비자주권과 선택권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었고, 다양한 시장주도개혁이 실행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현물서비스공급이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급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따라서 관료주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온정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인마다 욕구가 다르기에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소비자가 되어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대안 중 선택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서비스나 제공자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사정을 통해 서비스에 사람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에 서비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게 되었고, 이 흐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물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Clarke, 2006).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를 소비자로 바꾸려는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완전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대안의 종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안의 상세 특징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선택에서 다른 선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서비스 질에 대한 통제, 이용자 보호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신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또 다른 국가개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 자립생활 진영의 논리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용자 통제, 권한강화, 자결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장애 운동세력들은 선택을 통해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재가서비스가 고급 기술이 필요치도 않고, 의료적이지도 않고, 광범위한 훈련과 감독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결정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등 이용자를 수동적인 서비스 수급자에서,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택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Morris, 2006).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권력관 계를 평등하게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스스로 보조인을 선택하고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현금에 기반한 해결책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전달방식을 자기주도지원³⁾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민인 이용자가 자신의 지원에 대해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Carr, 2010). 자기주도지원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 실천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주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 지원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예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 2) 자립생활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해방운동가의 정책과 연구의 인식론적 토대가 된 이념이다. 이것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반대되는 사회적 모델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여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에 숨어 있는 기초 개념이다. 장애의 정치학이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촉진 및 유지와 상당히 관련되는 것은 두 번째 개념에 따른 것이다.
- 3)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은 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슷한 의미로 미국에서는 참여자 주도 서비스(participant-directed services)라고 부른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국가 및 제도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예산제도 형성을 주도한 세력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내에서의 이용자 선택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용자 선택권의 경우 이미 발표된 연구(이동석, 2015a)가 있기에,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국가 및 제도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⁴⁾,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 제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미국 Cash and Counceling, 미국 자기주도 지원서비스와 같은 8개국, 11개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제도형성 주도 세력과 관련된 자료 수집은 선행연구, 국제기구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이용자 선택 정도는 이동석(2015a)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동석(2015a)은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 정도와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한 후 이를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퍼지소속점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이동석(2015a)의 연구에서는 두 지표에 따라 4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 비교분석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이용자 선택 정도를 계산하였다.

이후 정부 주도를 0으로, 장애인 주도를 1로 변환⁵⁾한 후, 주도 세력과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 간의 상관관계, 주도 세력과 정보 및 지원시스템 사이의 상관관계, 주도 세력과 전체 선택권(두 지표의 평균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다만 사례 수 부족에 따라 유의성이 상당히 떨어짐에 따라 상관계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사례 간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
- 4)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 중 상당 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관련 개인예산제도로 분석하였다.
- 5) 정부 주도성과 장애인 주도성을 0과 1이 아닌 선택권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속선상의 점수로 측정할 수도 있으나, 각 국가 및 제도의 주도 세력 검토 결과 어느 한쪽의 주도성이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0과 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개인예산제도 형성의 주도세력과 이용자 선택권

1. 개인예산제도의 주도 세력

8개국에서 개인예산제도를 형성한 주도 세력을 살펴보면,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미국 캐쉬앤파운슬링(Cash and Counseling),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는 장애 운동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표 1〉 각국 개인예산제도 주도 세력

국가 및 제도	주도 세력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장애인 주도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장애인 주도
이탈리아 동행수당	정부 주도
독일 현금급여	정부 주도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정부 주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	정부 주도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장애인 주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장애인 주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장애인 주도
미국 캐쉬앤파운슬링(Cash and Counseling)	장애인 주도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	장애인 주도

1)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스웨덴은 대표적인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수당’이다. 이 제도는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고 지원 필요성에만 의존하여 결정되고, 주당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활동보조보상법(LASS)’에 의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보상법에 의한 활동지원에 대한 재정은 사회보험청에서 담당한다. 주당 20시간 미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LSS)’에 따라 지방자치시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두 법 중 어디에 해당되든, 즉 주당 20시간의 욕구가 있든 아니든, 20시간까지는 지방자치시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청은 20시간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한다(Fukushima et al., 2010).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 시간에 더해서, 개인은 집안일에 대한 지원, 근무지에서의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여가 지원, 여행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서비스 구매를 위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 과업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일시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경우, 자치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여행할 경우 동반하는 활동보조인의 입장료, 식사비, 숙박비, 이동비용 등에 대한 지불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활동지원 수당의 사정 시 요구할 수 있다. 지원 필요성이 영구적으로 변할 경우, 장애인은 언제든 재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수당이 도입된 것은 자립생활 운동가인 라츠카(Ratzka)의 노력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활동지원에 대한 직접지불을 경험했던 라츠카는 1982년 발표한 논문에서 활동지원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정의했다. 그는 장애수당을 확장한 형태로 개인활동지원에 대한 직접지불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보험청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자 중 선택을 하여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할 수 없거나 스스로 제공자를 고용할 수 없는 이용자는 자치시와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83년 라츠카는 스웨덴에 자립생활 철학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의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했고, 1984년 스칸디나비아 자립생활 조직인 '자립생활을 위한 스톡홀름 협동조합(STIL)'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구현할 목적으로 1987년 1월부터 2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톡홀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보건사회부가 재정을 지원했다. 2년 반 동안의 시범사업 이후 '자립생활을 위한 스톡홀름 협동조합'은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스톡홀름시가 주체가 되어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Westberg, 2010). 1989년 8월 시는 모든 장애인이 직접지불을 받아 자신의 지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한편 다른 시에서도 이 모형을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Westberg, 2010).

또 1988년 국회 위원회는 재가 돌봄 및 집단 주거시설의 품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집권한 보수주의 연립정부는 활동지원제도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고 왔고, 자립생활이 일반 정치 논쟁의 상징이 되었고,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사회부 장관은 활동지원제도의 입법을 주도했다. 입법 과정에 정부의 열성적인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제도를 만들어 내고, 정치권을 움직인 것은 장애인들의 노력이었다. 따라서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던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2)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강력하고 집합적인 장기 돌봄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국가강제보험방식으로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인 ‘장기요양보험법률(AWBZ, the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시설 돌봄 또는 요양원 입원처럼 건강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는 돌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이후 모든 연령대의 의존적인 사람에 대한 장기 돌봄 비용을 제공했다. 초기에는 주로 시설 돌봄을 목표로 했지만, 점점 더 포괄적인 재가 지원서비스까지 확장되었다(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2).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고, 또한 전문가의 보호주의와 과도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화에 따른 돌봄 시장이 발전하게 되었고, 친척, 친구 등이 지원자가 되는 비공식적 돌봄도 발전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현금지급 모형인 개인예산제도(PGB, the Persoongebonden budget)도 이 개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결국 개인예산제도(PGB)는 장기요양보험(AWBZ)제도의 일부로 운영되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도는 1991년 시범사업으로 300명의 예산 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 되었고, 점점 확대되어 1995년에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식 구성 요소가 되었고, 2001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Mot et al., 2010).

이와 같은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는 자립생활을 향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운동과 이용자들의 소송에 따라 추동되었다. 우선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은 노인과 장애인 운동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전문가의 보호주의와 과도한 권력을 비판하면서, 더 많은 자유와 자결권, 더 많은 개인의 책임을 추구했다(Kremer, 2006). 둘째, 이용자 집단의 소송에 따라 재도가 확대되었다. 돌봄 수요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예산 상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이용자단체들은 1999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험 적용 돌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예산지원 제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고, 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직원 모집과 교육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돌봄 제공기관들이 하룻밤 만에 생신량을 늘릴 수는 없었다. 개인예산제도가 이런 상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즉 공급기관의 증가가 돌봄 수요를 따라오지 못함에 따라, 기관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현금지급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매년 작은 일정량의 예산만 배정되었지만,

2001년부터 이 제한이 제거되었고, 현물 서비스 대신 현금 지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1995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개인예산을 도입하게 한 힘은 장애인 운동이 주도하였다. 또 2001년 본격적인 확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이용자들이 예산 상한이 불법임을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3) 이탈리아 동행수당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개인예산제도는 동행수당(*indennità di accompagnamento*)이다. 동행수당은 1980년에 도입된 전국적인 현금급여 조세에 기반하여 국립사회보장협회(INPS)가 지급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사정하고 재산에 상관없이 지불된다. 현금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사용에 대한 통제는 전혀 없다. 돌봄 계획도 만들어지지 않고,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현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Tediosi & Gabriele, 2010).

이탈리아 동행수당은 늘어나야 하는 돌봄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탈리아에서 국가의 돌봄서비스 정책은 취약하고 분절적이었다. 또한 가족은 오랫동안 돌봄의 주체로 여겨져 왔다(Saraceno, 2003). 무급의 비공식적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돌봄의 원천이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친척을 지원하는데 과도한 법률적 책임을 갖고 있었다. 시설 또는 가정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돌봄은 주변적이었다(Gori & Da Roit, 2007).

그런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나 공식적인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장기요양 시스템은 늘어나는 수요와 부적절한 공공 자금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금급여는 늘어나는 욕구와 부족한 지원 사이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현물서비스에 비해 더 저렴하며, 시설 돌봄에 비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시설입소의 개연성이 있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집에 머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또 현금급여는 이탈리아의 기존 사회보장 정책과도 잘 어울렸다. 이탈리아의 복지 시스템은 항상 현금급여를 선호해왔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해 현

금을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정치적으로 더 쉽게 선호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현금급여의 성장은 복지서비스 전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물서비스가 제한적이었던 현실에 따라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리려 해도 여러 문제들이 지역 차원에서 발생했다. 이때 현물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공공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Gori & Da Roit, 2007).

이처럼 이탈리아 동행수당은 장애인지원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재정을 절감하고, 정치적으로 수월한 방법을 정부가 선택하여 추진한 것이다. 결국 이탈리아 동행수당은 정부 주도 모형이다.

4) 독일 현금급여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에 대해 포괄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20년 넘게 논의한 끝에, 1994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1993년 ‘사회장기요양보험’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994년에 통과됨에 따라 1995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는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고, 재가요양급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설요양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Schneider & Reyes, 2007).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질병보험에 법적으로 가입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장기요양의 불필요한 분절을 막기 위해, 서비스는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에게도 공급 가능하였다. 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들은 개인 가정 또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둘의 혼합형도 선택할 수 있다(Schulz, 2010).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중 개인예산제도는 현금급여이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사람들은 비교적 제한된 현금의 양을 받게 되는데, 현물급여의 50% 정도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현금은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을 돌보는 가족, 이웃, 수발인 등에게 제공한다.

독일은 1995년까지 장기 돌봄 이용자에 대한 공공지원은, 독일 복지국가의 특징인 사회보험체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조세에 기반하고 있었다. 또한 자산조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봄의 욕구가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

람은 196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사회부조법(BSHG)에 의한 사회부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Kremer, 2006).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Cuellar & Wiener, 2000). 첫째, 장기요양의 높은 비용 때문에, 장기적인 장애를 갖게 되면 빈곤의 위협이 높아졌다. 둘째, 빈곤해 지면 공공부조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이 너무 과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진행되었다. 셋째,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기여했음에도 이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자비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존재했다.

이에 콜 행정부는 1994년 장기요양의 이충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의 첫 충은 고용과 관련되고 기여에 기반한 장기요양보험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아있었다. 장기요양보험은 법률적인 건강보험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이었다. 민간 건강보험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은 민간 장기요양보험을 획득하여야 했다. 1994년 개혁의 공언된 목표는 첫째, 장기돌봄비용에 대한 주정부와 자치시의 재정책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장기돌봄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장하고, 넷째, 비공식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Schulz, 2010).

결국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는 장기적인 기능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압력보다는 현물급여액의 약 50% 수준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책적인 고려가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정책을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는 정부 주도형 모형이다.

5)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현금급여를 통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50% 지원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몇 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시행을 하면서 지불금액이 늘어나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들의 기여가 감소함에 따라, 2000년부터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적자로 운영되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책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종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 하나가 현금급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례관리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사업이 되었다(Garms-Homolová & Busse, 2014).

사례관리예산제도는 현금급여와 더불어 사례관리 급여를 제공한다. 즉, 이전과는 다르게 사례관리가 포함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현금급여를 받은 사람은 현금급여를 사회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전할 수는 없다. 현금급여의 질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관리자들의 상담(counselling)은 필수가 되었다.

이처럼 2004년부터 시행된 사례관리예산제도는 시설 돌봄으로의 이전을 막거나 지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는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형 모형이다.

6)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

프랑스는 60세를 기준으로 두 인구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지원은 시설급여와 같은 현물서비스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à l'Autonomie)과 같은 현금서비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돌봄 중 현금을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도 모형은 장기요양수당제도이다(Martin & Le Bihan, 2007).

장기요양수당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급자는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 요양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또는 복지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요양서비스 공급을 받고 비용을 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Joël et al., 2010).

이와 같은 장기요양수당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장기요양특별급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 장기요양특별급여에 대한 많은 비판에 따라 취약한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사회당원이며 당시 장관이었던 장-피에르 쉬에르(Jean-Pierre Sueur)에 의해 2002년 4월 장기요양수당제도가 법제화되었다(Martin & Le Bihan, 2007). 장기요양수당제도는 대상자 폭을 확대하였고, 요양 등급에 따라 결정된 ‘돌봄 계획’은 일정 정도의 돈에 대한 권리를 제공했다. 요양 등급 1의 경우 최대 1,067 유로, 요양 등급 2의 경우 915 유로, 요양 등급 3의 경우 686 유로, 요양 등급 4의 경우 457 유로를 권리로 인정했다. 또 이 개혁은 이용자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Joël et al., 2010). 소득 수준이 특정 기준 값 이상일 경우 수급자

는 수입 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2002년 4월 다시 보수당 정부로 회귀하면서, 우파 정부는 돌봄서비스 비용의 증가가 이전 사회당 정권의 돌봄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2003년 4월, 본인부담금의 기준선이 되는 소득 월액을 943유로에서 623유로로 축소하였다(Joël et al., 2010). 이에 따라 본인부담은 증가하고 정부의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전 체계에서 수급자 중 67%가 본인부담금이 없었는데, 새로운 체계에서는 36%만이 면제되었다.

결국 2002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수당제도와 그 이후의 변화는 모두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7)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오스트리아에서 장기요양 관련 제도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장기요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정책은 매우 분절적이었다. 급여는 노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제한되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불되었다.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원칙에 근거하여 많은 지방정부들은 시설 돌봄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이전, 재가 돌봄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했고, 심지어 요양 돌봄에만 제한되기도 했다(Osterle & Hammer, 2007). 즉, 1993년까지 오스트리아 장기요양 급여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며, 공공부조 측면에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었고, 지방정부간, 심지어 같은 지방정부 내에서도 현물급여 내용에서 많은 편차가 존재하였다. 결국 매우 분절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 돌봄의 수요를 모두 책임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3년 오스트리아는 장기요양 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도구로써 보편적 대상자를 갖는 일반적 장기요양수당제도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은 연방장기요양수당법(Bundespflegegeld)에 의해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수당의 목표는 돌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보상하고, 적절한 돌봄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과 욕구에 기반한 삶의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Riedel & Kraus, 2010). 이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스트리아에서는 현금급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의 핵심적인 영역은 장기요양수당(Pflegegeld, 개인예산)제도이다.

장기요양수당은 돌봄 욕구 때문에 발생하게 된 추가적인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꼬리표

가 붙은 급여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자유롭게 수당을 사용할 수 있고, 수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돌봄 욕구에 기반하여, 필요한 개인 서비스와 지원의 양의 수준이 결정된다. 돌봄 욕구의 원인과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이나 자산에도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가 돌봄의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지불되고, 시설 돌봄의 경우에만 급여가 시설의 계좌로 바로 전달된다(Riedel & Kraus, 2010).

1993년 개혁을 추동한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장애운동세력은 이 논의를 주도했고, 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을 보다 보편적인 의존의 사회적 위험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현금 제공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는데, 수급자의 권한강화와 자결권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며, 장기요양을 시장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주정부 세 곳에서 욕구와 자산조사에 기반한 현금 급여 모형을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 즉, 장기요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강력한 전통의 기반 위에서 이미 일부 지방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수당을 주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장애인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확대를 요구했고, 이용자의 선택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시장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장기요양정책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수당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는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8) 영국 직접지불제도

1993년에 시행된 ‘지역사회 돌봄 법(National Health Service Community Care Act)’은 돌봄서비스의 민영화를 표방한 개혁이었으며, 실제로 표방한 정치적 슬로건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통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이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서비스가 민영화된다고 해서 정보와 선택능력에서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용자단체에서 정부가 표방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은 허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비스를 민영화한다고 자동적으로 선택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제공주체의 민영화 대신 정부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Zarb & Nadash, 1994). 이런 요구에 의하여 1996년에 ‘지역사회 돌봄 법(서비스 현금지급제도)(Community Care (Direct Payments)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직접지불제도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Glasby & Littlechild, 2009).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18세부터 65세까지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용자는 지급받은 현금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거나, 보조기기나 특별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외식하거나,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중 4주 이상 시설거주 돌봄을 구매하거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입할 수는 없다(이동석, 김용득, 2013).

이처럼 직접지불제도는 광범위한 장애인 권리운동, 특히 자립생활운동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자체장애인의 주도적인 요구에 의해 도입되다 보니, 제도 초기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노인이 제외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노인운동단체 및 장애인운동단체의 노력에 따라 2000년부터 노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영국 직접지불제도는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9) 영국 개인예산제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정부재정지출의 10% 내외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직접지불을 선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서비스 제공인력에 지불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정산 보고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결국은 돌봄 제공자를 이용자가 고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 단체는 다시 이용자 참여를 진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늉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였다(Hatton et al., 2008).

영국 개인예산제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사회에서 융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되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던 사람들 및 장애운동단체들은 직접지불제도를 발달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전반을 개혁하고자, 개인예산제도 모형을 개발했다.

이 제도는 직접지불제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거하고, 동시에 발달장애인과 같이 직접지불제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직접지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개인예산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불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예산으로 받은 현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개서비스(brokerage service)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용자는 지방정부 또는 민간 서비스 조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가족이나 친척도 가능) 중개인(broker)에게 서비스 이용 주문을 주면, 중개인은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대행한다(Glasby & Littlechild, 2009).

이 모형을 개발한 인컨트롤(InControl)이라는 독립기관이 지방정부와 협약을 통해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 정부도 2005-06년에 보건부, 노동부 등의 자금을 통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시범사업(individual budgets)을 진행하였으나, 법률개정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만을 통합하여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만 갖고 2007-08년에 잉글랜드의 13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Individual Budgets Evaluation Network (IBSEN)에 의해 수행되었다(Duffy & Waters, 2008).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영국의 전체 지방정부에, 모든 돌봄 서비스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결국 영국 개인예산제도는 소비자 주의와 권한강화에 기반하여, 자립의 개념을 현금급여의 사용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려는 장애인단체의 운동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10) 미국 캐쉬앤파운슬링(Cash and Counseling)

취약한 장애를 가진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역사적으로 재가 돌봄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발언권이 없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재가 돌봄 기관들은 주중 업무 시간 동안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1965년 입법된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공급자들에게만 상환을 해주었다. 자격기준은 면허, 자격, 전문적 훈련, 슈퍼비전 등처럼 상당히 의료적이었다. 이런 자격기준에 따라 메디케이드 공급자들은 개별적으로 고용되는 공급자에 비해 더 비싸고 덜 접근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과업의 질은 더 훌륭하지 않았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자립생활운동을 하던 장애인들은 참여자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에드 로버츠와 쥬디 휴먼과 같은 장애권리운동가들은 활동지원서비스(PAS)의 ‘자립생활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은 고용, 해고, 일정잡기, 훈련, 감독,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지불에의 참여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DeJong,

1981). 이 모델은 나중에 ‘소비자 주도 개인지원서비스(consumer-direct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CD-PAS)’로 불렸다. 1980년대 로버츠와 휴먼에 의해 만들어진 두 노집단인 ‘세계장애인연구소’는 ‘소비자 주도 개인지원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가서비스에 대한 현금지급을 요구하였다.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보조인에게 지불을 한다면, 공공이나 제 공기관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돌봄 제공자의 고용주가 되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Litvak et al., 1987).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장기요양 비용을 낮춘 창조적 정책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조적 정책을 지원해온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은 1990년대 중반 자기결정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19개 주에 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가 법 1915(c)에 따른 메디케이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지역 및 재가기반 서비스 웨이버 프로그램(the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waiver program)이 되었다. 이후 이 재단은 1990년대 말 다시 캐쉬앤키운슬링(Cash and Counseling, C&C) 1차 시범사업에 교부금을 지원했고 3개 주에서 평가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의 조사 및 시범사업(1115 조) waivers(면제)를 획득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발전되었다(Doty et al., 2007). 따라서 서비스 비용이 전통적인 개인지원서비스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캐쉬앤키운슬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개인들이 자신의 기능적 지원 욕구를 최선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공급자들이 받았을 양과 동일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개인들에게 주었다. 또한 예산은 그들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돋기 위한 상담에도 지불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현금급여를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이 HCBS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른 일반 구입자들이 누리고 있는 동일한 선택과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 캐쉬앤키운슬링 프로그램은 자립생활을 주장하는 장애인 운동의 영향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장애인 주도 모형이다.

11)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2차 캐쉬앤키운슬링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WJF)의 후원으로 실시될 수 있었으며 1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12개 주가 참여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재단(RWJF)과 아틀란틱 자선재단(Athlantic Philanthropies)은 2009년 4월 보스톤 칼리지에 ‘참여자주도서비스를 위한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for Participant- Directed Services)’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캐쉬앤파운슬링으로부터 교훈을 이용하여,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참여자 주도 선택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및 도구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연구와 정책의 노력을 조합하고, 전국 참여자 네트워크 (National Participant Network)를 설립하여 참여자들과 돌봄 제공자들을 지원하였다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Participant-Directed Services. 2014).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현재 미국의 개인예산제도는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적자감소법(Deficit Reduction Act;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의해 주정부는 개인예산제 모형의 자기주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1915(i)와 1915(j)와 같은 두 가지 세입을 확보하게 되었다. 1915(i)는 주정부가 연방 가이드라인 내에서 특정 집단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HCBS급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예산과 같은 자기주도지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15(j)에 의해 등록한 사람은 부모나 배우자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현금지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재화, 서비스나 기구를 구입할 수 있다 (Saucier et al, 2012). 또한 예산이나 가능한 구입목록에 없더라도 재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양을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주정부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2005년 이후 개인예산 모형을 사용하는 자기주도 지원이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도지원서비스(Participant Direct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PD-LTSS)가 활성화되었다. 자기주도지원서비스란 참여자 또는 가능한 경우 그들의 대리인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용 가능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할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지원서비스 모델은 전통적인 기관 전달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자기주도지원서비스(개인예산제도)는 장애운동과 장애운동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2. 제도형성 주도 세력과 선택권 보장의 관계

이동석(2015a)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이 크고, 현금급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지원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여야 한다(Yoshida et al., 2004)고 주장하면서, 8개국 11개 개인예산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정도를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과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에 따라 측정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

하여 유형화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 선택 정도는 이동석(2015a)의 연구에서 측정한 현금급여사용 퍼지소속점수와 정보와 지원시스템 퍼지소속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동석(2015a)에서는 두 지표에 따라 유형 분석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이용자 선택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용자 선택 정도가 큰 순으로 보면, 영국 개인예산제도(0.780),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0.755),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0.595),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0.500), 독일 현금급여(0.485), 미국 캐쉬앤판슬링(0.480),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0.475), 이탈리아 동행수당(0.460), 영국 직접지불제도(0.280),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0.25),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0.225)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 개인예산제도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의 정도를 살펴보면, 정부가 주도한 경우보다 장애인이 제도 형성을 주도한 경우 이용자 선택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0.541(유의확률 0..085)로 나타났다.

〈표 2〉 각국 개인예산제도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의 정도

국가 및 제도	주도 세력	현금급여사용의 융통성 퍼지소속점수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정도 퍼지소속점수	이용자 선택정도 퍼지소속점수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장애인	0.16	0.79	0.475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장애인	0.27	0.92	0.595
이탈리아 동행수당	정부	0.87	0.05	0.460
독일 현금급여	정부	0.92	0.05	0.485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정부	0.41	0.09	0.250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	정부	0.05	0.40	0.225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장애인	0.95	0.05	0.500
영국 직접지불제도	장애인	0.16	0.40	0.280
영국 개인예산제도	장애인	0.69	0.87	0.780
미국 캐쉬앤판슬링	장애인	0.09	0.87	0.480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	장애인	0.56	0.95	0.755

자료: 이용자 선택과 관련된 자료는 이동석(2015a)를 원용하고, 주도 세력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임

물론 독일 현금급여의 경우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용자 선택 정도가 어느 정도 높으나, 이는 현금을 주고 어떤 관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 경우 이용자 선택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방임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현물급여의 50%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영국 직접지불제도는 장애인이 주도했지만 이용자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 증가를 우려하여 제도를 계속 반대했던 보수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현금급여와 영국 직접지불제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제도들은 장애인이 주도한 경우 정부가 주도한 경우보다 이용자 선택의 정도가 더 컸다.

제도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전체적인 선택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택권의 한 요소인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는 주도 세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0.703(유의수준 0.016)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장애인이 주도할 경우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주도한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0.95),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0.92), 영국 개인예산제도(0.87), 미국 캐쉬앤팡슬링(0.87),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0.79)은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모두 장애인이 주도할 사례였다. 반면 정부가 주도한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0.09), 독일 현금급여(0.05), 이탈리아 동행수당(0.05)은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이용자의 현금사용용통성은 제도 형성 주도 세력과 상관관계는 -0.219(유의수준 0.5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정부주도일 경우 현금사용용통성이 일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도 세력과 현금사용용통성은 전반적으로 상관성이 떨어진다. 독일 현금급여(0.92)와 이탈리아 동행수당(0.87)과 같이 정부가 주도한 제도의 경우 현금사용용통성은 컸으나, 현금 수당처럼 통제없이 사용하는 모형이라 서비스 필요 정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처에 대한 제한 등 통제없이 수당처럼 지급되면 기초생계 수준의 소득보장 수준을 넘을 수 없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이 주도한 영국의 개인예산제도(0.69), 미국의 자기주도지원서비스(0.56)와 같이 사용처를 사회서비스에 제한하고 정산을 엄격하게 하는 모형이 오히려 현금사용의 용통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종합하면 제도형성을 주도한 세력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 정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주도할수록 장애인의 선택 정도는 높아졌다. 특히 현금사용용통성보다는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정도는 주도 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주도할수록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이 높았다.

V. 결 론

이 연구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및 변동을 위한 주도 세력을 살펴보고,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인예산제 이용자 선택권 정도는 이미 발표된 연구 (이동석, 2015a)를 활용하였고, 비교를 통해 개인예산제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과 같은 8개국에서의 정책형성 주도세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정책형성 주도세력 분석결과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 독일 사례관리예산제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는 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고,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당제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미국 캐쉬앤파운슬링, 미국 자기주도지원서비스는 모두 장애인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장애인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다. 특히 소득보장 수당과 비슷하게 개인예산제 모형을 만들었던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대체차원으로 제도를 개발했던 프랑스 노인장기요양수당, 독일의 사례관리형 개인예산제도는 정부주도로 모형이 개발됐다.

둘째, 개인예산제도의 이용자 선택 정도와 제도형성 주도 세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할수록 이용자 선택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주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발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보다는 현물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돌봄으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에 의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목적(김혜지, 최영, 김남연, 2022)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선택 정도의 한 요소인 현금사용의 융통성보다는 다른 한 요인인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과 주도 세력간의 상관성이 높았다. 즉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할수록 개인예산제도의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수준이 높아졌다.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이 높아 실제 선택 가능성이 높았던 스웨덴의 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의 개인예산제도,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미국의 캐쉬앤파운슬링과 자기주도지원서비스는 장애운동의 결과 제도화된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예산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장애인단체와 같이 제도를 강력히 지지하는 단체가 제도를 계속 개발하고 보완하면 조금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도가 만들어

지지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정부가 제도를 주도할 경우 이용자 친화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개인예산제도를 만들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제도형성을 주도할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을 시행하고, 2024년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 개인예산제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모형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인예산을 통한 장애인 선택 정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했다. 가능한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만, 소득보장 수당처럼 어떤 통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개발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결과 장애 운동이 주도한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제도를 형성하기보다는 장애인 단체 주도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모의적용사업 및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제도 모형 설계에 단체의 의견을 받기는 하지만,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이용자의 선택권이 다소 제한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제도형성을 주도할 경우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택권은 선택지만 많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없이 현금사용처 등 선택지만 넓힐 경우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작년 모의적용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원 기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 모형 수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미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형성 주도 세력과 선택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모형은 누가 주체적으로 만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설아, 정종화 (2022). 신체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재활복지, 26(1), 67-97.
- 김경미 (2020).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사람중심지원에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 -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48, 93-120.
- 김동기, 이한나, 어유경 (2023).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운영 모형에 대한 탐색. 장애인복지연구, 14(1), 295~330.
- 김동홍, 정종화 (2021).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1), 139-172.
- 김성수, 최창근 (2019). 정책담론모형을 활용한 도서정가제 정책변동 분석: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4), 185-208.
- 김혜지, 최영, 김남연 (2022). 노인장기요양 현금급여 통제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독일,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1, 139-186.
- 남용현 (2014).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이용자 참여 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32-742.
- 류이현, 송효진 (2022).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에 기초한 항만정책변동 분석 : 신항과 진해신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4), 185.
- 송승연, 김효정, 장선미 (2022). 정신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호주 국가장애보험 (Ndis)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6, 263-297.
- 안형진, 진형식 (2023).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국내 장애계 논쟁의 프레임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62, 85 – 105.
- 오서은 (2023). 장애등급제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단절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32(2), 85-125.
-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 유동철 (2012). 영국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 이동석 (2015a).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8, 49-74.

- 이동석 (2015b).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소비자주의와 권한강화 논쟁. 함께걸음, 2015년 5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동석, 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3, 47-66.
- 이승기,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학*, 26, 235-249.
- 이한나 (2022). 호주 국가장애보험의 현황과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20, 59-72.
-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 (2020).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 83-118.
- 이한나, 김성희, 오육찬, 황주희, 김동기, 이동석, 신은경, 조윤화, 엄다원, 조휘래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선미 (2022).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호주 국가장애보험법의 국내적 함의. *사회복지법제연구*, 13(1), 41-73.
- 장진영, 유연정 (202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정 분석. *의정논총*, 18(2), 53-79.
- 정성희, 문영임 (2023). 개인예산제 적용 방안에 관한 고찰 연구: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Personal Budgets)를 중심으로. *장애인 재해석연구*, 4(1), 387-4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준기, 김정석, 전보영, 이준우 (202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3(2), 39-73.
- Arksey, H. & Kemp, P. A. (2008). Dimensions of Choice: A Narrative of Cash-for-Care Schemes. Social Policy Research Unit, The University of York.
- Carr, S. (2011). Personal budgets and international contexts: Lessons from home and abroad. *Journal of Care Services Management*, 5(1), 9-22.
- Clarke, J. (2006). Consumers, clients or citizens? Politics, policy and practice in the reform of social care. *European Societies*, 8(3), 423-442.
- Cuellar, A. & Wiener, J. (2000). Can social insurance for long-term care work? The experience of Germany. *Health Affairs*, 19, 8-25.
- DeJong, G. (1981). Environmental 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

- Direction for Disability Policy and Research.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oty P., Mahoney K. J., & Simon-Rusinowitz L. (2007). Designing the cash and counseling demonstration and evaluation.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42, 378–396.
- Duffy, S. & Waters, J. (2008). The economics of self-directed support. in C. Hatton, J. Waters, S. Duffy et al. A report on in Control's second phase: Evaluation and learning 2005–2007. London: In Control Publications.
- Fukushima, N., Adami, J., & Palme, M. 2010.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Sweden. ENEPRI Research Report No. 89.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 · Assessing Needs of Care in European Nations.
- Garms-Homolová, V. & Busse, R. (2014). Monito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in Germany. in Mor, V., Leone, T. & Maresso, A. (eds). Regulating Long-Term Care Quality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101.
- Glasby, J. &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utting personalization into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 Gori, C. & Da Roit, B. (2007). The commodification of care – the Italian way. in Ungerson, C. & Yeandle, S.(eds). Cash-for-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60-80.
- Hatton, C., Waters, J., Duffy, S. et al. (2008). A report on in Control's second phase: Evaluation and learning 2005–2007. London: In Control Publications.
- Joël, M., Dufour-Kippelen, S., Duchêne, C., & Marmier, M. (2010).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France. ENEPRI RESEARCH REPORT NO. 77.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 · Assessing Needs of Care in European Nations.
- Kremer, M. (2006). Consumers in charge of care: the Dutch personal budget and its impact on the market, professions and the family. European Societies, 8(3), 385-401.

- Litvak, Simi, et al., (1987). Attending to America: Personal Assistance for Independent Living. A Survey of Attendant Servi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for People of All Ages with Disabilities.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 Martin, C. & Le Bihan, B. (2007). Cash-for-care in the French welfare state: a skilful compromise?". in Ungerson, C. & Yeandle, S. (eds). Cash-for-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32-59.
- Morris, J. (2006). Independent living: the role of the disability m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In Glendinning, C. & Kemp, P. (eds). (2006).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Bristol: The Policy Press, 235-248.
- Mot, E., Aouragh, A., De Groot, M. & Mannaerts, H. (2010).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Netherlands. ENEPRI RESEARCH REPORT NO. 90. Europe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s.
-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Participant-Directed Services (2014). Facts and Figures: 2013 National Inventory Survey on Participant Direction.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Participant-Directed Services.
- Österle, A. & Hammer, E. (2007). Care allowances and the formalization of care arrangements: the Austrian experience. in Ungerson, C. & Yeandle, S. (eds). Cash-for-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3-31.
- Riedel, M. & Kraus, M. (2010). The Austrian long-term care system – Final Report. Vienn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 Saraceno C. (2003), Mutamenti della famiglia e politiche sociali in Italia, Il Mulino, Bologna.
- Saucier, P., Kasten, J., Burwell, B., & Gold, L. (2012). The Growth of Managed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MLTSS) Programs: A 2012 Update.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 Schneider, U. & Reyes, C. (2007). Mixed blessing: Long-term care benefits in Germany. in Ungerson, C. & Yeandle, S. (eds). Cash for Care in

- Developed Welfare Stat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37-165.
- Schulz, E. (2010).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y. ENEPRI RESEARCH REPORT NO. 78 Brussel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 Tediosi, F. & Gabriele, S. (2010).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Italy. ENEPRI RESEARCH REPORT NO. 80. Assessing Needs of Care in European Nations.
- Ungerson, C. (2004). Whose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sh for care schemes. Ageing and Society, 24, 189-212.
- Westberg, K. (2010). Personal Assistance in Sweden.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 Yoshida, K., Willi, V., Parker, I. & Locker, D. (2004). The emergence of self-managed attendant services in Ontario: an independent living model for Canadians requiring attendant servic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Health Care, 22: 177-204.
- Zarb, G. & Nadash, P. (1994). Cashing in on independence: Compar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ash and services. London: BCODP.

원고접수 : 24.4.15.	수정원고접수 : 24.6.5.	제재확정 : 24.6.15.
-----------------	------------------	-----------------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forces leading the formation of personal budgets and user choice

DongSuk Lee*

This study analyzes the forces that led the formation of each country's personal budgets and examines their relationship with user choic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ing forces in the personal budgets and user choice, 11 systems in 8 countr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talian companion allowance, German cash benefit, German individualized case managed care budgets, and French long-term care allowance were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increasing cost of care, the Swedish disability activity support allowance, the Dutch personal budgets, the Austrian long-term care allowance, the UK direct payments, the UK personal budgets, the US Cash and Counceling, and the US self-directed support service were all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disabled people who advocate for the strengthening of their righ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user choice of the personal budgets and the forces leading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user choice increased as the disabled person led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which is another factor in the degree of choice, and the leading power was higher than the flexibility of cash use, which is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a factor in the degree of choice. In other words, as disabled people took the lead in system formation,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functions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increased. Accordingly, Korea, which is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the personal budgets in 2024, needs to develop a model that can increase users' practical choice, and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and disabled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is essential, and to ensure user choic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good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KeyWords: Personal Budgets, User Choice, Forces leading the formation of Personal Budgets,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33 – 5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탈가족화 및 재가족화 현상과 대안 탐색

김광백*, 전지혜**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과 탈가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적은 이용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가족돌봄 완화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상이하게 가족 돌봄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재가족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제도로서 활동지원제도가 갖는 탈가족화의 의미를 이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대안을 탐색하였다. 돌봄 윤리 관점에서 제도의 근본적 관점의 변화, 정신적 장애인의 더 많은 시간 할당을 위한 제도 개선, 최종증 장애인의 가족을 돌보는 정책 마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가족화, 탈가족화, 최종증 장애인, 돌봄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이후 빈곤, 노령, 실업, 불건강 등 기존의 전통적 사회위험(social risks)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회위험은 1980-90년대의 압축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0-90년대의 압축성장 과정을 장경섭(2011)은 개발자유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개발자유주의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등장한,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사회정책 영역에서 드러낸 개발주의와 자유주의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개념이다(장경섭, 2011). 개발자유주의에서 사회정책은 탈정치화되고,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은 개발 담론에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국가의 우선 과제는 성장만이 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소득화 보가 불가능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조차 고려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재정 부담보다는 가족의 사적 책임이 강조되었다(원석조, 2014). 그러나 1997년 IMF 체제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 포괄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하에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송다영 외, 2020).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신사회 위험의 대표 영역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육아 지원시설의 확충 및 노인 장기 요양제도의 도입 등을 다루었다. 즉, 2000년 전후로 빈곤정책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이 있었다면, 2005년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서비스 영역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장애인 돌봄의 문제는 기본계획과 다르게 논의되었다. 이는 2005년 12월, 5급 지체장애인 A 씨가 보일러 동파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¹⁾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살 권리와 함께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단체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서울에서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0여 일간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고, 인천에서는 2006년 6월 13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즉, 1990년대

1) 에이블뉴스. 2005.12.30. “장애인은 왜 얼어 죽어야만 했을까”. (검색일: 2023년 5월 1일)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어진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살권리와 자립생활운동의 외침이 활동지원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제도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대일 지원이라는 돌봄의 성격이 있었으나 돌봄정책 프레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권리가 강조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차적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이고, 이차적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에 있었다. 활동지원제도는 목적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중증장애인의 가족의 돌봄이나 시설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성격이 강했기에, 탈가족화와 탈시설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이후 장애인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장애인 1인 가구는 355,047가구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17.4%였다가(보건복지부, 2011), 2020년에는 673,371 가구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27.2%로 늘었다(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1인 가구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 지체, 시각 장애인 순으로 높았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트렌드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장애인 1인 가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아동돌봄과 달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지원이 가능하기에, 가족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가족에게 전 가되었던 돌봄부담은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은 1인가구로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족은 부담을 덜었으며, 사회적으로는 활동지원사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임상욱 · 전지혜, 2021).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2023)의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거주인은 14,926명에서 2021년 13,073명으로 12.4%가 줄었다. 이는 탈시설운동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활동지원제도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은 같은 기간에 2,057명에서 1,055명으로 48.7% 줄었지만,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증장애인)의 경우 1,748명에서 11,253명으로 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다른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3년에 1,397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인이 31,152명인데 이중 19,330명인 62%가 발달장애인이었는데(박숙경, 2013),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는 28,565명의 거주인 중에서 80.1%가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즉, 신체적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발달장애인은 탈시설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거주시설 내 거주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초창기 탈시설 운동이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신체적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을 돋는 적극적 정책적 기제로 작동했다고 해석된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월 활동지원시간이 180시간 수준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월 480시간인 신체적 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지자체 추가지원까지 고려하면 월 720시간도 가능하다).

이처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가능하게 했고, 가족과 떨어져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한 것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지만, 활동지원 등급이 낮아서 시간이 적게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매칭이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조우홍, 2020). 이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활동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가족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상황이 되었다. 더 쉬운 장애인을 선택하려는 활동지원사의 욕구와 타인이 가족보다 더 잘 챙겨 할수 없다는 믿음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일부 장애인과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가족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는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취지로 한 제도이기에 가족의 활동지원 혜용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간의 이견도 있지만, 최근 수년 동안 발달장애인이나 근육질 환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의 ‘가족 활보 혜용²⁾’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24년 현재 탈시설 논쟁에서 중증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정부의 탈시설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작년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탈시설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서 중증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삶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탈시설을 반대하는 이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³⁾ 그리고 탈시설조례를 입법예고한 경기도와 달리, 지난 4월 3일, 서울 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장

2) 에이블뉴스. 2021.0119. “‘가족 활보 혜용’ 자폐성 장애아 어머니의 호소”. (검색일: 2023년 5월 1일)

3) 뉴시스. 2023.04.25. “경기도의회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후폭풍…찬반 팽팽”. (검색일: 2023년 5월 1일)

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예고하기도 하였다.⁴⁾ 장애인의 탈시설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갖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신체적 장애인에게는 자립의 동력이 된 반면,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 자립의 동력으로는 불충분한 기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에는 더 많은 환경변화와 인식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발표된 복지부의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며, 활동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중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전국적으로 최증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정책 중 매우 중요한 축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기술하였지만, 활동지원제도를 통한 탈가족화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 장애 정도와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재가족화 되어가는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가족화에 대한 이후의 정책적 사회적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탈가족화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의 배경과 과정

2001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전개와 함께 장애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고자 제도화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경진, 2013). 그 후 2002년 서울시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지원한 시점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공공 영역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김민경, 2012). 이 후 2005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 사용함을 권고 사항으로 담보하여,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운데 7개소에 지방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일부로 지원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4) 비아이너. 2024.04.12. “날 시설에 가두지 말라”…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 반대 나선 장애인들. (검색일: 2024년 4월 14일)

2005년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에서 5급 지체장애인 조 모 씨(40대)가 보일러 동파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 추진이 시작되었다. 2006년에 접어들어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당시 장애인 복지권 확보 운동의 주된 이슈로 부상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권리 운동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06년 3월 20일부터 43일간 전개된 노숙 농성이 진행되었고, 인천에서도 장애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가 2006년 6월 13일부터 14일간 천막농성을 계기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4월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 시행되었다. 당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포함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0년 6월 제도모형 확정과 국회보고를 통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던 명칭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인 장기 요양 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되었고,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1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본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30일 급여 종류 중 주간 보호 삭제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어 2011년 10월 5일부터 단독 법률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화되었다.

정리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2007년 국내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영역의 중점사업으로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여 년간 서비스 제공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07년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전체 장애인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었다가(보건복지부, 2008), 2013년부터 대상자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그리고 2016년부터 대상자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3급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보건복지부, 2016), 그리고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시설 퇴소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16년부터 시설 퇴소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2019년부터 대상자가 기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3급 장애인에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2019). 2007년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전체 장애인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확대되었다. 제도 도입 전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만을 제공하다가, 2011년 법률이 마련되면서 서비스 내용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국비)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시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도 전국적으로 424명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23). 추가지원의 대상 기준은 장애 정도와 가구특성, 털시설 상황, 빌달장애 여부, 최중증의 24시간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인원과 지원 시간을 예산 범위에서 상이하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자체별 서비스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자체와 기초자치구의 지원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24시간 지원의 경우 충청남도는 지원이 없지만 천안시는 지원되기도 하였다. 또 최근에 65세 이상 장애 노인 활동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면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장애인 삶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일부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량이 많은 지자체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 탈가족화에 미치는 영향

탈가족화 개념은 에스핑-앤더슨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여성의 무급노동(돌봄 노동)을 소외시켰다는 폐미니스트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논의되었다. 탈가족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리스트(1994)는 탈가족화를 성인이 된 개인이 결혼, 가족관계 정도, 무급의 가사 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유급 노동 혹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 급여 보장을 통해서 적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리스트의 탈가족화 개념은 시장에서 여성의 남성처럼 동등한 유급 노동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돌봄노동으로부터 자유와 유·무급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강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윤성호, 2008). 즉 여성이 가족의 돌봄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동시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도 독립적 삶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이진숙 외, 2015). 즉 여성도 돌봄으로부터의 자유(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고, 간단히 개념화하면 리스트의 탈가족화란 여성이 가족돌봄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희경(2007)은 리스트의 탈가족화를 여성의 돌봄부담과 노동 시장 참여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의 정도로 보고, 이는 여성의 사회권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에스핑-앤더슨(1999)도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수용했다. 그는 탈가족화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경감시키는 것, 즉 가족과 관계없이 개인이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탈가족화는 여성의 시장 상품성과도 관계가 있고, 여성 이 가족의 의존 정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에스핑-앤더슨이 주장하는 탈가족화는 여성의 가족부담을 공적인 서비스를 통해 덜어줌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같이 탈상품화에 접근한다고 보았다(김수정, 2004). 따라서 한 사회의 탈가족화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공적지원을 들 수 있으며, 돌봄과 관련한 국가 재정과 공적 인프라의 확충 정도, 돌봄 제공인력의 확보와 공적 서비스 이용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이선영, 2016). 유정민 외(2020)는 탈가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족과 장기요양의 국가 지출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탈가족화의 정도는 GDP 대비 재정지출의 정도와 돌봄기관의 서비스 확충정도, 돌봄 인력의 확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탈가족화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우처제도 및 돌봄기관 확충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노인 장기요양제도와 보육시설의 확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국가통계포털 검색 결과 보육시설의 경우 2009년 36,374개 시설에서 1,284,026명이 이용했는데, 2019년에는 37,336개 시설에서 1,362,48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같은 통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2008년 8,318개 기관에서 222,958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26,547개 기관에서 383,15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2012년 41,680명 장애인이 이용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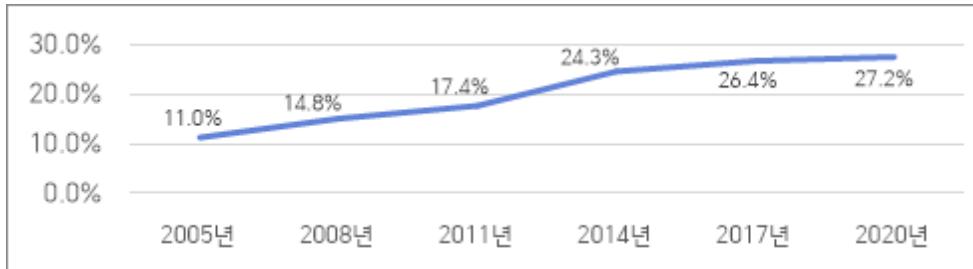
5) 국가통계포털. 보육시설수. (검색일 : 2023년 6월 17일)

만(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2022년 5월 기준으로 131,87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가족돌봄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가 가동되었으며, 빠르게 제도화되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 논의에서 시작된 탈가족화 개념을 장애인 복지영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해 가능하다.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경감시키는 것 =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가족과 관계없이 개인이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 =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조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법의 목적에서는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활동지원제도는 목적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라는 탈가족화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분야를 막론하고 돌봄서비스는 탈가족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존을 벗어나 돌봄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예전에는 시설중심 서비스를 해왔는데, 개별화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근래에는 일대인 개인서비스 형태로 다양한 돌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탈가족화를 촉진하는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장애아교육비지원, 장애인수당,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등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소득 기준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나이와 장애 정도의 제한, 사업 대상자의 제한 등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집중하였다. 제도 자체가 탈가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탈시설 장애인 현황 두가지 이슈를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우선 장애인 1인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비장애인 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구에서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그림 1>과 같이 2005년 11.0%에서 2008년 14.8%, 2011년 17.4%, 2014년 24.3%, 2017년 26.4%, 2020년 27.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그림 22] 장애인 1인 가구 연도별 비율 (출처: 장애인실태조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20년 31.7%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에 7.8% 증가하였지만⁶⁾, 같은 기간에 장애인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9.8% 증가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본 서비스가 장애인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의 현황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2022)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2년에 30,640명이었다가 2020년 29,086명으로 5.6%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장애 유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같은 기간 동안 2,057명에서 1,121명으로 약 45.5%가 감소하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786명에서 579명으로 약 26.3%, 청각·언어장애인은 335명에서 205명으로 약 38.8%가 각각 감소하였다. 그런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1,748명이 11,349명으로 약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였지만,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정신적 장애인보다 신체적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신체적 장애인의 자립지원의 기제로 주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문근(2019)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 및 주거서비스, 공공주거공급,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이 정신장애인의 탈가족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상이한 특성과 욕구가 있으나, 발달장애인 또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탈시설 및 자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가구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이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탈가족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로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재가족화 : 제도의 사각지대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탈가족화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러 학자의 연구가 있었다. 최용길 외(2019)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인력 성별·나이별 차이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을 꼽았다. 또 서원선(2014)은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수급 대상자 선정, 서비스 질과 양, 장애 이용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의 필요성, 활동지원사의 처우, 장애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인권침해,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산정,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이용 및 결제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꼽았다. 즉,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적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의 돌봄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가 또한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은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탈가족화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탈가족화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서비스 시간 할당 문제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할당은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인정점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활동지원 급여는 인정점수를 근거로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는데, 종합조사표의 인정점수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근거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신체적 기능이 인정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신마비와 같은 중증의 신체장애인들은 최장의 활동지원시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손상이 없으며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지만 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활동의 제약이 적다는 이유에서 적은 활동지원시간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적 손상은 없어서 옷입기나 밥먹기와 같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있으나, 시각이라는 감각적 제약으로 타인

의 조력을 통해서 사회참여가 가능한 경우인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한 인정점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장애통계에서 가장 많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신체활동상 제약이 낮기 때문에 인정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보장원(2023)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뇌병변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순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장애 유형별 월평균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현황은 뇌병변 장애인 169.9시간, 지체 장애인 167.1시간, 시각 장애인 136.4시간, 자폐성 장애인 112.1시간, 뇌전증 장애인 106.7시간, 지적 장애인이 105.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⁷⁾ 즉, 도움필요도가 높은 지적장애인은 실제로 지체장애인보다 대략 62시간이나 낮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갖는 한계는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부담으로 전가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1순위로 발달장애인의 58.4%는 부모를 꼽았다. 그리고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의 지원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지원인은 3.2%에 불과하였다.⁸⁾ 즉, 활동지원제도는 제도적 설계 자체가 신체적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탈가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돌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둘째, 공공성의 부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 당시에도 공공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처럼 완전 시장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부분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자활후견 기관 등이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져서 종합재가 센터의 형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지만 손에 꼽을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량이 미비하다. 공공성의 부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대표적으로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힘든 최중증 장애인, 행동상 어려움이 많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기관으로서 소위 ‘돈’이 되지 않은 이용인 등은 시장에서 매칭(matching)이 되기 쉽지 않다.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기피된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의사소통 및 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칭되기 쉽지 않다. 서비스제공 기관에서도 운영편의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시간이 적거나 매칭이 안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꺼리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탈가족화를 추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이며, 오래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

7) 에이블뉴스. 2021.10.13. 기사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검색일: 2023년 6월 17일)

8) 국가통계포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1순위) 질문. (접속일: 2023년 6월 17일)

로 활동지원사로 가족이 일하고 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실패는 공공의 보완으로 완충되어야 하지만, 보완할 공공서비스와 기관은 없는 현실이며, 이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재가족화를 촉진할 뿐이다. 결국 가족이 장애인을 활동지원하는 현상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장지연(2011)은 돌봄서비스 생산을 민간 시장에 의존하게 만들어 돌봄노동의 상품화나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의 낮은 처우와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낮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제도는 있으나 가족이 여전히 돌봄노동을 지속하게 된다는 재가족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제공인력의 낮은 처우 및 전문성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시간당 수가 체계로 활동지원사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2023년 우리나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는 14,750원이지만, 중개 기관의 수료를 제외하면 약 75% 정도를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출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장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앞서 강조했듯이 돌봄 노동의 고용불안정은 숙련이 형성되고 안정화될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향이다(권현정 외, 2017).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 투쟁이 진행되었다. 함선유 외(2017)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는 돌봄의 질을 낮추고, 돌봄을 저평가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좋은 돌봄은 이러한 관계 맺기와 청취 하에서 이루어지며, 충분히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좋은 돌봄과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는 점은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의 전달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민간 중심의 바우처 제도는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좋은 돌봄과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낮추게 될뿐더러, 낮은 질의 서비스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탈가족화보다 재가족화될 위험성을 갖는다.

2. 재가족화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의 사각지대는 정책이 갖는 목적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신체적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이후 탈시설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돌봄 부담의 상당 부분은 가족이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 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2020년 3월 제주도에서는 코로나로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모두 문을 닫자 집에서 아들을 돌봐왔던 어머니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⁹⁾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매달 1~2명 꼴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2)이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3%(1139명)는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실제 20시간 이상 지원서비스를 받는다고 답한 이들은 0.1%(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유로는 평생 발달장애자녀(가족)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56.3%)이 가장 많았고, 지원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31.1%)도 많았다.¹⁰⁾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가족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활동지원사 매칭이 잘되지 않고, 장애 자녀의 돌봄을 가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도 활동지원사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대안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활동지원의 가족허용은 탈가족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아이러니하게 재가족화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제도상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가족의 활동지원사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이 가족돌봄부담 완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가족에 의해서 묵살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장애인 단체들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찬반양론이 많았지만, 가족의 활동지원사로서의 참여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는 도서지역 등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장애인가족의 활동지원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재가족화 현상을 둘러싸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다.¹¹⁾ 제도가 갖는 한계점

9) 한겨레. 2020.6.5. 기사 “제주 이어 광주서도 발달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왜?”. (검색일: 2023년 6월 17일)

10) 이로운넷. 2023.02.17. “사회적 타살...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검색일: 2023년 6월 17일)

11) 비마이너. 2021.10.14. “가족 활동지원 허용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검색일: 2023년 6월 17일)

으로 인한 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활동지원제도가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보다 재가족화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도가 갖는 허점으로 인한 재가족화의 문제점은 우선 돌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무위로 돌리고 가족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신문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최종증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족 참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지원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대안은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송다영 외(2017)는 민주적 돌봄 관점에서 서울시의 가족정책에 대해 고찰할 때, 제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양육수당을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은 계층별, 가족 형태별, 성별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정의를 재생산하게 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 참여는 돌봄에 대한 부정의를 생산할 수 있다. 돌봄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는 단순히 비용만 지급하는 수동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당별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장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의 필요성(서원선, 2014)을 지적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과 자기결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서비스인데, 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사 참여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이용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1,124명 중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428명으로 38% 정도였고, 대리응답은 62%였다. 이중 가족이 대리 응답한 경우가 547명으로 전체 49%였다. 이는 경험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 의해서 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사 참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장애인의 자립 된 삶에 대한 기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셋째, 부수적이나 중요한 점인데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의 약화 문제이다.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족이 장애인의 욕구를 잘알고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물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를 통해 높아질수도 있다. 타인과의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나 고용 관계 해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가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은 현실이나, 이를 재가족화를 통해

서 문제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돌봄을 가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재가족화의 현실적 한계는 돌봄을 가족이 담당한다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면 기존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사장되거나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윤홍식 외, 2011). 즉 중증장애인의 시장에서 활동지원사 매칭이 되지 않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된다고 하여 장애인 가족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 수당으로 대체되면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IV. 재가족화에 대한 대안 탐색

백경흔(2022)은 돌봄윤리 관점에서 성평등한 관점의 돌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덴마크의 아동돌봄정책 사례를 연구하면서 돌봄을 단순히 돌봄제공자의 역할이 아닌 사회 전반의 책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가족 내 아동돌봄 책임의 탈가족화를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공공성 추구라는 관점을 넘어서, 규범적 가치로서의 돌봄윤리가 아동돌봄 정책의 기초 원리가 되는 방식으로 돌봄 사회화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의 주장을 장애인 영역으로 확장하면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역시 돌봄윤리와 젠더 정의 관점에서도 풀어낼 필요가 있다. 그럼 장애인 가족의 재가족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개선보다는 더욱 근본적으로 제도 안에 들어있는 관점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제도 전체가 유사하지만, 돌봄 제공자의 기본값을 여성으로, 그리고 노동권보다는 혼신과 사랑과 같은 사적 감정에 기대여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돌봄서비스 대부분 초기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시간이 있는 누군가가 약간의 시급을 받으면서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기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또 이와 같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부족했다. 백경흔(2022)은 돌봄을 주고받는 아동, 부모, 교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불평등과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돌봄정책을 통해 돌봄인으로서의 시민성을 영유아기부터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 너스바움(2002)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전제가 호혜적 관계에 참여할 수 없는 의존자들을 사회적 협약에서 배제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돌봄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취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타인과 평등한 관계 안에서 좋은 삶의 기회를 누리고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즉 제도개선 이전에 우리 사회가 갖는 돌봄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함께 돌봄제공자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속해서 재가족화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돌봄윤리 관점에서 제도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은 선행 연구 등에서 밝혀졌지만, 돌봄이 있어야 하는 집단과 돌봄이 제공되는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집단에서는 본 제도가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마련되면서 소외되었거나, 오히려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은 본 제도의 혁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정에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지원 할당에 대한 변화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돌봄 제공자에 대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는 이용인과 돌봄 제공자의 관계만 상정하여 만들어졌다. 그런 돌봄 제공자 역시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시장에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돌보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돌봄은 사회적으로 소중한 것, 필요한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이런 점에서 키테이(2000)가 소개하는 둘리아 개념은 중요하다. 둘리아는 노예나 하인을 의미하는 불행한 어원을 갖지만, 키테이는 이 용어를 ‘타인의 필요를 도움’으로 전용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에서 ‘신생아를 보살피는 산모’를 보살피는 산후조리사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개념을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확장하면 어떨까 싶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한 존재에서 시작해서 성장한다.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룰즈(Ralw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을 상정한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룰즈가 상정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유태한, 2019).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학습하고, 성인이 된다. 룰즈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을 뿐더러, 합리적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가 역시 그렇게 성장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는 합리적 이성을 근거로 작동하면서 의존은 나쁜 것, 의존은 약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재가족화의 가

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돌보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넷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이 취약하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육시설 수 현황은 전체 37,336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공립은 4,332개로 11.2%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1년 현재 26,547개가 운영 중인데,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246개로 0.9%에 불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개기관이 2022년 현재 1,015개 기관이 있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기관임을 고려하면 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중증의 발달장애인, 상대적으로 시간은 적은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는 일을 해도 급여가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바우처 시간이 적은 장애인 등은 시장의 논리에서는 매칭(Matching)이 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인가? 본 연구자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단순히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서비스의 속성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을 해야 하는 집단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집단이 있다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활동지원사 가족 참여 혀용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도 활동지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유형별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탈가족화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믿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처우가 동반된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본 목적에 맞게 자립지원과 돌봄부담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만약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혀용한다면, 이는 가장 후순위의 정책적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와 혀용기준(어떤 경우에 가족지원 대상으로 인정할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한 환경만들기에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부정수급의 형태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하는 사례들이 있다. 해외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가족지원을 혀용하는 국가들도 다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보편화된 부정수급을 제도화하거나 해외 사례를 국내적으로 적용하는데에는 보다 멀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임의로 일부정책결정자들이 활동지원을 가족 혀용할 경우 장애인 가족은 재가족화되고 다수 장애인은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우

려가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재가족화에 대한 대안과 고려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였지만, 돌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나타난 재가족화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삶에서는 빼놓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회서비스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없다면 우리 사회 많은 중증장애인은 거주시설이나, 가정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장애 운동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2007년 시범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거주시설의 장애인 거주인 수나, 1인 가구의 증가 등 보다 독립된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갖는 문제점으로 중 하나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다 공적서비스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장애인 가족의 활동지원서비스 참여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대안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것 보다 재가족화의 위험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개선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돌봄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제도 개선 내부에서 조정, 돌봄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재가족화 논의가 돌봄 일반이나, 노인 혹은 아동 계층이나, 여성 돌봄노동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계층적으로 장애인 집단을, 또 장애인의 대표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많은 돌봄서비스 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갖는 한계와 함께 이 제도의 속성이 재가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을 탐색하였다는 점,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돌봄은 단순히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과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돌봄에 대한 논의는 복지의 한 영역인 사회서비스 차원에서만 논의되기에, 재가족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사고실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1인 가구 증가와 연관성과 관련한 실증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또 이 제도가 장애인의 탈가족화와 구체적인 어떤 연결을 갖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 추론이나 담론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일정 정도 비약이나 비논리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함의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가 보다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앞서 언급된 부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풍부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는 돌봄정책의 일환으로서 활동지원제도가 탈가족화의 목표와 달리 재가족화 현상에 머무르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7).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9(1), 1-27.
- 권현정, 홍경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1), 33-57.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 검토. *비판사회정책*, (62), 7-52.
- 김민경 (201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영역별 비교연구 : 일상생활·심리·건강·직장·가족을 중심으로.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233.
-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인연구*, 18(1), 205-234.
- 백경흔 (2022).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정책: 덴마크 소셜 페다고지. *한국사회정책*, 29(3), 243-274.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1). 『2020 거주시설 전수조사』
-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및 운영현황 분석 연구』
- 서원선 (201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 송다영, 장수정, 백경흔 (2017). ‘민주적 돌봄’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0(1), 121-152.
- 송다영, 백경흔 (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6(1), 175-209.
- 원석조 (2014). 사회보장론.
- 유태한 (2019). 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르스와 샌델 비교. *사회복지정책*, 46(2), 5-25.
- 유정민, 최영준 (2020). 복지국가는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1), 87-116.

- 윤성호 (2008). 노동권과 부모권 양립을 위한 탈가족화 논의. *상황과 복지*, 26, 125-161.
- 윤홍식, 류연규, 송다영, 신경아, 윤성호, 이숙진, 최동국 (2011).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 이경진 (201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후 장애인 사회통합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16). 노인 돌봄 정책의 탈가족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9, 295-314.
- 이진숙, 박진화 (2015). 탈가족화 정책들의 역사적 변천과정. *공공사회연구*, 5(3), 192-228.
- 임상욱, 전지혜 (2021). 장애인 1인가구의 형성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2(4), 1-21.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90.
- 장지연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 연구*, 11(2), 1-47.
- 조우홍 (20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2), 175-176.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년사 사진집).
- 최용길, 김유정 (2019).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5권 2호. 173-193.
- 최은영 (2012). 사회적 돌봄의 방향과 탈가족화-재가족화의 딜레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12-1620.
- 통계청 (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2022 장애통계연보』
- 함선유, 권현지. (2017).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산업노동연구*, 23(3), 131-176.
- Esping-Andersen, G. (1999).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s into the 21st century. Barcelona, Spain: Fundació Rafael Campalans.
- Liao, S. M. (2000). Eva Feder Kittay,"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Philosophy in Review*, 20(4), 261-263.
- Lister, R. (1994). 'She has other duties'-women, citizenship and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and Social Change: New Challenges to the Beveridge Model, Eds. Sally Baldwin and Jane Falkingham: Harvester Wheatsheaf.
- Nussbaum, M. (2002).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 123-135.
-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8-24.

원고접수 : 24.04.15.

수정원고접수 : 24.06.13.

게재확정 : 24.06.20.

Abstract

Exploring the phenomenon of de-familial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of disability support services and alternatives

KwangBack Kim*, JiHye Je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the phenomenon of de-familialization and re-familial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disability activity support service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Activity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enacted in 2011, and the significant impact of activity support services on the independence and de-family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with relatively severe disabilities or those with fewer hours of activity support are unable to find activity supporters,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have emerged. As a result, family care is becoming more intens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ystem's goal of alleviating family care, leading to the phenomenon of re-familyization. This study considers this phenomenon to be due to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activity support system, analyzes the meaning of de-familyization of the activity support system as a social welfare system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and explores alternatives.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damental perspective of the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s of ca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allocate more time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are for the families of people with the most severe disabilities, and the public nature of social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Keywords: Disability activity support services, Re-familialization, De-familialization, Severely disabled, Care

장애의자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59 – 84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

이아정*, 정진자**, 범효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예비특수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차이에서 예비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특수교사는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와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특수교사의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차이는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와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 인식 및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통합교육 경험과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통합교육 경험과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 대학에서 예비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예비특수교사,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중국 안순대학(安顺学院) 특수교육과 강사

**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중국의 특수교육 정책이 통합교육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통합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1a, 2022a). 중국의 2022년 국가교육사업발전통계공보(2022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중국의 특수학교는 2020년 2,244개에서 2022년에 2,314개로 70개 학교가 증가하였으며, 특수학교의 전임교원은 66,200명(2020년)에서 72,700명(2022년)으로 6,500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49.47%가 통합교육(随班就读)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0, 2022b).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王雁, 黄玲玲, 王悦, 张丽莉, 2018; 吴扬, 2018)과 예비일반교사뿐만 아니라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冯雅静, 王雁, 2020; 李尚卫, 2020). 즉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의 자질과 태도, 역할과 역량 강화 그리고 일반교사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고(권미영, 2021; 류혜원, 2006; 박승희, 2004; 최지혜, 2020; 허계형, 2008), 교사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박해인, 2018; 정찬미, 2006; Forlin & Chambers, 2011).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통합교육 활성화 그리고 통합교육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도덕성 향상, 교사양성과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쳐우 개선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2a). 또한 중국의 교사 양성제도에서도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일반 사범대학 학생들의 장애학생 인식개선 및 지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李尚卫, 2020).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계획과 일반교사의 연수내용에 특수교육 내용과 관련 지식을 일정 비율로 추가하여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17). 또한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과 개선 계획(“十四五”特殊教育发展提升行动计划, 2021—2025年)을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특수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으며(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1a),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에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과 설립 추진 방안이며, 중국의 장애인교육조례(残疾人教育条例) 제6장에서는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전공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하도록 지원

하며, 일반사범대학 및 종합대학의 사범대학에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17).

중국의 제14차 5개년 유치원교육 발전과 개선 계획(“十四五”学前教育发展提升行动计划)에 예비유치원교사들의 통합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의 유치원 교육 전공에 특수 교육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1b). 그리고 장애인교육조례(残疾人教育条例)와 제2기 특수교육개선계획(第二期特殊教育提升计划, 2017—2020年) 등에 일반교사 양성과정에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반교사를 양성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30일에 공포된 일반대학교 학부 전공 교육의 질에 관한 국가 표준(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类教学质量国家标准) 방향과 지침에도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冯雅静, 王雁, 2020). 그리고 베이징(北京)사범대학, 화중(华中)사범대학, 충칭(重庆)사범대학, 러산(乐山)사범대학, 천주(泉州)사범대학 등에서 일반사범대학 교육 과정에서 특수교육개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조사 결과 137개 사범대학중 19개 학교 만이 특수교육개론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汪海萍, 2006). 한국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서 2009년도부터 교직 소양으로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모든 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필수적으로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교육부, 2023).

이처럼 중국에서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및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효율성을 위해 일반교사 양성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고 있다(冯雅静, 王雁, 2020). 즉 교사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은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공적인 통합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유범설, 2020; 흥유숙, 2001).

또한 통합교육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며(만문정, 정진자, 범효이, 2023), 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초임특수교사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에서 통합교육관련 실습 부족으로 초임 발령 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이두희, 2005),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전문적 지식의 부족을 경험한다(반현우, 2019). 또한 예비일반교사나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통합교육의 어려움으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습득 부족과 교수적합화의 한계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으로 나타났다(박해인, 2018; 정찬미,

2006; Forlin & Chambers, 2011). 특히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영향을 받기 쉬우며(Turnbull, Winton, Blacher, & Salkind, 1983),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사전 지식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있어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적 지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Putnam & Borko, 2000; Widden, Mayer-Smith, & Moon, 1998). 이에 따라 일반예비교사 및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뿐만 아니라 예비특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冯雅静, 王雁, 2020; 李尚卫, 2020). 그리고 예비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일반교사와의 협력과 장애 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중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라경, 최민식, 2023).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陈梦丽, 2023; Sundqvist, Björk-Åman, & Ström, 2023).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인식과 태도 관련 연구는 일반교사와 학부모(徐思思, 徐露義, 王雁, 2019; 张贵军, 阳泽, 董佳琦, 2020) 그리고 예비일반교사(蒋娜娜, 李海军, 2023; 田斐, 2020)과 예비 유아교사(何淑娟, 王彦, 张曦, 2024; 杨婷婷, 余建伟, 2022)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예비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강혜진, 2020, 김성화, 이인원, 2020; 김주선, 김희주, 2021; 이신영, 강경호, 2021; 최나리, 2022; 하경화, 최효정, 2020)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전공, 장애관련 교과목 수강 및 봉사활동 경험은 대학생의 장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권미은, 2017; 권해연, 2018; 정진자, 이예다나, 2020)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은 예비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특수교육 전문성 그리고 통합교육 전문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며(나경은, 2023; 이신영, 강경호, 2021), 예비특수교사들의 통합교육 실습 경험은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김라경, 최민식, 2023; 이미아, 신수경, 2021)이다.

따라서 중국의 통합교육 확대 적용에 따른 특수교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장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년, 관련 교과목 수강, 통합교육 경험 그리고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등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유법설, 2020; 정진자, 이예다나, 2020; 陈梦丽, 2023). 특히 비교교육학적 측면에서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를 통해 한국의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증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인기, 2020; 주춘가, 박명희, 2021; 한나, 백수은,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여 예비특수교사 양성 과정 및 지원 방안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성별, 학년, 관련 과목 수강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의 인식 및 태도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서남부지역과 화북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중 연구자가 연구진행에 편리하게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성태제, 시기자, 2020), 편의군집표집 의해 311명을 선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3년제 대학에도 특수교육전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다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3명(55.6%), 없는 학생은 138명(44.4%)이며, 관련 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2명(74.6%), 경험이 없는 학생은 79명(25.4%)이다. 그리고 관련 실습 또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3명(55.6%), 없는 학생은 138명(44.4%)이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39	12.5
	여	272	87.5
학년	1	96	30.9
	2	50	16.1
	3	103	33.1
	4	62	19.9
통합교육 경험	유	173	55.6
	무	138	44.4
관련 과목 수강	유	232	74.6
	무	79	25.4
실습 또는 봉사활동 경험	유	173	55.6
	무	138	44.4
전체		311	100

2.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Larrivee와 Cook(1979)의 ‘통합에 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Mainstreaming Scale: ATMS)’를 Robert와 Pratt(1987)가 요인 분석에 따라 통합에 관한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의 요구, 학업적 기대, 행동적 기대 등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한 도구를 조성영(1994)이 번안하고, 유범설(2020)이 한국과 중국 예비유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범설(2020)이 사용한 도구에서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 장애유아를 장애학생으로, 일반유아를 비장애학생으로, 유아교육전공을 특수교육전공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통합교육’ 용어의 정의를 포함시켜 응답자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문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통합교육을 경험한 시기를 조사(복수응답)하여 통합교육 경험 유무를 정하였으며, 대학교에서 교육현장(실습포함)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봉사활동을 한 시기를 조사하여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를 정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에 관한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의 요구,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등 6개 하위 영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문항은 5점 평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역산을 하여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통합교육 인식	1, 2, 3, 4	4	0.899
통합교육 개념	5, 6*, 7, 8, 9*, 10, 11*, 12, 13	9	0.843
교사의 전문성	14, 15, 16, 17*, 18*, 19	6	0.757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20*, 21*, 22*	3	0.635
학업적 기대	23*, 24*, 25*, 26, 27*	5	0.744
행동적 기대	28, 29, 30*, 31*	4	0.658
전체		31	0.941

주. *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산 함.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지는 ‘통합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기술된 문항을 하위 영역별로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점수는 낮으면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통합에 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Mainstreaming Scale: ATMS)’를 사용한 선 행연구에서 조성영(1994)의 설문지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0.880이었으며, 유범설(2020)의 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는 0.817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2〉와 같이 전체 문항 0.941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은 통합교육 인식 0.899, 통합교육 개념 0.843, 교사의 전문성 0.757,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0.635, 학업적 기대 0.744, 행동적 기대 0.6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시간영역의 Cronbach's $\alpha=0.635$ 와 인내력 요구 및 행동적 기대영역의 Cronbach's $\alpha=0.658$ 은 변수의 측정 지표가 5개 미만일 때 Cronbach's $\alpha < 0.7$ 척도가 신뢰할 수 있다는 Cortina(1993)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를 위한 도구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한국의 특수교육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첫 번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중국 대학의 특수교육전공 교수 2명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대학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기초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의 설문지 조사 사이트(问卷星: <https://www.wjx.cn>)를 통해 전자 설문지로 발송하여 총 336명의 응답 자료가 수집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총 336에서 대학생의 전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질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최종 311부(92.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하위 영역별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 중 성별, 관련 과목 수강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는 *t*-검증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LSD를 통해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하위 영역별 차이(N=311)

하위 영역	M	SD
통합교육 인식	4.172	0.800
통합교육 개념	3.499	0.350
교사의 전문성	3.583	0.488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2.436	0.753
학업적 기대	2.752	0.486
행동적 기대	3.133	0.533
전체	3.263	0.310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63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 통합교육 인식(M=4.172)은 ‘그렇다’, 교사의 전문성(M=3.583), 통합교육 개념(M=3.499), 행동적 기대(M=3.133)는 ‘보통이다’라는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기대(M=2.752),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M=2.436) 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성별, 학년, 특수교육 관련 과목 수강, 통합교육 경험,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부터 〈표 8〉까지이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예비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예비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N=311)

하위 영역	구분	N	M	SD	t
통합교육 인식	남	39	4.103	1.029	-0.579
	여	272	4.182	0.763	
통합교육 개념	남	39	3.462	0.485	-0.716
	여	272	3.505	0.327	
교사의 전문성	남	39	3.487	0.450	-1.314
	여	272	3.597	0.492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남	39	2.436	1.046	-0.003
	여	272	2.436	0.703	
학업적 기대	남	39	2.672	0.585	-1.108
	여	272	2.764	0.470	
행동적 기대	남	39	3.180	0.615	0.509
	여	272	3.127	0.522	
전체	남	39	3.223	0.376	-0.855
	여	272	3.268	0.23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차이

예비특수교사의 학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특수교사의 학년에 따른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4.010, p<.01$). 즉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 차이는 학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6.490, p<.001$). 즉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학업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기대 차이는 학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7.776, p<.001$). 즉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행동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교육 인식, 통합교육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예비특수교사의 학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N=311)

학위 영역	구분	N	M	SD	F	post-hoc (LSD)
통합교육 인식	1	96	4.138	0.846	0.311	NS
	2	50	4.255	0.758		
	3	103	4.189	0.762		
	4	62	4.129	0.833		
통합교육 개념	1	96	3.492	0.394	0.125	NS
	2	50	3.520	0.359		
	3	103	3.489	0.319		
	4	62	3.511	0.327		
교사의 전문성	1	96	3.573	0.532	0.422	NS
	2	50	3.653	0.500		
	3	103	3.573	0.455		
	4	62	3.559	0.466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1	96	2.597	0.786	2.462	NS
	2	50	2.427	0.794		
	3	103	2.314	0.736		
	4	62	2.398	0.661		
학업적 기대	1	96	2.921	0.478	6.490***	1>3
	2	50	2.728	0.520		
	3	103	2.631	0.434		
	4	62	2.713	0.491		
행동적 기대	1	96	3.315	0.556	7.776***	1>3
	2	50	3.130	0.469		
	3	103	2.961	0.494		
	4	62	3.141	0.527		
전체	1	96	3.339	0.336	4.010**	1>3
	2	50	3.286	0.322		
	3	103	3.193	0.286		
	4	62	3.242	0.268		

p<.01, *p<.001

주. NS=No Significance

3)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차이

예비특수교사의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예비특수교사의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N=311)

하위 영역	구분	N	M	SD	t
통합교육 인식	유	232	4.190	0.784	0.788
	무	79	4.111	0.848	
통합교육 개념	유	232	3.497	0.342	-0.171
	무	79	3.505	0.377	
교사의 전문성	유	232	3.580	0.482	-0.206
	무	79	3.593	0.507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유	232	2.387	0.741	-2.007
	무	79	2.582	0.773	
학업적 기대	유	232	2.692	0.486	-3.823**
	무	79	2.930	0.445	
행동적 기대	유	232	3.071	0.450	-3.598**
	무	79	3.317	0.588	
전체	유	232	3.237	0.298	-2.573*
	무	79	3.340	0.330	

* $p<.05$, ** $p<.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특수교사의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573$, $p<.05$). 즉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학업적 기대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823$, $p<.01$). 즉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영역인 통합교육 인식, 통합교육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N=311)

하위 영역	구분	N	M	SD	t
통합교육 인식	유	173	4.210	0.790	1.031
	무	138	4.120	0.800	
통합교육 개념	유	173	3.522	0.351	1.264
	무	138	3.471	0.348	
교사의 전문성	유	173	3.603	0.471	0.810
	무	138	3.558	0.509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유	173	2.362	0.714	-1.950
	무	138	2.529	0.791	
학업적 기대	유	173	2.686	0.479	-2.745**
	무	138	2.836	0.483	
행동적 기대	유	173	3.088	0.525	-1.681
	무	138	3.190	0.541	
전체	유	173	3.246	0.309	-1.083
	무	138	3.284	0.310	

**p<.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 영역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745$, $p < .01$). 즉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학업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와 하위 영역인 통합교육 인식, 통합교육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행동적 기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예비특수교사의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예비특수교사의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N=311)

하위 영역	구분	N	M	SD	t
통합교육 인식	유	180	4.169	0.797	-0.067
	무	131	4.176	0.807	
통합교육 개념	유	180	3.502	0.330	0.162
	무	131	3.495	0.378	
교사의 전문성	유	180	3.571	0.485	-0.497
	무	131	3.599	0.493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유	180	2.393	0.766	-1.199
	무	131	2.496	0.733	
학업적 기대	유	180	2.701	0.464	-2.196*
	무	131	2.823	0.508	
행동적 기대	유	180	3.067	0.499	-2.612**
	무	131	3.225	0.567	
전체	유	180	3.234	0.277	-1.938
	무	131	3.302	0.347	

*p<.05, **p<.0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차이에서,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196$, $p < .05$). 즉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학업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기대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612$, $p < .01$). 즉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행동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 통합교육 인식, 통합교육 개념,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서남부지역과 화북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중 편의 군집표집 의해 311명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 통합교육 인식, 교사의 전문성, 통합교육 개념, 행동적 기대는 ‘보통이다’라는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적 기대,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영역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업적 기대와 교사의 시간 및 인내력 요구 영역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나타난 것은 중국의 예비특수교사들이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장애학생이 교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교사의 시간을 독점하며, 교사의 인내력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통합교육환경이 오히려 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교수적 수정과 학습방식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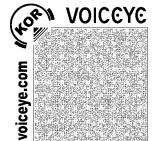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은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로서 특수교육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管飞, 刘春玲, 王勉, & Sharma, 2011),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교사가 교실 내 모든 아동을 수용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Saloviita, 2015). 특히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과 관련 실습 경험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라경, 최민식, 2023; 이미아, 신수경, 2021), 통합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Hassanein, Alshaboul, & Ibrahim, 2021). 따라서 예비특수교사가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Montgomery, 2013).

둘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예비일반유치원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전미숙(2009)과 일

반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陈梦丽(202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즉 전미숙(2009)의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개념과 교사 전문성 그리고 행동기대, 통합교육 필요성 등에서 남자대학생들이 여자대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陈梦丽(2023)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이 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교사윤리의식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陈莲俊, 卢天庆, 2006; 陈红, 2019; 杜芬娥, 赵欣, 2022)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과 전미숙(2009)과 陈梦丽(2023)의 연구 대상과의 지역 및 전공의 차이 뿐만 아니라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표본 크기의 차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표본 크기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특수교사의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와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3학년 학생들에 비해 특수교육관련 전문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陈梦丽, 2023). 특히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은 실습과 인턴십 기간이 길어 장애아동을 자주 접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대상 학생의 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 이해 등의 어려움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통합교육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가질 수 있다(陈梦丽, 2023; Forlin & Chambers, 2011).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의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김라경, 최민식, 2023).

또한 예비특수교사의 관련 과목 수강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체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와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 인식 및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학업적 기대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하위 영역인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학업적 기대와 행동적 기대에서 더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통합교육 실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Weber과 Greiner(2019)의 연구결과와 특수



교육 또는 장애이해 교과목 수강과 관련 봉사활동 경험 및 통합교육 경험이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미숙(2009)과 정진자, 이예다나(202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관련 교과목 수강이나 관련 봉사활동 경험은 장애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미은, 2017; 권해연, 2018; 김종운, 고영희, 2018), 학교 교육과정과 실습이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 Boer, Pijl, & Minnaert, 2011; Koh, 2018; Kraska & Boyle, 2014). 또한 예비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및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교사간(일반교사-특수교사, 특수교사-특수교사)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과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이미아, 신수경, 2021). 또한 장애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며 통합교육의 어려움과 한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며 통합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김라경, 안예지, 2020; 김라경, 최민식, 2023).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을 비롯하여 예비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치원 교육발전과 개선을 위한 제14차 5개년계획 실행계획과 일반고등교육법의 학교 학부 전공 교육의 질에 관한 국가표준 방향과 지침에 ‘특수교육개론’ 추가 및 이수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冯雅静, 王雁, 2020; 汪海萍, 2006). 한국에서는 통합교육원칙에 따라 통합교육 역량과 자질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 소양으로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2023). 따라서 중국에서도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 대학에서 예비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서남부지역과 화북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중국 전체 예비특수교사로 결과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서남부지역과 화북지역의 4년제 대학의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배경 변인(성별, 학년, 관련 과목 수강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국 전체의 예비특수교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역간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陈红, 2019; 陈梦丽, 2023)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은 편의군집표집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요인에 따른 집단 사례 수 편차가 크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에는 연구 대상을 선택할 때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택해야 한다.

셋째,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성별, 학년, 관련 과목 수강 유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 실습 및 봉사활동 경험 유무)과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및 인터뷰, 참여자 관찰 등의 질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 및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혜진 (2020).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교사효능감 변화. *인문사회*, 21, 11(5), 259-272.
- 고인기 (2020).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기관 특성 비교 – 정교사(2급) 자격증과 1종 면허장을 중심으로.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020(10)*, 437-441.
- 교육부 (2023).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세종: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권미영 (2021). 통합교육속의 장애학생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과 경험. *특수교육재활과학 연구*, 60(1), 153-172.
- 권미은 (2017). ‘장애아동의 이해’ 교과목 수강을 통한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10), 145-167.
- 권해연 (2018). 브레인스토밍 토의식 수업이 장애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9(5), 27-41.
- 김라경, 안예지 (2020). 봉사학습을 경험한 예비초등교사들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연구. *교육문화연구*, 26(4), 597-619.
- 김라경, 최민식 (2023). 특수학급 봉사학습에 참여한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경험과 인식 및 지원 요구. *통합교육연구*, 18(2), 99-121.
- 김성화, 이인원 (2020).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이 예비유아교사의 통합교육인식 변화와 교사역량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345-361.
- 김종운, 고영희 (2018).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공감능력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919-939.
- 김주선, 김희주 (2021). 특수교육학개론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예비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교사 효능감과 장애인식 변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0(3), 165-185.
- 나경은 (2023). PBL기반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예비일반교사의 통하복육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 교사효능감 변화 분석. *특수교육연구*, 30(1), 232-262.
- 류혜원 (2006). 통합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만문정, 정진자, 범효이 (2023). 중국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2(2), 91-121.
- 박승희 (2004).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박해인 (2018). 통합교육에 관한 예비 초등 일반교사와 예비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반현우 (2019). 초등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성태제, 시기자 (2020). 연구방법론(3판). 서울: 학지사.
- 유범설 (2020).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한국과 중국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이두휴 (2005).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사회화 과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5(3), 205-237.
- 이미아, 신수경 (2021). 예비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현장실습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23(1), 31-50.
- 이신영, 강경호 (2021).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한 예비교사의 특수교육전문성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0(4), 173-196.
- 정진자, 이예다나 (2020). 비장애인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연구: 최근 10년 (2010-2019) 국내 연구동향 및 단어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33-41.
- 정찬미 (2006).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전미숙 (2009). 예비 일반유치원교사와 예비 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조성연 (1994). 경도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태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춘가, 박명희 (2021). 한국과 중국의 사교육 연구동향 비교분석 : 2000년~2017년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1(3), 155-193.
- 최나리 (2022). 예비일반교사를 위한 특수교육학개론 강의요목 탐색: 문제행동 및 교육적 실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1), 83-102.
- 최지혜 (2020). 장애 이해 봉사활동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공동체 의식 변화 탐색. 지체증복건강장애연구, 63(1), 119-134.
- 하경화, 최효정 (2020).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313-332.
- 한나, 백수은 (2020). 중국 비교교육 연구 동향 분석: <比较教育研究>제재 논문(2010-2019) 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0(4), 43-70.

- 허계형 (2008). 유아교사의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신념, 실제, 지원 요구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8(3), 1-20.
- 홍유숙 (2001). 유아교육전공 대학생의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陈红 (2019). 高等院校师范专业本科学生融合教育素养现状, 问题及对策研究, 硕士学位论文, 西南大学.
- 陈莲俊, 卢天庆 (2006). 在校大学生对残疾学生接受高等融合教育的态度调查. *中国特殊教育*(12), 22-26+17.
- 陈梦丽 (2023). 普通师范生对融合教育教师角色认知影响因素研究, 硕士学位论文, 华东师范大学.
- 杜芬娥, 赵欣 (2022). 地方高校师范生融合教育素养现状研究. *绥化学院学报*(04), 110-114.
- 冯雅静, 王雁 (2020). 普通师范专业融合教育通识课程的构建——基于实践导向的模式. *教育科学*(05), 70-77.
- 何淑娟, 王彦, 张曦 (2024). 学前教育本科生融合教育素养的调查与分析. *现代特殊教育*(06), 8-16.
- 蒋娜娜, 李海军 (2023). 师范生融合教育素养调查研究—以菏泽学院为例. *菏泽学院学报*(06), 82-87.
- 李尚卫 (2020). 我国高校特殊教育专业建设与师资保障. *教师教育学报*, 2020, 7(02), 61-67.
- 田斐 (2020). 民办高校教育类本科生对融合教育的态度研究. *知识经济*(15), 155-156.
- 汪海萍 (2006). 普通师范院校特殊教育课程开设情况的调查. *中国特殊教育*, 2006(12), 12-16.
- 王雁, 黄玲玲, 王悦, 张丽莉 (2018). 对国内随班就读教师融合教育素养研究的分析与展望. *教师教育研究*, 30(01), 26-32.
- 吴扬 (2017). 幼儿园教师融合教育素养的调查研究. *中国特殊教育*, 2017(11), 8 - 13.
- 徐思思, 徐露義, 王雁 (2019). 我国普通学校教师融合教育素养职后培训的政策支持. *绥化学院学报*, 39(1), 10-14.
- 杨婷婷, 余建伟 (2022). 高专院校学前教育师范生融合教育素养的现状调查. *教育观察*, (24), 88-92.
- 答飞, 刘春玲, 王勉, Umesh Sharma (2011). 上海市在职教师融合教育自我效能感的调查研究. *中国特殊教育*, 2011(5), 3 - 9.
- 张贵军, 阳泽, 董佳琦 (2020). 融合教育背景下特殊儿童家长参与学校教育活动的困境及突破. *绥化学院学报*(07), 17-20.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17). 残疾人教育条例. 인출 2024.1.17. http://www.yueyang.gov.cn/yykfq/28453/28486/28490/content_940246.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0). 2020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인출 2024.4.19. http://m.moe.gov.cn/jyb_sjzl/sjzl_fztjgb/202108/t20210827_555004.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1a). “十四五”特殊教育发展提升行动计划. 인출 2024.1.17.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8/202201/t20220125_596312.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1b). “十四五”学前教育发展提升行动计划. 인출 2024.1.17. http://www.moe.gov.cn/srcsite/A06/s7053/202112/t20211216_587718.html?eqid=8b8f2d3800022f870000000364439616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2a). 加强学生全过程纵向评价 提升融合教育针对性有效性. 인출 2024.1.12. http://www.moe.gov.cn/jyb_xwfb/moe_2082/2022/2022_zl30/202211/t20221114_989340.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2b). 2022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인출 2024.4.19. http://www.moe.gov.cn/jyb_xwfb/s5147/202307/t20230706_1067452.html
- De Boer, A., Pijl, S. J., & Minnaert, A. (2011). Regular primary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5(3), 331-353.
- Forlin, C., Chambers, D. (2011). Teacher prepar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increasing knowledge but raising concerns.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9 (1), 17-32.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assanein, E. E., Alshaboul, Y. M., & Ibrahim, S. (2021). The impact of teacher preparation on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in Qatar. *Helion*, 7(9), e07925.
- Larrivee, B., & Cook, L. (1979). Mainstreaming: A study of the variables affecting teacher attitud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3, 315-324.

- Koh, Y. (2018). A strategy to improve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towards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ut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2(8), 839-855.
- Kraska, J., & Boyle, C. (2014). Attitudes of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2(3), 228-246.
- Montgomery, A. (2013). Teachers' self-efficacy, sentiments, attitudes, and concerns about inclus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Putnam, R. T., & Borko, H. (2000). What do new views of knowledge and thinking have to say about research on teacher learning? *Education Researcher*, 29(1), 4-15.
- Robert, C., & Pratt, C. (1987). The attitude of primary school staff toward the integration of mild handicapped children. In *Technology resources and consumer outcomes: Proceeding of the 23rd Nation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llectual Disability* (pp. 207-218).
- Saloviita, T. (2015). Measuring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AIS scal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52, 66-72.
- Sundqvist, C., Björk-Åman, C., & Ström, K. (2023). Co-teaching during teacher training periods: experiences of Finnish speci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teacher candidate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7(1), 20-34.
- Turnbull, A. P., Winton, P. J., Blacher, J., & Salkind, N. (1983). Mainstreaming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Perspectives of parents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the Division for Early Childhood*, 6, 14-20.
- Widden, M., Mayer-Smith, J., & Moon, B. (1998).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on learning to teach: making the case for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inqui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130-178.

Weber, K. E., & Greiner, F. (2019). Development of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Attitude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Through First Teaching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al Needs, 2019(19), 73 -84.

원고접수 : 24.04.25.	수정원고접수 : 24.06.13.	게재확정 : 24.06.20.
------------------	--------------------	------------------

Abstract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Yajing Li*, JinJa Chung**, Xiaoyi F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11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on inclusive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a more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han 'averag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gender. As for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first-year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overall inclusive education, academic and behavioral expectations than third-year students. In addition, pre-service special

* Ph.D. Candidates,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Lecturer, Dept. of Special Education, Anshun University, China

**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 Ph.D. Candidates,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education teachers who did not take special education-related course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academic expectations, and behavioral expectations. Students who did not have experience in inclusive education, practice, and volunteer activities were more positive in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academic and behavioral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training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ese universities, the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and operated including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inclusive education.

Keyword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clusive educati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85 - 10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박영숙**, 전희정***

본 연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을 독립변수로, 직무소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며,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비인격화와 성취감 감소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이용자 수가 많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적을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성별이 남성일 경우 정서적 탈진과 비인격화가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성취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직무소진, 직무요구, 직무가치인식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큰나무하우스 시설장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 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중심 서비스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과 전문인력,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서비스에 있어서 종사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석여희, 최희철, 2016). 한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달리 지방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고, 대다수 지역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종사자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및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20년에 인원배치기준이 기존의 1인에서 2~3인 이상까지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 겸임이 가능하고, 증원 배치도 24시간 운영시설로 제한하는 등의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실질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2).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을 다양화하여 인력 배치와 운영 기준 등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환경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의 직무소진과 이직증가로 이어지고,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과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서비스의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이수희, 박현정, 2012; 김형주, 유태용, 2013; 김소희, 2015; 임주리, 김유정, 2016; 최광우, 이승윤, 2017). 상황이 이러함에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직무소진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현황이나 종사자가 인식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임주리, 김유정, 2016; 박숙경, 2018),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에 관한 종사자의 인식이나 대처경험 등(임해영, 김학주, 2015; 김라경, 2016; 임해영 외, 2019)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소진에 대한 김정남(2002)의 연구와 직무만족에 대한 석여희, 최희철(2016)의 연구가 있다. 김정남(2002)은 도전, 보상 등의 업무환경요인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20여년 전의 연구라 지금의 변화된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석여희, 최희철(2016)은 도전과 역할모호성 등의 업무환경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에 대해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소진 관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조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한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개인수준 및 조직수준에서 매우 다양한데,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과도한 요구들 때문에 직무소진이 발생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실천현장도 예외는 아니다(김소희, 2016; 김우호, 2017; 배종필 · 박수경, 2019; 오승환 외, 2024). 직무요구는 직무담당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직무특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면, 직무소진 현상이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이선우, 박수경, 2019; 최은희 외, 2021; 심재선, 2022). 앞서 고찰했듯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지원 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소진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는 타 직종에 비해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적 고려를 요구받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있고, 자신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그러한 가치들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긍정적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을 일컬어 일가치감 또는 직무가치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직무가치인식은 성공적인 업무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성장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직무가치인식은 직무에 대한 신념 및 선호의 정도라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김홍철, 2015; 백정립, 2017; 조영립, 2018; 김기현, 2022; 김양환, 임준형, 2022).

직무가치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높은 일가치감이나 직무가치인식은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져 직무만족을 높이고, 소진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오동근, 2004; 최유미, 2009; 이수희 · 박현정, 2012; 하오현, 이영환, 202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직무요구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직무소진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긍정적 요인으로 직무가치인식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무소진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

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 직무소진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가치인식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직무소진

소진(burnout)은 Freudenberg(1974)가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소진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인간적인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피로감’이라고 했다. 소진은 직무수행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직무소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직무소진은 주로 사람을 대하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휴먼서비스 전문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쉽다. 직무수행에 과도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며, 이는 고객 또는 타인이나 자기 업무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나아가 자존감까지 하락하게 된다(김홍철, 2015; 변계희, 2017; 심재선, 2022; 조민영, 2022).

Maslach과 Jackson(1981)은 직무소진의 구성요소로 정서적 고갈, 고객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직무소진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탈진은 직무소진의 핵심요소로 소모적 개념인 에너지의 상실과 더불어 자신의 의지로는 더이상 직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감정들로부터 고통받는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인 결핍 현상으로 열정과 관심이 소멸되고, 높은 피로감과 감정적인 상실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인격화는 조직과 고객에게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감정, 통

제의 부족으로 인한 냉소주의, 타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특징으로 하며, 보살핌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응 등을 의미한다. 성취감 감소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욕 상실, 좌절, 허탈감, 생산성의 감소, 업무능력 저하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석여희, 최희철, 2016; 손희경, 2021; 김기현, 2022; 오승환 외, 2024).

또한 Maslach과 Jackson(1981)은 직무소진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환경 특성, 개인 특성, 이용자 특성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차원적 문제라고 하였다. 나아가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은 종사자 개인 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관계 및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이용자의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과 이용자 변화의 매개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소진관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변계희, 2017; 손희경, 2021; 조민영, 202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소진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남(2002)은 장애인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전, 보상, 업무량, 자율성 등의 업무환경요인과 소진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특히 업무량이 전체 소진을 비롯하여 정서적 탈진과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희향(2014)은 아동 청소년 그룹홈 종사자들의 업무자율성, 역할인식, 역할갈등, 업무량 등의 직무특성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홍철(2015)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의 소진 연구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우호(2017)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직무자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직무요구가 증가하면 직무소진 역시 증가하고, 직무자원이 증가하면 직무소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정민(2019)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및 조직수준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낮았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소진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장애인 대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중심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유용한 주거정책으로 선호되면서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정부가 그룹홈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확대되어 오다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명시되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급증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지원기준과 인건비 지원기준,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등 주요 지원기준이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즉,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다수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석여희, 최희철, 2016; 임주리, 김유정, 2016; 김기수 외, 2017; 보건복지부, 2022).

인력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0년에 기존의 1인 배치에서 2인 또는 3인 이상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2명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 7일 운영시설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1명 또는 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장애인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하게 월 40시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방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역마다 인정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합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둘러싼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직무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배치기준 및 지원체계 상황을 종합하면, 종사자의 직위, 근무기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비율과 같은 근로환경 특성과 이용자의 성별과 이용자 수 등의 이용자 특성도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직무요구

직무요구는 직무담당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조직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직무특성을 말한다. 직무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면 직무소진 현상이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김소희, 2016; 배종필 · 박수경, 2019; 이선우, 박수경, 2019; 최은희 외, 2021; 심재선, 2022; 오승환 외, 2024). Karasek(1979)는 직무요구가 ‘해당 직무담당자에게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

적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정서적 소진이나 피로와 같은 생리적, 심리적 희생을 초래하게 되는 제반 직무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심재선, 2022 재인용). 실제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직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무담당자는 우울, 불안, 소진과 같은 부정적 반응들을 경험할 수 있다(김우호, 2017; 이선우, 박수경, 2019; 최은희 외, 2021).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Bakker 등 (2004)은 역할갈등, 역할모호, 고객갈등, 업무과다를 직무요구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역할갈등은 '개인이 상반된 기대를 받는 지위에 처해지는 것'으로, 개인적인 욕구와 역할요구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Beehr 등(1990)은 역할모호성을 '업무수행 시 업무에 대한 관련 정보부족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경험'으로 정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심재선, 2022 재인용). 역할모호성은 직무요구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할과부하는 성과목표가 높아 성취하기에 역부족이라 느끼는 경우나 업무량이 많아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직무과부하' 또는 '업무과부하', '역할과다'라고도 한다. 역할과부하를 유발하는 요소로는 비합리적인 작업과부하, 초과 작업의 압박, 장시간 고난도의 작업, 휴일 또는 휴식의 부족, 주어진 시간과 자원으로 는 거의 불가능한 기대수준 등이 있다(김도영, 김종인, 2015; 김우호, 2017; 손희경, 2021).

직무요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높은 직무요구가 고객과 자신에 대해 무관심이나 냉소와 같은 비인격화를 가속화시키며, 고객과의 분리감이나 정서적 거리감을 유발하고,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을 거쳐 수행자의 건강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소희, 2016; 배종필, 박수경, 2019; 이선우, 박수경, 2019; 최은희 외, 2021).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직무환경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행정, 회계, 안전 등 요구되는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기관도 예외는 아니며, 대부분의 업무를 종사자 1인이 감당해 내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가 인식하는 직무요구 정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직무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직무가치인식

직무가치 또는 일가치는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직무를 통하여 원하는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목표 상태를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갖는 신념과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가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신의 직무가치에 따른 직업선택의 동기가 되는 직무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무가치는 곧 동기라 할 수 있다. 가치가 개인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상태를 의미하듯, 직무가치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한다(오동근 외, 2004; 윤명수, 2018; 김홍철, 2015; 백정림, 2017; 김기현, 2022).

직무가치에 대해 Wollack 등(1977)은 직무의 몰입, 직무에 관한 보람, 직무활동의 선호도 등의 내적 가치와 신분 상승의 추구, 직무의 사회적 위세, 소득을 위한 태도 등의 외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Seibert와 Kraimer(2001)는 직무가치를 근본적인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로 설명하였는데, 근본적인 요소에는 경력 인정, 승진, 임금인상 등이 포함되며, 비본질적 요소에는 인간관계, 작업조건, 조직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윤명수, 2018 재인용). Hackman와 Oldman(1976)은 자기 일이 가치있고, 보람있고, 의미있다고 자각될 때, 일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고 했고, Kavanagh와 Bower(1985)는 긍정적인 정서상태가 미래의 직무수행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기대를 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Knoop(1993)는 일자체에 대한 성취감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Gardner와 Pierce(1998)는 일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방보경, 2017 재인용).

직무가치인식은 이러한 직무가치와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자신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그러한 가치들이 충족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긍정적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이 일을 통해 만족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와 직무에 대해 가치 있게 느끼게 되며, 성공적인 업무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성장 등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오동근, 2004; 최유미, 2009; 이수희, 박현정, 2012; 조영림, 2018; 하오현, 이영환, 2020).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타 직종에 비해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적 고려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무가치인식은 성공적인 업무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성장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홍철, 2015;

백정림, 2017; 김기현, 2022; 김양환, 임준형, 2022).

직무가치인식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가치인식과 긍정적 정서경험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차원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가치감이 높으면 종사자의 조직몰입 수준이 증가하고 직무몰입, 직무동기,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주며, 조직효과성 및 심리적 주인의식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일가치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오동근, 2004; 조영림, 2018). 또한 직무가치인식은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직무가치인식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조직효과성의 하위변인인 주인의식,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수희, 박현정, 2012; 백정림, 2017).

김홍철(2015)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의 소진 연구를 통해, 일가치감이 높을수록 클라이언트 관련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치감이 클라이언트 관련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명수(2018)는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직무가치인식과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만족,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지원인식과 직무만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오동근(2004)은 높은 일가치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진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무가치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높은 직무가치인식은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져 직무만족을 높이고, 소진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동근, 2004; 최유미, 2009; 이수희·박현정, 2012; 하오현, 이영환, 2020). 그러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느끼는 직무가치인식은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22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의뢰하여, 총 24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 비율이 낮은 일부 직종의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문항을 이한우(2019)가 사용한 1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 전체와 각 하위범주인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소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직무소진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은 0.850, 하위범주인 정서적 탈진은 0.898, 비인격화 0.660, 성취감 감소 0.89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직무요구는 심재선(2022)이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역할갈등 3문항, 역할모호성 3문항, 직무과부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무요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요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0.768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직무가치인식은 강철희 외(2013)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직무가치인식척도(Perceived Value of Work)를 윤명수(2018)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직무관련 3문항, 자기관련 8문항, 가치정서 3문항 구성되었다. 직무가치인식에 대한 응답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가치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가치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 0.944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환경특성 중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성별, 연령, 직종, 근무기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이용자 성별, 이용자 수로 7개를 선정하였다.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구분		척도설명
종속변수: 직무소진	정서적탈진	7개 문항, Likert 5점 척도
	비인격화	4개 문항, Likert 5점 척도
	성취감감소	8개 문항, Likert 5점 척도
독립변수	직무요구	역할갈등 3문항, 역할모호성 3문항, 직무과부하 4문항 총 10개 문항, Likert 5점 척도
	직무가치인식	직무관련 3문항, 지기관련 3문항, 가치정서 3문항 총 14개 문항, Likert 5점 척도
통제변수	성별	더미변수 : 남성=0, 여성=1
	연령	연령
	직종	더미변수 : 시설장=0, 사회재활교사=1
	근무기간	근무기간 년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이용자 성별	더미변수 : 남성이용자=0, 여성이용자=1
	이용자 수	이용자 수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환경특성, 주요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독립변수인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구성요소인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 158명(78.6%), 남성 43명(21.4%)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3.6배 더 많았으며, 연령은 50대가 100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54명(26.9%), 30대 이하 29명(14.4%), 60대 18명(9.0%)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사회재활교사가 118명(58.7%)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시설장겸 사회재활교사 48명(23.9%), 시설장 35명(17.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기간은 5~10년이 61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하가 30명(15.3%), 10~15년이 30명(15.3%), 2~5년이 58명(29.6%), 15년 이상이 17명(8.7%)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70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명(13.9%), 인천 23명(11.4%), 경기 18명(8.9%), 경남 17명(8.5%) 순서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43	21.4
	여성	158	78.6
연령	30대 이하	29	14.4
	40대	54	26.9
	50대	100	49.8
	60대	18	9.0
직종	시설장	35	17.4
	시설장 겸 사회재활교사	48	23.9
	사회재활교사	118	58.7
근무기간	2년 이하	30	15.3
	2~5년	58	29.6
	5~10년	61	31.1
	10~15년	30	15.3
	15년 이상	17	8.7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지역	강원	3
	경기	18
	경남	17
	경북	5
	광주	28
	대구	1
	대전	7
	부산	13
	서울	70
	인천	23
	전남	5
	전북	2
	제주	1
	충북	8

2)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흡별 직원 수는 1명이 112개소(55.7%)로 가장 많았고, 2명이 74개소(36.8%), 3명 이상이 15개소(5.5%) 순이었다. 이는 1개소당 평균 1.52명으로, 2020년말 기준의 전국 평균 1.53명(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과 유사한 결과이다.

월평균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이 55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0시간 미만이 54명(29.7%), 20~40시간 미만이 51명(28.0%)으로 60시간 이상과 응답수가 유사했다. 한편, 20시간 미만은 19명(10.4%),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3명(1.6%)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은 20시간 미만이 88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20~40시간 미만이 69명(35.9%), 40~45시간이 18명(9.4%)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17명(8.9%)으로 조사되었다. 출퇴근 형태에서는 출퇴근이 95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와 출퇴근을 병행하는 경우가 61명(30.5%), 상주는 42명(21.0%)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의 근무환경 특성 중 이용자 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이용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115명(57.5%), 여성은 77명(38.5%), 혼성은 8명(4%)이었으며,

이용자 수는 4명이 132개소(66%)로 가장 많았고, 3명 이하가 56개소(28%), 5명 이상이 12개소(6%)로 조사되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직원수	1명	112
	2명	74
	3명 이상	15
실제초과 근무시간	0시간	3
	1~20시간 미만	19
	20~40시간 미만	51
	40~60시간 미만	54
	60시간 이상	55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0시간	17
	1~20시간 미만	88
	20~40시간 미만	69
	40~45시간	18
출퇴근 형태	상주	42
	출퇴근	95
	상주와 출퇴근 병행	61
이용자 성별	여성	77
	남성	115
	혼성	8
이용자수	3명 이하	56
	4명	132
	5명 이상	12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수준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직무요구 평균은 3.02, 직무 가치인식은 평균 3.62로 직무가치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직무소진 평균은

2.4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구성요소별로는 정서적 탈진은 평균 3.15, 비인격화는 평균 1.79, 성취감 감소는 평균 2.42로 정서적 탈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직무요구	3.02	.59	.13	.07
	직무가치인식	3.62	.64	-.18	.12
종속변수	직무소진 전체	2.46	.47	.18	.17
	정서적탈진	3.15	.81	.12	-.23
	비인격화	1.79	.60	1.01	1.81
	성취감감소	2.42	.62	.40	1.00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한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연령	근무기간	직무요구	직무가치 인식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직무소진 전체
연령	1							
근무기간	.203**	1						
직무요구	-.034	.065	1					
직무가치인식	.223**	.077	-.246**	1				
정서적탈진	-.087	.068	.602**	-.264**	1			
비인격화	-.047	.072	.281**	-.404**	.412**	1		
성취감감소	-.272*	-.048	.072	-.464**	.006	.243**	1	
직무소진전체	-.183*	.068	.497**	-.528**	.746**	.772**	.554**	1

*p<.05, **p<.01

직무소진은 비인격화($r=.772$), 정서적 탈진($r=.746$), 성취감 감소($r=.554$), 직무요구 ($r=.497$)와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직무가치인식($r=-.528$)과는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직무요구는 정서적 탈진($r=.602$), 비인격화($r=.28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직무가치인식($r=-.246$)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가치인식은 성취감 감소 ($r=-.464$), 비인격화($r=-.404$), 정서적 탈진($r=-.264$)과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비인격화는 정서적 탈진($r=.412$), 성취감 감소($r=.243$)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연령은 직무가치인식($r=.223$), 근무기간($r=.243$)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성취감 감소 ($r=-.272$), 직무소진($r=-.183$)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직무소진 구성요소별 다중회귀분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 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고 직무소진 하위요소인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각각의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세 유형 모두 F값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7 이상, VIF값은 모두 2이하로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정된 R^2 값을 통해 살펴본 각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정서적 탈진이 37.6%, 비인격화 19.6%, 성취감 감소는 27.8%로 나타났다.

정서적 탈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요구($\beta=501$, $p<.001$), 이용자 수($\beta=173$, $p<.05$), 이용자 성별($\beta= -149$, $p<.05$),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beta= -141$,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이용자 수가 많을 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 성별이 여성일 경우 정서적 탈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격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가치인식($\beta= -413$, $p<.001$)과 이용자 성별($\beta= -168$,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자 성별이 여성일 경우 비인격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 감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가치인식()과 연령()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가치인식과 연령이 높을수록 성취감 감소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무소진 구성요소별 다중회귀분석

구분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β	t	β	t	β	t
독립 변수	직무요구	.501	7.324***	.131	1.706	-.048	-.655
	직무가치인식	-.119	-1.670	-.413	-5.189***	-.493	-6.502***
통제 변수	성별1)	.105	1.397	.121	1.440	.074	.924
	연령	-.101	-1.472	.017	.215	-.231	-3.167*
	직위2)	-.006	-.091	-.065	-.814	-.090	-1.186
	근무기간	-.050	-.757	.071	.962	.070	.990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141	-2.190*	.044	.606	.032	.457
	이용자 성별3)	-.149	-2.048*	-.168	-2.036*	-.002	-.030
	이용자 수	.173	2.574*	.086	1.148	-.058	-.804
R2		.423		.256		.332	
Adjusted R2		.376		.196		.278	
F		11.315***		4.267***		6.123***	

*p<.05, **p<.01, ***p<.001

주 : 1) 남성=0, 여성=1 2) 시설장=0, 사회재활교사=1 3) 남성이용자=0, 여성 이용자=1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직무요구와 직무가치인식을 선정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종, 근무기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이용자 성별, 이용자 수를 선정하였다. 직무소진의 하위구성요소인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3개를 각각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평균 2.46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하위 구성요소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서적 탈진 3.15, 성취감

감소 2.42, 비인격화 1.79로 정서적 탈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소진의 하위차원별 수준은 이선우, 박수경(2019)의 수도권 소재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탈진 3.09, 비인격화 2.23, 성취감 감소 2.41과 비교할 때, 정서적 탈진은 더 높았으며, 비인격화는 더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직무요구는 3.02, 직무가치인식은 3.62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우호(2017)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 2.62, 심재선(2022)의 중소병원 구성원의 직무요구 2.73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직무가치인식의 경우, 김홍철(2015)의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가치감 2.39, 백정림(2017)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일가치감 3.36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무소진 구성요소인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를 각각 종속변수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탈진에는 직무요구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이용자 성별, 이용자 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며,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많고, 이용자 성별이 여성일 경우 정서적 탈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격화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직무가치인식과 이용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자 성별이 여성일 경우 비인격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 감소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직무가치인식과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무가치인식과 연령이 높을수록 성취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를 다시 종합해보면, 독립변수인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며, 직무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비인격화와 성취감 감소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이용자 수가 많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적을수록 정서적 탈진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성별이 남성일 경우 정서적 탈진과 비인격화가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성취감 감소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을 높인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도영, 김종인, 2015; 배종필, 박수경, 2019; 손희경, 2021; 심재선, 2022). 또한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 구성요소 중 비인격화와 성취감 감소를 낮아지게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직무소진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별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더 세분화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무요구를 감소시키고, 직무가치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이용자 성별, 이용자 수와 같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근무환경적 특성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만큼,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인력배치의 확대 및 업무량의 조정이다. 이용자의 특성 및 고령화 등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력확대배치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근로기준법 준수와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력배치 기준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2022년 현재 1개소당 최대 3명의 직원을 배치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근로기준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지방 정부 사업인만큼 관련 지방정부의 의지와 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시간외 근무 시간 인정시간 확대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기준 개선과 특별수당 개설 등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쳐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명확한 업무기준의 설정과 업무표준화 및 점점 중증화, 고령화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인 인력배치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장이 사회재활교사를 겸직 할 수 있는 인력배치기준과 업무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가 각각의 고유한 직무에 충실히 수 있도록 업무표준화 및 업무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가 지원강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고령화되어 원래 설립 목적과는 다른 욕구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변화되는 욕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종사자의 직무 소진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용자 성별이 정서적 탈진 등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지원강도가 높은 남성 이용자는 남성 직원이 지원하는 등의 이용자 성별과 지원강도를 고려한 종사자 배치를 비롯하여 유형별, 특성별 공동생활가정의 적정 이용자 수 산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특성과 종사자 여건에 부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경력이나 직위 등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교육이나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욕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종사자들은 특히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임주리, 김유정, 2016),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작성 및 회계관리, 문서작성 및 기록, 서비스 제공 방법,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변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반영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사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취감 감소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연령이 낮은 종사자에게는 성취감 증진이나 경력개발지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연령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교육체계와 역량개발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종사자의 정서적 탈진을 예방하고, 직무가치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서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힐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가치인식이 직무소진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직무가치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과는 별도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지원이나 힐링 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기능과 종사자의 역할 등에 대한 가치적 차원에서의 재조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종사자의 업무와 교육, 대체인력배치 등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독립된 지원센터의 설치가 당장 어렵다면, 지역별 사회복지사협회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과 협력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인 직무가치인식과 부정적 요인인 직무요구를 같이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이로 인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전국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역별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지방정부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지역간 비교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자 성별 외에도 장애유형, 연령, 재학 및 근로여부 등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이나 근로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 특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나 이용자의 인권이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수, 권용명, 정지웅 (201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연구. 대전복지재단.
- 김기현 (2022).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조직 종사자 직무소진의 영향요인 연구 - 인도주의 가치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도영, 김종인 (2015). 비영리조직의 직무과부하 및 노력보상 불균형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 소명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22(6), 183-207.
- 김라경 (2016). 그룹홈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실태 및 자립지원 연구: 그룹홈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연구, 20(2). 1-24.
- 김명한 (2023). 직장인의 직업가치와 창업인식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3), 328-344.
- 김소희 (2015). 직무요구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와 사이버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6(4). 199-226.
- 김양환, 임준형 (2022). 사회적 가치인식이 공무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 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4(4). 559-579.
- 김소희 (2016).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7(1), 103-124.
- 김우호 (2017).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 - 직무자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남 (2002). 장애인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민 (201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및 조직수준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충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주, 유태용 (2013). 직무과부하가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와 성격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2), 317-340.
- 김홍철 (2015). 클라이언트관련 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기관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일가치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희향 (2014). 그룹홈 종사자들의 성격, 직무스트레스, 소진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보경 (2014). 절차적 공정성 및 일가치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소유의식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숙경 (2018). 종사자가 인식하는 그룹홈 정체성-탈시설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복지학, 42, 227-255.
- 배종필, 박수경 (2019).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정갈등의 매개효과 및 직장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HRD연구, 21(4), 59-85.
- 백정림 (2017).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일가치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계희 (2017). 병원 간호인력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 고객지향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 석여희, 최희철 (20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655-665.
- 성오현 (2013). 호텔 서비스 접점 직원의 직무요구, 소진, 직무열의 및 고객지향성간의 구조적 관계-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희경 (2021).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소진 연구- 감정노동, 직무요구, 긍정심리자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재선 (2022).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활용한 중소병원 구성원의 직무소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동근 (2004). 일가치감의 결정요인과 조직효과성,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동근, 이영석, 장재윤, 김명언 (2004). 일가치감 및 그 결정요인의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7(2), 187-221.
- 오승환, 한은영, 김유경 (2024). 사회복지사의 자기돌봄,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6(1), 65-92.
- 윤명수 (2018). 직무가치인식,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만족이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우, 박수경 (2019).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과의 관계-표면행위와 내면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9, 73-102.
- 이수희, 박현정 (2012). 호텔종사원의 특성에 따른 직무가치인식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1(2), 297-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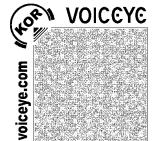
- 이한우 (2019). 맞춤형 복지팀의 직분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직무환경 및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형우, 김종인 (2020). 인지된 업무과부하가 직무태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원인별 분석,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107-126.
- 임주리, 김유정 (20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 22(3), 299-333.
- 임해영, 김학주 (2015). 성인기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대처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149-173.
- 임해영, 홍영준, 전주람 (2019). 발달장애인의 성문제행동에 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575-586.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
- 조민영 (2022).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직무과부하와 고용불안이 서비스질 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림 (2018).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일가치감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슈퍼비전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광우, 이승윤 (2017). 긍정심리자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직무과부하의 매개효과와 상사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8(10), 382-392.
- 최유미 (2009). 자원봉사의 주관적 가치인식과 인정경험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7(4), 1-30.
- 최은희, 윤미순, 이미경 (2021). 사회복지사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직무소진이 직업적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 직업건강연구, 3(1), 25-35.
- 하오현, 이영환 (2020). 병원종사자들의 직무가치와 직장가치인식 간의 관계에 조직성과 작각상태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2), 229-239.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2(2), 99-113.
- Freudenberger, H.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 159-165.
- Karasek. R. A.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at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285-308.
- Bakker, A. B. & Demerouti, E. & Verbeke, W. (2004). Using the job demand resources model to predict burnout and performance. Human Resource

- Management, 43, 83-104.
- Beehr, T. A. & King, L. A. & King, K. W. (1990). Social support and occupational stress: Talking to supervis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1), 61-81.
- Wollack, S. & Goodale, J. & Witjing, J. & Smith, P. (1977). Development of the Survey of Work Val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5, 331-338.
- Seibert, S. E. & Kraimer, M. L. (2001).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1-21.
- Hackman, J. R. & Oldman, G. R. (1976).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2), 250-279.
- Knoop, R. (1993). Work values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6), 683-690.
- Garnder, D. G. & Pierce, J. L. (1998).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An empirical examination.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3(1), 48-70.

원고접수 : 24.4.30.

수정원고접수 : 24.6.5.

제재확정 : 24.6.19.



Abstract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Perceived Job Value on Job Burnout of Group Home Work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YoungSuk Park*, HeeJeong Je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job demands and perceived Job value on Job burnout of group home work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nationwide, and 201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the final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the components of job burnout—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tion of personal accomplishment—as 24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job demands increased emotional exhaustion, while higher perceived Job value decreased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As for control variables, a higher number of users and fewer overtime pay hour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emotional exhaustion. Additionally, when users were predominantly male, there was an increase in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Furthermore, higher ag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personal accomplishment. Based on the results, specific recommendations to reduce job burnout of group home work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roposed.

Keywords: Worker in group home for the disabled, Job burnout, Job demands, Recognition of job value

* Head of Big Tree House, Group Home for the disabled

** Associate Professor, Social Welfar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11 – 130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 예외적 인정을 중심으로

화지원*, 김민지**

2022년,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J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죄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몰래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비밀녹음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와 예외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해당 법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II).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III),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핀 후, 웹툰작가 J씨 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적용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IV). 요컨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지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거나 상황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자폐성·발달 장애인, 또는 신체적 최종증장애인 등 방어 및 증거수집 등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모 등이 피해아동을 통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제어: 비밀녹음,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

**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부전공: 법학) 학부

I. 들어가며

지난 2023년 7월, 웹툰작가 J씨의 자녀가 특수교사 A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2022년 9월 13일,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피해자를 등교시켰고, 맞춤학습반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이에 J씨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결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¹⁾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또는 제1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녹음파일 및 그에 터 잡아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였던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그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이 사건으로 교육현장(교실 등)에서 비밀녹음을 한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위 사건 선고를 하기 한 달 전, 대법원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²⁾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생각건대, 특히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아동이 장애 등으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정도 또는 상황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 등이 피해아동을 통해 비밀리에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조화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대화에 대한 비밀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³⁾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선언하고 있다. 우리 법 체계는 「헌법」 제12조 제7항⁴⁾과 「형사소송법」 제309조⁵⁾에서 진술증거 중 자백에 관한 부

-
- 2) 해당 판례를 살피건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⁶⁾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에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발언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기방에 녹음 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3)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공판정에서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증거능력과 구별된다.
- 4)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

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⁶⁾에서 불법검열 또는 불법감청에 의해 수집한 증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 법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⁷⁾, 전문법칙⁸⁾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된 상위목적이자 이론적 근거는 적법절차의 보장, 즉 위법한 수사를 억제함으로써 공평한 재판의 원리를 실현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특히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은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이 법칙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증거 가치가 높은 증거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죄지은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반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신중한 조화가 필요하다.

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5)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6)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7)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술자의 자백을 얻어 낸 경우,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당 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8)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요증사실)을 경험자(원진술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원본증거)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전문진술)이나 서류(전문서류)의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해당 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증거배제의 기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라도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까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조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된다.

판례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증거수집의 주체

1) 국가기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가형별권의 정형적 실현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인바, 증거수집의 주체는 경찰·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법원이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닐 경우라도

국가기관이 고용한 사람이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일 때는 이 원칙에 구속된다.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상술한 것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본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라는 점에서,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해당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 학설

㉠ 권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 침해되는 권리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여 그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권리범위설(權利範圍說)’(김인희, 2018; 신양균, 2014; 하태훈, 1999; 서울지방법원 1997. 4. 9. 선고 96노5541 판결⁹⁾), ㉡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에 한해 위 법칙을 적용하자는 ‘이익형량설(利益衡量說)’(김상오, 2020; 김재환, 2013; 김종구, 2010; 노명선, 이완규, 2015; 신동운, 2014; 이주원, 2022; 임동규, 202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므로 사인이 수사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위임에 의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적용부정설’(이재상 외, 2022; 하태인, 2014¹⁰⁾),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인의 증거수집행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경우와 비교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적 동일기준

9) 서울지방법원 1997. 4. 7. 선고 96노5541 판결에서 “여자인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였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해당 인용 부분의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 및 폐기된 법리다.

10) 하태인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증명력에 관한 문제인 실체적 진실과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인 적법절차를 비교형량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이은모, 김정환, 2021)이 존재한다.

(2) 판례

판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여 ‘이익형량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3) 검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적 목적은 ‘공평한 재판 원리의 실현’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다. 생각건대, 권리범위설은 사생활의 영역이 공익의 실현을 위한 형사절차에 지나치게 반영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어느 경우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 권리범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적용부정설은 사인이 수사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는바,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지나치게 허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 동일기준설의 경우, 위법이 정당화되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설이 타당하다. 요컨대, 위법한 방법으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기관이 용인(容認)·방조·권장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김종구, 2010; 배종대, 흥영기, 2022), 그리고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따라 위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이창현, 2023; 정해성, 2017; 최용성, 곽대훈, 2020). 다만, 특별히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판례와 같이 이익형량설의 견지에서 실제적 진실발견에 기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녹음

1. 통신비밀보호법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¹¹⁾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하여 얻게 된 내용은 재판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수사기관이든 사인이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위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상술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통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재판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의 내용 중 특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얻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의 뜻을 살펴보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이때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② 대화의 내용과 목적, ③ 상대방의 수, ④ 장소의 성격과 규모, ⑤ 출입의 통제 정도, ⑥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2) ‘대화’의 의미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意思)’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의 소리 및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또한,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1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토론·발표 등도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검토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 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1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에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¹²⁾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수업시간 중인 학교 교실은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지, 학생의 부모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¹³⁾ 또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당사자 중 1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대화’라고 볼 것이므로,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개된 대화’일 것이고, 그 부모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IV. 비밀녹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 검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한 경우, 해당 자녀가 교육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해당 교육현장은 공개되었다고 평가되며, 자녀와 교사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1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듣기만 하더라도 대화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녹음을 지시하더라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정도 또는 상황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증거수집 등을 위해 제3자가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언어능력의 완전성 결여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 자폐성 장애 및 발달장애(발달성 언어장애 포함) 등으로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피해아동이 자폐성 장애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장애의 특성상 발화능력 부재 또는 지연, 초기 언어습득 지연, 비정상적인 발화 형태, 화용적 능력 부족, 총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이미선, 2008),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로 볼 수 없어 부모가 행한 비밀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모에 의한 비밀녹음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판례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13) 학부모 참관 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부모에게도 공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 갑(생후 10개월)의 집에서 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갑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갑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쫓,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쫓,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법원은 “피해아동은 아직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결국 본건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피해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본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는 주로 피해아동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조차 할 수 없어, 범죄 의심을 품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모친 역시 불가피하게 비밀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밀녹음을 통해서 드러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비밀녹음을 통해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¹⁴⁾

또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늦은 점심 무렵에 피해아동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들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현관문까지 끌고 가 “(생략) 너네들 절대 들어오지마.”라고 말하고 문 밖으로 내쫓았고, 2019. 봄 또는 가을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피해아동 B(당시 8세)가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닫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문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아동 C(당시 5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하였으며, 2019. 가을경 저녁 무렵 피해아동 C(당시 5세)가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현관문 쪽 창고에 있던 공구 펜치를 가져와 피해아동의 입에 펜치를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에 선고한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같은 해 6월에 확정되었다.

갖다대며 “이빨 확 다 빼버린다.(생략)”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B(당시 8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겨울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피해아동들에게 무서운 말투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가 화나면 죽여버릴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부친이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928 판결). 법원은 “비명이나 탄식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부족해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선 몰래 녹음 외에는 증거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64 판결).¹⁵⁾

2. 신체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이 직접 녹음한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부모가 몰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비밀녹음을 한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스스로 녹음조차 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침조차 스스로 못 삼키는 최증증장애인을 가진 아동이 특수학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교실 안 화장실에 갇혀 있던 사례도 있는데,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넣었던 녹음기 안에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며 “오줌을 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너 힘들게 할 방법은 되게 많아”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피해아동은 언어표현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흥채의 움직임을 모니터에 연결하는 기술을 활용해 어렵사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했고, 가해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김예원, 2024).

3.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위법성조각사유(또는 정당화사유)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은 배제되고 가별성은 없어진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유를 우리 「형법」에서는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제24조),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웹툰작가 J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3자인 모친이 자폐장애를 가지고

15)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928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있는 피해자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피해자를 등교시킴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맞춤학습반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한다면,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4조¹⁶⁾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

1)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그런데 당해 재판부는 위 사안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배제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6조 제1항 제1호 모두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라는 문언이 존재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처벌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하지 검토할 때 당연히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위법이 배제되고 가별성도 없어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제3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은 “위 사안의 경우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적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모친이 맞춤학습실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 중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①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라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6)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토

피해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인지능력, 언어능력, 표현력 등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당해 재판부는 이러한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선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바, 피고인의 학대 범행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거나 상황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아동학대의 정황이 의심됨에 따라 신속히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곧바로 판단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V. 나가며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에 한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야 한다(이익형량설 타당). 이러한 견해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례 입장과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를 위반하여 녹음한 것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 등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조사할 때는 구성요건(특히 '타인간의 대화')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¹⁷⁾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영·유아, 자폐성·발달장애인 등 언어능력에 결여가 있어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가 아니다. 또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신체적 최종증장애인도 예외적으로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였다면, 법해석상 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하기 이전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웹툰작가 J씨의 사례인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은 피해아동이 자폐성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언어능력에 비추어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를 해석·적용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교육 및 복지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범죄, 학교폭력 문제에서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 “피해아동은 아직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결국 본건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피해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참고문헌

- 김상오 (2020).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판단구조. *형사법연구*, 32(4), 207-241.
- 김예원 (2024. 2. 25). 녹음으로만 증명되는 학대도 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252008005#c2b>
- 김인희 (2018). *형사소송법(제2판)*. 고양: 피앤씨미디어.
- 김재환 (2013). *형사소송법*. 파주: 법문사.
- 김종구 (2010). 私人이 범죄행위로 수집한 위법증거의 증거능력. *법학논총*, 17(3), 381-400.
- 노명선, 이완규 (2015). *형사소송법(제4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배종대, 흥영기 (2022). *형사소송법(제3판)*. 서울: 흥문사.
- 신동운 (2014). *신형사소송법(제5판)*. 파주: 법문사.
- 신양균 (201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연구*, 26(2), 447-477.
- 이미선 (2008). *한국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특성 연구 : 형태-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초학문자료센터.
- 이은모, 김정환 (2021). *형사소송법(제8판)*. 서울: 박영사.
-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2022). *형사소송법(제14판)*. 서울: 박영사.
- 이주원 (2022). *형사소송법(제5판)*. 서울: 박영사.
- 이창현 (2023). *형사소송법(제9판)*. 고양: 정독.
- 임동규 (2023). *형사소송법(제17판)*. 파주: 법문사.
- 정해성 (2017).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형사법. *법학논총*, 24(1), 25-89.
- 최용성, 곽대훈 (2020).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그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디지털녹취록, 전자우편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217-240.
- 하태인 (201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25(4), 283-304.
- 하태훈 (1999).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12, 25-46.

원고접수 : 24.4.30.	수정원고접수 : 24.6.13.	제재확정 : 24.6.15.
-----------------	-------------------	-----------------

판례색인

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613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4.9. 선고 96노55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92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64 판결

Abstrac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ecret Recordings of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Focusing on Exceptional Recognition

JiWon Hwa*, MinJi Kim**

In 2022, the victim, who is a child of webtoon artist J, was abused by a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in the case of suing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for child abuse, the court recognized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secretly recorded by the victim's mother as evidence. This case has led to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secret recording and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exceptional secret recordings. By reviewing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exclusive rule, we examine whether the law applies to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of private individuals(II). Next, we will review the legal review of 'private conversations between third partie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III), examine cases in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confidential recording can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urt's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in the case of webtoon artist J(IV). In short, confidential recording of conversations between others is

* Master Studen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IT · Law,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Minor: Law), Dankook University

prohibi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but if parents have serious difficulties in defense and collecting evidence, such as autistic 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who have not developed language ability or physical severe disabilities, there will be room for acknowledg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confidential recording through the victim child.

Keywords: secret record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exclusionary rul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disabled person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31 – 155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비판적 분석

: 장애인 당사자 시각과 대리치유(cure by proxy) 관점

이상현*

전통 민속 연희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모방한 등장인물과 이른바 ‘병신춤’이 남아있다. 채희완은 이를 ‘춤출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추는 춤’ ‘춤출 수 없는 몸을 거두어 춤을 추어 몸의 굴레를 벗어난 육체 해방을 꿈꾸는 춤’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성이다. 전통 민속 연희에서는 장애인을 통해 기득권층을 풍자하고 장애인 역시 타자로 설정한다. 타자화는 ‘대리치유’로 드러난다. Titchkosky는 서구 맥락에서 ‘인간됨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애화 된 몸’을 관찰하면서 장애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장애화 한 몸은 변화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긴다. 대리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기보다 강제적 정상성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며,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이러한 노력의 보상으로 받게 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만든다. 전통 민속 연희가 장애를 다루는 시선에서 대리 치유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통 민속연희가 장애인을 다루는 기준 관점을 동질화가 빠진 타자화, 대리치유 논리로 보고,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전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수정하지 않는 전통 민속 연희 계가 장애 서사를 없애고, 예술적으로 전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을 것이다.

주제어: 장애인 모방, 장애 당사자성, 병신춤, 탈춤, 대리 치유, 타자화

* 춤 비평가

I. 서론

2021년 6월 제11회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서 존 크랑코¹⁾가 안무한 2막짜리 발레극 <말괄량이 길들이기>(국립발레단)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장면은 2막 1장 중 천방지축 카네리나와 결혼한 페트루키오가 아내를 길들이고자 하인들을 시켜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흉내를 내며 괴롭히는 안무 부분인데, 원작에 없는 부분을 존 크랑코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넣은 장면으로 2분이 채 안 된다. 존 크랑코 재단은 한국에서의 (장애인 비하) 논란을 이해하고 안무를 변경하였다. 이 작품의 장애인 비하 논란은 2016년 영국 베밍엄 로열 발레단 공연 리뷰를 통해 제기되었지만, 논란이 더 확대하지 않았다.

존 크랑코의 3대 드라마 발레 작품 중 하나인 이 작품이 장애인 당사자(장애인 부모)의 항의를 받아들여 장애인 비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존 크랑코 재단의 판단은 최근 서구 예술계가 점차 ‘정치적 올바름’²⁾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우리나라 예술 중에는 장애인 비하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가 여전히 남아있다. 탈춤과 세시 민속 놀이 등 전통 민속연희에서 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른바 ‘병신춤’으로 부르는 장애인 모방춤을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연희한다.

이에 관한 비장애인의 대표적인 해석은 ‘병신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병신 흉내를 내어서 추는 춤으로, 춤 내용으로 보아 제대로 춤출 수 없는 사람들의 춤’ ‘춤출 수 없는 사람들 을 대신해서 추는 춤’ ‘춤출 수 없는 몸을 거두어 춤을 추어 몸의 굴레를 벗어난 육체 해방 을 꿈꾸는 춤’ ‘사지는 멀쩡하나 모두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폭로하듯이 추는 비판적 측면이 있다.’ ‘병신춤에는 춤출 수 없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놀자는 인간적인 측 면이 있다.’ ‘그래서 결코 신체 장애인을 모멸하기 위한 춤이 아니다.’ 등³⁾이다. 이런 해석은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해석이라는 차각을 갖게 해 장애인을 모방하는 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관객에게 윤리적 면죄부를 제공한다.

존 크랑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와 전통 민속연희에 장애인 당사자 시각이 없는 것은 마 찬가지이지만, 전자의 경우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하였고, 후자는 지적조차 없다는 사실에서

-
- 1) John Cyril Cranko(1927~1973) 남아공 출신으로 Royal Ballet과 Stuttgart Ballet 안무가 역임. 대표 작으로 <말괄량이 길들이기>(초연 1969년), <로미오와 줄리엣>(초연 1958년), <오네긴>(초연 1965년)이 있다.
 - 2) political correctness(PC),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신념, 또는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운동. (출처 : 나무위키)
 - 3) 채희완 (2013). 지극한 기운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도서출판 전망. 177-178.

큰 차이가 있다. 주목할 점은 장애인을 희화화한 모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차적 문제이고, 더한 것은 비장애인 시각에서 합리화해 해석한다는 점이다. 채희완의 해석은 장애인 모방이 내포하는 장애인 타자화, 대상화를 통한 비하, 배제, 소외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이는 김은경⁴⁾(2022).『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140쪽)이 말한 ‘대리 치유(cure by proxy)’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대리 치유는 장애화 된 몸이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변화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고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은 ‘대리치유’의 대상이 된다. 대리로 치유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기보다 강제적 정상성(compulsory normality)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며, 동시에 장애인을 이러한 노력의 보상을 받는 수동적 대상으로 만든다.⁵⁾

김은경(2022)은 대리 치유를 하는 대리인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리 치유 개념은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 모방을 해석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춤출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추는 춤’ ‘춤출 수 없는 몸을 거두어 춤을 추어 몸의 굴레를 벗어난 육체 해방’을 꿈꾸는 춤’과 같은 해석은 대리 치유 개념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한정한 대리 치유 개념을 전통 민속 연희의 장애인 모방에 관한 해석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치유는 혈연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자 또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연희의 해석에서는 대리치유로 고통을 공유하는 대상이 없고, 지향점도 다르다.

대리 치유 논리는 장애인 당사자 시각을 배제할 때 적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리 치유와 장애인 당사자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연구는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고 대하는 방식 및 해석 관점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 관점의 기존 해석과 의미 부여가 정당한 것인지 되물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4) 미국 시라큐스 대학 여성/젠더 학과와 장애학 프로그램 부교수

5) 김은경. 같은 책 140-141.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에서의 장애인에 관한 미학·철학적 관점

전통 민속 연희 속 장애인 등장인물, 장애인 모방 춤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소수의 관련 연구는 주로 비장애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면서 논의 확산이나 새로운 연구 시도를 찾을 수 없다.

이화진의 박사학위 논문 「장자(莊子) 사상에서 본 범부춤과 병신춤 심미 구조에 관한 연구 -하보경과 공옥진을 중심으로」⁶⁾는 “병신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불구자를 모방한 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병신춤은 지배층들에 대한 반항과 애환이 담긴 감정을 외형적인 불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내면에 깔린 시비·차별·모순 등의 상반된 감정을 없애고자 하였다. 따라서 병신춤은 현실의 부자유와 갈등 속에 담긴 피지배층들과 지배층들과의 부조화(不調和)와 갈등을 없애는 덕의 미학이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김경미의 석사학위 논문 「병신춤의 민중적 미의식 연구 - 밀양백중놀이를 중심으로」⁷⁾에서 도 “병신춤은 신체장애인 등 춤을 출 수 없는 신체적 불구자가 주는 춤이자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하거나 제구실하지 못하는 의미의 정신적·사회적 병신까지 포함하는 춤이다. 이처럼 모방 춤이자 장기 춤의 하나로 즉흥적이면서도 희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춤사위 속에는 인생의 불행과 고독, 그리고 절망이 짙게 깔려 풍자와 비판의식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한다.

이남영은(2007. 『우리 춤 철학 입히기 – 춤·신명 카타르시스 비교론』. 도서출판 문사철) “타자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병신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병신은 세상의 기운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삶의 운명은 슬프면서도, 강한 의지를 갖춰야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어긋난 관계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의 춤은 경험자로서 오히려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⁸⁾라고 분석한다.

6)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예술철학 전공, 2010

7) 부산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1999

8) 이남영 (2007). 같은 책 396.

이화진은 논문에서 ‘장애인’을 ‘불구자’라고 부른다. ‘불구자’는 ‘후구샤’(不具者, ふぐしゃ)라는 근대 일본어에서 온 말로 ‘장애인’이 통용되기 전 사용한 용어⁹⁾인데, 2010년 박사 논문인데도 장애인에 관한 호칭 문제를 연구자는 물론 심사위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화진은 “병신춤은 현실의 부자유와 갈등 속에 담긴 피지배층들과 지배층들과의 부조화(不調和)와 갈등을 없애는 덕의 미학이 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병신’인 장애인을 몸과 마음의 부조화를 가진 존재로 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조화에 ‘덕의 미학’¹⁰⁾이 내재한 것으로까지 본다. 이는 장애인을 철저히 타자화한 관점이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겪는 배제와 소외 그리고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덕’이나 ‘미학’의 개념으로 미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미화가 아니라 장애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지배층에 대한 반항과 애환을 장애인의 모습에 투영하는 것은 장애인을 도구적 시각에서 대상화한 것에 불과하다.

김경미는 병신춤의 “춤사위에 인생의 불행과 고독, 그리고 절망이 짙게 깔려 풍자와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한다. 장애인을 불행하고 고독한 존재로 보고, 그것을 통해 세태 풍자와 비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간의 불행과 고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장애인이 불행하고 고독하다면 그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시스템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춤을 출 수 없는 신체적 불구자’라는 표현에는 춤출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다는 의미로 취미와 신명의 표출로 춤추는 행위조차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있다. 모더니즘 댄스에서 춤추는 몸은 훈련된 몸으로, 춤출 수 있는 몸은 따로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포스트모던 댄스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컨템포러리 댄스에서 몸에 관한 모더니즘적 사고가 급격하고 전복하고 있다. 장애인을 ‘신체적 불구자’로 표현한 부분은 이화진의 장애인 표현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남영은 장애를 운명과 연결 짓는다. “병신은 세상의 기운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삶의 운명은 슬프면서도, 강한 의지를 갖춰야 삶을 살아나가 수 있는 존재”

9) 박희병 (2003).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 古典文學研究 제24집. 310.

10) 일본에서 ‘불구’가 복자(福子) 신앙이라는 것도 관련되어 있다. 요즘 말하면,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 집이 번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체장애에 있어서는, ‘지혜의 주머니’로 여겨지고 있는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彦名命)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쿠에비코(久延毘古)는 움직일 수는 없지만 천하의 모든 것을 아는 신이다. 쿠에비코의 별칭은 야마다노소호도(山田之曾富鷗)이었는데,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리가 하나인 허수아비를 뜻한다.(조원일 「장애와 문화: 그 역사적 질곡과 복원에의 염원」,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2판』 학지사, 2023. 209쪽 - 덕의 미학은 한국 정서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일본의 장애문화에 관한 신학적 측면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은 장애가 인간 삶의 여러 조건 중 하나이고, 그 어떤 인간도 운명적으로 특정한 상황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사고조차 비껴가고 있다. 장애를 운명과 연관 짓는 생각은 장애 인식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 장애가 운명적이기에 장애인은 죽을 때까지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생각은 왜곡된 종교적 시각이 만든 것으로 장애가 전생의 업보이거나 신의 의지로 고난을 주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또한 “자연과 어긋난 관계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의 춤은 경험자로서 오히려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을 샤페처럼 공동체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배제를 통해서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호모 사케르’¹¹⁾ 같은 존재로 여긴다.

탈춤 등 민속 연희에서 양반을 각종 병신으로 설정한 것은 양반의 무능력함이나 부도덕함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민중¹²⁾은 양반을 병신으로 만들어 조롱하고 희화화해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런 점이 당시 시대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해도 장애인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 기존 연구의 한계는 장애를 운명적 불행으로 보거나, 장애인의 몸을 춤출 수 없는 몸으로 생각하며, 부조화, 고난, 불행, 고독, 절망과 장애인을 연결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철저히 타자화한 시각으로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 장애인 당사자성과 대리치료

1) 장애인 당사자성

엄밀하게 따지면, ‘장애인’은 비장애인 시각에서 인간을 임의로 분류한 범주이다. 인간의 다중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장애 여부로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11) Giorgio Agamben(1942~)은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새물결, 2008)에서 배제 속에 작동하는 벌거벗은 생명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 신성한 생명)에 관해 말한다.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존재이다. 그는 이미 신의 소유이므로 희생양(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인간 공동체의 법/권리의 보호 바깥에 위치하기에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영역에서도 배제된다. 혹은 이렇게 배제되는 조건으로만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

12) 민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민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중(民衆)은 ‘다수의 민’을 가리키거나 피지배 계층으로서 일반 국민을 지칭하기도 한다. 민중 개념은 쉽게 정의할 수 없으며, 통사적 접근이 필요한 개념이다. 장애인도 민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중이란 말이 차별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중이라는 말은 그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을 무화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여기에서 민중과 장애인을 따로 쓴 것은 민중이란 개념 속에 존재는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필자 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이란 용어에도 장애인의 입장은 배제되었다.

‘장애인’라는 표현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규정하는 용어다. ‘우(友)는 ‘~의 친구’라는 뜻으로 이, 삼인칭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일인칭으로 쓸 수는 없다.¹³⁾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진화론적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을 신체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환경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모델은 정상성에 관한 관념이 변화한 시기에 등장했다. 장애가 일종의 미학적, 정치적, 문화적 관념임을 전제로 하며, 장애 자체가 복잡한 사회관계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문화적 모델은 장애인이 창조적 요소를 잠재한 하나의 존재 양상으로 본다. 이처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가능성은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한다.

장애를 정의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 현실 상황에서 나타나며, 사회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¹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용어가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온전히 반영한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 입장, 즉 당사자성은 무엇인가. 장애는 의학적 정의와 진단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과정 속에서 같은 범주로 명명되기도 하고 특정한 억압과 폭력의 경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회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몸을 포섭하거나 밀쳐 내는 동력을 만드는 담론으로 작동한다. 장애인은 이러한 억압과 폭력, 배제와 차별의 대상으로써 정치적, 문화적 경험을 체화하는 존재다. 이는 비장애인의 경험할 수 없으며, 장애인만이 겪는 현실이다. 장애인 당사자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수동적 존재로 남기를 강요하는 현실, 사회체제의 부당한 면을 바라보는 위치,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끊임없이 점검 당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관점이 장애인 당사자성이다. 당

13) 김도현 (2020).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39.

14) Susan Wendell (2021). 거부당한 몸(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그린비. 39.

사자성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동정, 봉사, 극복¹⁵⁾의 시각과 대척점에 있는 시각이다. 당사자성은 장애인에 관한 기존의 사회 인식을 흔들어 균열을 낼 수 있다. 최근 들어 연기에서 ‘크리핑업(criping up)¹⁶⁾’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는 결함이나 결여가 아니라 다름이며 특수성이어서 장애인 당사자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2) 대리 치유(cure by proxy, 대리인을 통한 치유)

김은경의 책에는 대리치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itchkosky¹⁷⁾*는 서구 맥락에서 “인간됨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애화한 몸을 관찰하면서, 장애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간주하는데, “장애가 인간으로 여겨지는 기준의 한계점과 최극단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그 생명력이 박탈되며, 장애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도 은폐된다.” *Titchkosky*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세상을 다르게 인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상태로만 이해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 장애화한 몸은 단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장애 경험의 관계적이고 젠더화된 양상은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이 치유 행위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장애에 영향을 끼친다. 나는 이런 행위자를, 치유를 위한 대리인(proxy for cure)으로 부른다. 대리인을 통한 치유(혹은 대리 치유, *cure by proxy*)는 비장애인 가족의 행동에 따라 장애인의 치유가 결정되는 의존의 조건을 형성한다. (...) 대리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기보다 강제적 정상성(*compulsory normality*)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여하며, 이와 동시에 장애인을 이러한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든다. 대리 치유의 논리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장애인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행위성과 주체성이 자신을 대표

15) 김도현. 같은 책 26-29. 김도현은 우리시대의 유력한 대중매체라 할 수 있는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서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유형을 대략 동정, 봉사, 극복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류적 시각으로 본다.

16) 비장애인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개념.

17) Tanya Titchkosky(1966~), 사회학자, 뉴욕대학교 교수

하고 자신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상정한다면, 대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행위성과 주체성에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¹⁸⁾

설명에 따르면, 대리 치유를 하는 대리인은 가족이다. 대리 치유 개념은 이미 대부분의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가족 중 부모는 자식의 장애가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초자연적 영역에 의존해 대리 치유를 행한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은 사회와 일정 부분 분리되어 배타적인 공동체로 살아간다.

장애인 가족이 치유의 대리인이 되는 대리 치유 논리를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대리 치유는 장애를 ‘정상’을 기준으로 극복해야 할 상황으로 본다. 완전한 정상까지는 아니라도 정상에 가능한 가까운 상태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장애인 자신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에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됨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애화한 몸은 타자가 치유하지 않으면 정상성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채희완의 병신춤에 관한 해석은 대리 치유 논리가 가족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치유는 가족이 희생하고 가족을 고립시키는 데 반해 확대된 대리 치유는 희생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의 몸을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이 투영된 상태로 보고 이를 희화화하고 소외시킨다.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철저하게 도구화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치유 서사 안에서 장애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 지나쳐 버려야 할 과거 혹은 약속된 정상성이라는 유토피아적 미래로 간주한다. 장애의 현재성을 빼고 과거와 미래에 위치시키는 치유 폭력의 ‘접힌 시간성’은 장애인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을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이러한 폭력은 장애인의 삶을 제멋대로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 위치시킨다. 대리 치유적 관점은 장애인의 현재를 끊임없이 부정해 장애인의 삶을 박탈한다. 예술에서 대리 치유적 관점 또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준을 강화한다. 이로써 장애는 예술에서도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리 치유 관점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치유되지 않을 권리, 정상성에 포섭되지 않고도 예술적 주체가 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서이다.

18) 김은경. 같은 책 139-141.

III. 본론

1. 전통 민속연희 속 장애인

1) 탈춤 속 장애인 등장인물과 역할

탈놀이(탈놀음) 혹은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공연하는 연극이다. 탈춤이라고 해서 무용은 아니다. 탈춤의 영어단어 표기는 ‘Mask Dance’가 아닌 ‘Mask Drama’이다. 원래 황해도 탈춤만 ‘탈춤’이라고 하고, 다른 지방 것은 ‘산대놀이’, ‘들놀음(야류)’, ‘오광대’ 등으로 부른다. 탈춤의 연원은 탈춤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간 놀이 패가 스스로 즐기면서 전승한 민속극으로 볼 때 유래를 알기 어렵다. 조동일은(2006.『탈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하회탈춤에서처럼 신을 나타내는 탈이 사람을 나타내는 구실을 아울러 하면서 자연과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술이 사회적인 갈등을 표현하는 예술로 바뀌는 과정에서 탈춤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탈춤에서 장애인 등장인물로 나오게 되는 계기를 추측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갈등인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반목과 대립을 표현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공동체에 속한 존재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남영은 탈춤과 같은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끌어들인 이유를 장애인(병신)은 운명이 슬프면서도 강한 의지를 갖춰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모순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기에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한다.

탈춤은 장애인에 관한 민중의 인식을 언어, 탈의 형상, 몸짓까지 다각도로 보여준다. 탈춤에 등장하는 장애인 캐릭터는 한센인(문둥이), 척추장애인(꼽추), 언어장애인(언청이), 곰보(천연두 후유증), 지체장애인(절름발이), 째기(얼굴이 심하게 빠뚤어진 인물) 등이다. 탈춤에서는 주로 양반을 ‘병신’¹⁹⁾으로 설정한다. 이는 양반의 무능력과 부도덕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즉,

19)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병신’, ‘殘疾之人’, ‘殘廢之人’, ‘廢疾者’ 등으로 불렀다. 이 중 병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 말은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말로서 식자종이 사용한 文語예 해당된다. ‘병신’이라는 말은 한자어 ‘病身’에서 온 말로서, 그 原義는 ‘병든 몸’ 혹은 ‘아픈 몸’이라는 뜻이다. ‘병신’이란 말의 원래 뜻에는 가치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시선’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 이 말은 그 뜻이 바뀌어 ‘신체장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꽤 역설 적이지만 경멸어로서의 ‘병신’이라는 말은 조선후기 민중의 힘이 상승하던 시기의 소산이다. 병신이라는 단어는 주로, 그리고 애초, 몸을 보는 시선이 담긴 말로 성립되었지만 급기야 이 말이 사용되어가던 어느 단계에 이르러 비단 몸만이 아니라 정신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격(Personlichkeit)을 폄하하거나 멸시하는 말로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렇듯 병신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역사시기에 성립하여 점

양반을 병신으로 조롱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 몸과 정신이 건강하다는 우월감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서 건강한 신체는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뜻하는데, 양반을 병신으로 조롱하는 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양반과 병신을 일체화함으로써 장애인도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 과장에 나오는 양반 삼 형제(첫째 샌님, 둘째 서방님, 셋째 도련님)은 모두 장애인이다. 첫째는 쌍언청이고, 둘째는 언청이, 막내는 입비뚤이다.

〈통영오광대〉 양반은 얼굴 한쪽이 변색하였거나(홍백), 곰보이거나, 얼굴이 심하게 틀어져 있고, 문동이양반까지 있다.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진주오광대〉에도 문동이 과장이 있는데, 문동이 또는 어딩 이²⁰⁾라고 하는 장애인 등장인물이 나와 비정상적인 몸짓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장면은 모든 오광대에 있어, 오방신장무와 문동이 과장은 오광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산오광대〉 문동이는 다른 오광대와 달리 문동이의 신분이 양반이 아니다.

장단이 올리며 문동이들이 탈판 입구에 들어온다. 들어오자 지게 도움을 하며 하나하나씩 넘어지며, 모두 일어서서 병신 짓으로 덧배기춤을 추며, 춤판에 나서는데 넷이 먼저 등장하고 하나는 뒤에 쳐져 나중에 등장한다. 입찌그랭이, 코빠진 놈, 눈찌그랭이, 귀빠진 놈, 안팠곱추, 절름발이, 곰배풀이의 겹병신 5명이며 서로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없다. 치량하게 병신짓으로 덧배기 춤을 추는데, 춤이 멈추면 도(都)문동이를 선두로 관객들에게 동냥을 나서 장타령을 합창한다.²¹⁾

〈가산오광대〉의 문동이는 시끄럽고 비열하며 부도덕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표현에는 문동이(병신)로 대표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간생이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살펴본 것처럼 오광대의 대표적인 장애인 캐릭터인 문동이는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표현한다. 이들 중 통영과 고성, 진주의 문동이에게서 대리 치유 논리를 엿볼 수 있다. 이 세 지역에서는 문동이가 혼자 나와 독무를 추는데, 처음에는 불치의 병을 앓은 비애를 부자연스러

접 더 그 솜意를 확장해갔다. (박희병, 311~312쪽)

20) 가산오광대에서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마마를 앓는 아이를 업고 등장하는 인물로 문동이탈을 쓴다.

21) 이훈상 (2004). 가산오광대. 국립문화재연구소. 142.

운 몸짓으로 표현하다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내면의 신명을 표출한다. 비장애인 춤꾼이 춤출 수 없는 몸을 가진 장애인을 대신해서 춤을 추어 육체의 해방을 꿈꾸게 한다는 채희완의 해석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북청사자놀이〉의 ‘마당놀이 마당’ 6과장이 ‘꼽추춤 과장’이 있다.

무동춤이 끝나면 양반은 꼭쇠에게 꼽추춤을 불러들이라고 한다. 꼽추춤은 꼽새춤이라고도 하며 장단이 매우 빠르다. 가슴과 등에 형겁을 넣어 불룩 튀어나오도록 하고 흥겹게 춤추는 모습은 불구자라는 동정보다는 오히려 웃음만 자아낸다. 구경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춤의 하나이다. 꼽추춤은 다른 춤과 달리 춤추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춤사위의 내용은 뒤풍거리며 걷는 것, 앉아서 걷는 것 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서 연희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 춤사위를 살리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을 연출한다.²²⁾

꼽추춤은 다른 장애인 모방춤과 달리 유희적 성격이 강해 장애인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또한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타자화한 것이다.

2) 민속놀이 속 장애인

탈춤 외 민속놀이에도 장애인을 모방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밀양백종놀이〉이다. 밀양 지방은 반상의 차별이 대단히 심한 곳이었다고 한다. 양반은 잡동사니 패거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상놈을 무시하였다.²³⁾ 이런 이유로 밀양 지방에서 유독 양반을 풍자·비판하는 놀이가 발달하였다.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고된 일을 해오던 머슴들이 음력 7월 15일경 용 날을 선택하여 지주들로부터 하루 휴가를 얻어 흥겹게 노는 놀이를 말한다. 이러한 놀이는 호미씻기라 해서 벼농사를 주로 했던 중부 이남 지방의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밀양에서는 머슴날이라고 하며 지주들이 준비해 주는 술과 음식을 일컫는 꼴배기침을 먹으며 논다고 해서 꼴배기

22) 전경욱 (1997). 북청사자놀이연구. 태학사. 36.

23) 정병호 (1993). 한국의 민속춤. 삼성출판사. 479.

참놀이라고도 부른다. 춤판은 양반춤으로 시작되는데 장단에 맞추어 양반답게 느릿하게 추고 있으면, 머슴들이 양반을 몰아내고 난쟁이, 중풍장이, 배불뚝이, 꼬부랑할미, 떨떨이, 문둥이, 곱추, 히줄대기, 봉사, 절름발이 등의 익살스러운 병신춤을 춘다. 밀양 백중놀이의 특징은 상민과 천민들의 한이 전체놀이에서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신춤과 오복춤은 밀양에서만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배김내사위는 이 놀이의 주된 춤사위로 춤동작이 활달하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왼손과 왼발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특이하다.²⁴⁾

춤판은 ‘양반놀이’에 이어서 벌어지는데, 양반놀이에 등장하는 양반은 째보양반, 고자양반, 병어리양반 등 탈춤의 양반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인물이다. 밀양백중놀이의 병신춤은 놀이의 중심이어서 ‘병세이굿(병신굿)’으로 불리기도 했고,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 ‘밀양병신굿놀이’로 경남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지금의 <밀양백중놀이>는 ‘밀양 병신굿놀이’의 개칭이다. 놀이의 이름부터 노골적으로 장애인 비하가 담겨있었다.

1970년대 밀양 교육청은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병신춤을 금지했고, 밀양시 북쪽에 있던 한센인촌 사람들이 백중놀이 전수회관을 습격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밀양백중놀이의 병신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장애인 입장에서 매우 모멸적으로 느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백중놀이의 병신춤을 비판하는 기류는 흐지부지되었고, 장애인 모방이 약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비판적 논의는 전무하다.

2. 전통 민속연희가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

탈춤과 <밀양백중놀이>의 내용에서 공통된 부분은 벽사진경 의식을 포함한다는 점과 지배층과 민중을 대립하는 구조로 두고 지배층을 풍자로 비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풍자와 비판은 주로 장애인 캐릭터를 설정해서 이루어진다. ‘병신’이라 부르는 장애인을 통해 민중이 부패한 지배층에 비해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민중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민중은 지배층의 무시와 좌취, 억압에 신음하면서도 그 체제를 실제로 바꿀 수 없었다. 민중과 지배층의 관계 역전은 탈춤과 민속 연희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극적인 형식으로만 가능했다. 탈춤과 민속놀이는 일종의 축제였다. 축제는 일상에서 금지하거나 규제받는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기회로, 이를 통해 사람들은 지나온 시

2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간을 어느 정도 개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 현대 축제는 종교적 의미와 의식적인 부분이 거의 제거되고 단순한 오락거리와 유흥이 중심을 차지했지만, 틸춤과 민속 연희가 성행했던 조선시대에는 오락과 유흥을 사회 구조의 모순을 깨발리는 데서 찾았다. 이런 민중 축제는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 유럽에서 한때 행해졌던 ‘바보제’²⁵⁾가 있다.

틸춤과 민속 연희가 얹눌린 민중의 숨통을 잠시나마 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 민중은 지배층을 비하하고 조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계층, 즉 그들이 얕잡아 보아도 반발할 수 없는 대상을 끌어들이면서, 지배층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민중 계층을 소외시켰다. 이 장에서는 틸춤과 민속놀이에서 장애인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풍자와 비판의 도구

‘풍자(諷刺, Satire)’는 라틴어 ‘lanx satura(가득 담긴 접시)’에서 유래했다. 구세대나 불합리한 권력을 공격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깔려있다. 대상의 허구를 폭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법보다 조소, 경멸, 모욕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권력자나 지배층이 주 대상인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풍자의 주체는 대상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해야 한다. 풍자에는 대상을 희화화한 웃음이 필수다. 웃음은 권위를 무너트리는 손쉬운 도구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는 신성한 종교의 입장에서 ‘웃음’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배경이 깔려있다. 등장 인물들이 ‘웃음은 우리에게 해악인가?’라는 주제로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작가 에코는 시학에서 비극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도 다루겠다고 했지만, 그와 관련된 저서가 전해지

25) 중세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바보제’라고 불리는 휴일이 성행했다. 경건하기만 하던 사제들도, 근엄하기 이를 데 없던 어르신도 모두 징글맞은 가면을 쓰고 거리로 뛰어나온다. 목청을 뽑아 노래를 부르는 사람, 술에 취해 마냥 흉겨워하는 사람, 풍자와 조소를 퍼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바보제 기간에는 풍속이나 관례를 아무리 조롱해도 상관이 없으며 국가 최고 명사들을 대상으로 야유를 퍼부어도 용납이 된다. 바보제가 불편했던 고위층과 성직자들의 방해로 1431년 바젤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했지만,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바보제란 한 문화가 스스로 국가의 가장 신성한 관례나 종교적 관습을 주기적으로 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실증한다. 1년에 한 번이지만, 문화 스스로 전적으로 이질적인 세계를 공상해 본다는 것, 즉 상민이 양반이 되고 전수된 가치가 뒤바뀌며, 바보가 임금이 되고, 성가대의 소년이 사제가 되어 본다는 것은 막중한 가치를 지닌 사건이었다. (Harvey Cox (1977). 바보제. 현대사상사. 11-12.)

지 않는 이유를 실제 희극을 다룬 시학 2권이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모종의 이유로 소실되었으리라고 추정하면서 이를 소설에 반영하였다. 탈춤과 민속연희에서 기득권층의 권위를 무너트리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는 장애인(장애화 한 몸)이다.

탈춤과 민속 연희에서 장애는 양반이나 파계승 같은 지배·기득권층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장애인의 몸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상과 대비하면서, 장애를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상태로 고착화한다. 결국 비장애인을 비하해 ‘정상’을 강조하고, 그 정상은 기득권층이 아닌 민중인 자신들이라고 자위한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좋아 할리가 없다. 어떤 사람도 웃음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더구나 반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희화화는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희화화를 사회가 용납했다는 점이다. 관객은 당연한 듯 장애인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트린다. 장애로 인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움직임과 표정은 누구를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탈춤과 민속 연희에서는 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더해 ‘춤출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추는 춤’ ‘춤출 수 없는 몸을 거두어 춤을 추어 몸의 굴레를 벗어난 육체 해방을 꿈꾸는 춤’ ‘병신춤에는 춤출 수 없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놀자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을 붙여 장애인 비하에 관한 비평적 시각을 무마하고 있다.

2) 유희적 대상화(타자화)

대상화의 정확한 의미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넓게 정의하자면,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간성이 사라지고 사물이나 대상, 물건의 형태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화, 사물화라고도 한다. 사물화라는 단어는 때로 철학의 물신화(reification)를 의미하기도 하며, 타자화라는 단어는 ‘우리-그들 구분법’에서 우리가 아닌 존재로 취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²⁶⁾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대상화를 성적 대상화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착안해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을 ‘유희적 대상화’로 명명하였다. ‘유희적 대상화’는 장애인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소외와 배제, 멸시를 무시하고, 단지 웃음을 유발하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장애로 인한 부자연스러움을 부각하는 것을 뜻한다.

26) 나무위키, <https://namu.wiki/w/대상화>

전통 민속 연희 속 장애인을 보면서 관객은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자신과 장애인 등장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타자(他者)는 말 그대로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거나 변형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차적인 의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Michael Bakhtine(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그린비, 2019, 110쪽)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자신 안에 머물며, 우리 자신의 반영만 볼 뿐이고, 이 반영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의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외양이 반영된 상은 보지만, 외양 속에 있는 자신은 보지 못한다. 외양은 나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하며, 따라서 나는 거울 앞에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내면과 외면의 분리를 이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타자다. 타자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지만 나를 넘어서 존재다. ‘타자화’는 나와 다른 것을 대상화하며 나와 분리하는 것이다. 정의상 타자는 ‘나-주체’가 아닌 자, 나의 외부, 바깥의 존재다.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타자는 아마 나-주체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포착될 수 없는 전적인 외부이다. 하지만 타자는 또한 나에 ‘대한’ 타자이다. 유한한 주체인 나를 완전히 벗어나는 타자는 무(無)와 다르지 않다. 나의 경계는 신체의 끝이며 이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신체의 경계에 갇힌 나의 결여는 타자로부터 보충한다. 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도 타자이고, 내 얼굴을 통해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자도 타자다. 그러니 타자화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타자화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만약 주체와 타자 사이에 단절이 생길 때 윤리는 치명적인 결함에 봉착한다. 그 어떤 화려한 논리로 포장해도 그것은 결국 자기만의 윤리, 타자와 격리된 채 주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윤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외적 현실에서 윤리란 한낱 ‘소통(사건)에 대한 몽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한편, Emmanuel Levinas(『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7쪽.)는 주체성을 ‘타인을 받아들임’ 또는 ‘타인을 대신하는 삶’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내 존재는 동일성에 갇혀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타자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자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자는 내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런데,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것은 Bakhtine이나 Levinas가 말한 타자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장애인을 기득권층을 비판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 민속 연희에서 타자는 ‘유희적 대상화’로서의 타자이다. 극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화하면서 타자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

이 권력을 얻었다고 착각²⁷⁾하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드러내고 만다. 또한 장애를 차별하는 것으로 손쉽게 서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 없는 명료한 이분법적 서사는 민중이 즐기기에 적합했다. 이러한 몇 가지 면에서 한국 전통 민속 연희가 장애를 이용했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강화된 합리화

전통연희 속 장애인 표현의 대표적인 것은 ‘병신춤’이다. 병신춤의 유래를 밝힌 문헌 기록은 없다. 정병호(1993, 77쪽)는 병신춤이 아마도 무속굿에서 무당이 신격자로 분장하여 춤을 춘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려 연등회나 팔관회와 같은 축제에서 행한 ‘소학지희(笑譴之喜)’²⁸⁾ 가 조선시대의 산대 가면놀이로 이어지면서 연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

병신 놀이가 가면극에 등장한 이유에 대하여 유민영은 전염병인 천연두의 만연과 함께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의 생활관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 첫째는 병자나 신체적 결함자를 현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둘째로 축역(逐疫)의 뜻으로 표현한 것이며, 세 번째로 관중을 웃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병신춤이 많이 추어진 시기는 조선 중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양반과 천민의 차별이 심한 가운데 민중예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민의 놀이판에서 농악을 치고 가무 하는 가운데 양반을 풍자한 흉내의 병신춤이 추어졌고, 한편으로 굿판에서 무당은 물론 구경꾼들도 병신춤을 여흥으로 추었다. 또한 지방에 따라 탈판에서 연희자들이 병신춤을 추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잔존하게 되었다.²⁹⁾

병신춤의 유래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장애인 모방 춤인 병신춤이 등장한 배경에 계층 간 반목이 심했던 시대 상황과 전염병의 만연으로 질병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장애인 모방(춤)

27) Toni Morrison (2022). 타인의 기원. 바다출판사. 55.

28) 조선시대에 직업배우가 재담, 익살 등으로 이끌어 가는 일종의 즉흥극이다. 정병호가 고려시대 축제를 언급하면서 소학지희라고 한 것은 정확한 지칭이라기보다 소학지희 같은 즉흥 형식의 희극(喜劇)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 해설)

29) 정병호. 같은 책 77-78.

이 결국 대중이 즐기는 오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모방을 하나의 연희 형식으로만 여기는 시각에서의 분석으로, 장애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리화이다. 시대 상황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한 풍자와 웃음이 하나의 예술적 표현 도구가 되었다는 의견에는 도구가 된 장애인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비장애인 입장의 합리화는 시간이 흘러 II장에서 살펴본 대리 치유 논리로 더욱 합리화한다. 장애화된 몸을 단지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한계점”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변화를 기다리는 상태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여긴다. 이 지점에서 비장애인 입장의 합리화가 정점에 이른다. 장애인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비장애인의 동정과 의지가 개입해야 장애인 삶이 그나마 사회 모순을 반영하는 도구로 이용할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IV. 결론 장애인 모방춤의 예술적 변용을 위한 제언

조선시대 중엽 이후 민중 예술로 정착한 탈춤과 〈밀양백종놀이〉 같은 전통 민속 연희에는 많은 장애인이 등장한다. 장애인을 부정적 존재로 취급하며 반상 차별과 기득권층 풍자에 이용했다. 조선 중기에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화한 것은 이 시기 조선이 극단적이고 완고한 주자학적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강조하는 사회에 대한 기층 민중의 불만을 약자였던 장애인을 풍자의 도구로 이용해 해소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은 조선이 준비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근대를 맞이하였고, 일제 강점기까지 겹쳤다는 시대 배경이 있다. 일제는 장애인을 ‘불구자’로 취급하였고, 조선 민속 예술의 맥을 단절 시켰다. 전통 민속 연희가 다시 부흥을 꾀했을 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 복원과 문학적 서사의 가치를 찾는 일이었다. 이렇게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관점에 관한 고민을 할 기회가 없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고 해도 21세기까지 오는 동안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오히려 채희완의 해석과 같은 비장애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만 간헐적으로 있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가 출연하였고, 제94회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을 받은 〈코다 CODA〉에서 청각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가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연기상을 뇌병변장애인 하지성이 받았다. 이처럼 장애인을 연기하지 않고 보여주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력과 시도가 영상과 공연 예술 장르에서 이어지고 있다. 무용분야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KIADA)가 올해로 9회를 맞았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협업하는 무용 단체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과 접점을 시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중에도 전통 민속 연희는 요지부동이다. 1980년대 공옥진 여사가 미국 카네기홀 공연에서 병신춤을 선보일 때, 관객의 항의로 공연을 중단하고 몰래 빠져나왔던 예는 다른 나라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어도 민속 연희 계는 장애인 인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 이런 식이라면 장애인 비하가 담긴 민속 연희 작품이 계속해서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이런 상태로 해외 진출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승하고 있는 전통 민속 연희를 부정할 수만은 없다. 탈춤과 민속놀이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이 전부가 아니며,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민속 연희를 이어가면서 장애인을 다루는 전통적 시각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과 장애인 양쪽을 위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리 치유적 관점에서 벗어나 전통 연희가 보다 동시대적 예술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전통 민속 연희 연희본 점검

연희본에는 장애를 운명, 천벌 등으로 여기는 관점이 녹아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통영오광대〉에 문동탈 마당에서 양반 문동이가 신세타령하는 대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문동이: 아이고 내 신세야 삼대 할아버지 삼대 조모님, 그 지체 쓸쓸한(허망한) 을 아버지, 인간의 죄를 얼마나 지었건데, 몹쓸 병이 자손에게 미치어서 이 모양 이 꼴 이 되었으리오.³⁰⁾’

30) 박진태 (2002). 통영오광대. 화산문화. 122-124.

조상의 죄업으로 자손인 자신이 문둥이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를 죄의 대가, 운명적인 업보로 여기는 것으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예는 <통영오광대>만이 아니라 다른 탈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면, 이런 의미의 대사를 전체 서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동작의 예술적 변용 – 모방에서 벗어나기

장애인 모방춤은 장애인의 일상 동작을 흉내 낸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적 모방에 치중하다 보면, 관객은 실제 장애인이 행동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비교하게 된다. 춤꾼의 연기에 감탄하는 순간 장애의 현실성은 증발한다. 동시에 예술성은 희석되고 모방에 의한 희화화가 강화된다. 병신춤 계열의 춤을 전수하여 오랜 기간 추어 온 한 춤꾼은 “장애인 모방춤을 추면서 춤꾼으로서 해방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춤꾼이 장애인 모방춤을 추면서 해방감을 느낀 이유는 춤꾼 입장에서 정형적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다른 춤을 추면서 경험하기 힘든 부분이다. 장애인 모방춤의 동작은 대부분 기존 전통 춤사위에 어긋난다. 손을 말아 쥐거나, 다리를 쪼그리고, 바닥을 기듯이 움직이고, 몸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다. 이러한 몸 사용법은 현대 무용에서 탐구하고 있는 동시대적 고민과 연결할 수 있다. 규격화할 수 없는 움직임. 안무로 수렴할 수 없는 몸으로 신체성의 경계를 넓히는 시도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며, 장애와 비장애에서 일상적 움직임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여러 시도에 포함될 수 있다.

- 맥락 끊기

전통 민속 연희에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연희물의 맥락에 있다. 즉 작품 전체의 내러티브 때문에 장애인 비하 효과가 두드러지게 만든다. 맥락을 단절하면 장애인 모방 부분이 하나의 춤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맥락과 상관없이 예술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도 많은 안무가가 탈춤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현대무용가 김평수는 <Fifty minutes-가득 찬 시간>³¹⁾에서 바닥에 엎드린 춤꾼이 손을 오그리고 몸을 뒤틀며 시작하는데, 통영오광대 문동춤 동작을 응용한 부분이다. 비슷한 예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미 전통 민속 연희물에서 맥락을 끊어 하나의 모티브

31) 2018년 11월 24일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초연.

로 일부분만 이용하는 경우가 새롭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전통 연희를 추는 춤꾼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전통 연희에서 춤꾼들은 맥락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하기에 독립적인 예술가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더구나 이 시대에 탈춤 전막을 연희할 기회가 잘 없고, 있다고 해도 관객이 오래된 맥락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탈춤꾼들이 독립적인 무용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지만,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통 민속 연희물에서 맥락을 끊어 자기 부분을 작품화한다면, 그 춤이 내포한 장애인 모방 효과가 약화하고, 춤꾼 개인의 예술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지하, 채희완은 탈춤의 형식을 ‘연산(連山)구조’로 파악한다. 연산구조란 산이 연달아 있는 것 같은 형식으로, 부분이 독자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로 엮인 구조여서, 기승전결이 없다. 그래서 부분을 떼어내어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통 연희물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부분을 공연하는 사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이러한 관례를 전통 연희가 가진 장애인 비하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삼을만하다.

전통은 시대상을 담으면서 이어졌다. 영국의 역사학자 Eric Hobsbawm은 전통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탈춤도 백중놀이도 만들어진 전통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탈춤 같은 민속 연희 또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며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전승하는 탈춤과 〈밀양백중놀이〉 같은 민속놀이의 문제는 대리 치유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대상화·타자화하는 것을 예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전통 민속 연희가 장애인 비하에서 벗어날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시대 인식과 거리가 있는 비인간적 설정은 아무리 전통이라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모방을 해석하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해석은 그야말로 부정적 시각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전통 민속 연희계 내부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고려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미 (1999). 병신춤의 민중적 미의식 연구 – 밀양백중놀이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도현 (2002).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미숙 (2004). 밀양백중놀이, 가산오광대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영숙, 최동규 (2009). 비극적 시대의 긍정적 전망: 바흐친의 웃음의 미학,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9집,
- 김영희, 김채현, 이종숙, 조경아 (2014). 한국춤통사. 보고사.
- 김은정 (2022).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후마니타스.
- 박정수 (2021). 장판에서 푸코 읽기. 오월의봄.
- 박진태 (2002). 통영오광대. 화산문화.
- (1985). 韓國假面劇研究. 새문사.
- 박희병 (2003).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제24집,
- 방귀희 (2019). 장애인예술론. 도서출판 솟대.
- 서연호 (1988). 악류·오광대탈놀이. 열화당.
- 양승종 (2012). 강령탈춤자료집. 민속원.
- 이남영 (2017). 우리춤 철학 입히기. 도서출판 문사철.
- 이두현 (2003). 한국연극사. 학연사.
- (1981). 한국의 탈춤. 일지사.
- 이상현 (2021). 처음 추는 춤. 소오유.
- 이석호 (2001). 인간의 이해: 철학적 인간학 입문. 철학과 현실사.
- 이화진 (2010). 장자(莊子)사상에서 본 범부춤과 병신춤 심미구조에 관한 연구 – 하보경과 공옥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전경욱 (1997). 북청사자놀이연구. 태학사.
- 전미라 (2015). 미하일 바흐친의 사유에서 몸의 문제: 사건-외재성-그로테스크한 몸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병호 (1993). 한국의 민속춤. 삼성출판사.
- 정상박 (1972). 세시풍속.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남편. 문화재관리국.
- (1986). 오광대와 들놀음 연구. 집문당.

- 정창권 (2019). 근대장애인사. 도서출판 사우.
- 조동일 (2005). 한국의 탈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채희완 (2001). 탈춤. 대원사.
- (2013). 지극한 기운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도서출판 전망.
- 최진석 (2019).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그린비.
- 한국장애인학회 편저 (2015). 장애학으로 보는 문화와 사회. 학지사.
- 허용호 (2014). 움직이는 전통, 변화하는 시선 - 밀양백중놀이의 장애 표현과 그 형상화 시
선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28집.
- Cox, Harvey (1977). 바보재(김천배 역). 현대사상사.
- Levinas, Emmanuel (1996). 시간과 타자(강영안, 강지안 역). 문예출판사.
- Morrison, Toni (2022). 타인의 기원(이다희 역). 바다출판사.
- Nielsen, Kim E (2020). 장애의 역사(김승섭). 동아시아.
- Riedel, Sheila & Watson, Nick (2012). 장애 문화 정체성. 한국장애인재단.
- Wendell, Susan (2012). 거부당한 몸(강진영·김은정·황지성 역). 그린비.

원고접수 : 24.04.30.

수정원고접수 : 24.06.15.

게재확정 : 24.06.19.

Abstract

Critical Analysis of the Way the Disabled Are Treated in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and the perspective of cure by proxy

SangHeon Lee*

There still remain characters imitating the disabled and the so-called ‘Byeongshin (the deformed)-dance’ in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Chae Heewan describes it as interprets it as ‘a dance for those who cannot dance’, ‘a dance that dreams of liberating the body free from the yoke of the body by taking up the body that cannot be danced and dancing’.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critical discussion is the ownability of the disabled. In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the disabled satirizes the class with vested rights, and the disabled are also set as others. Otherization reveals to be ‘cure by proxy’. Observing the ‘disabled body’ located on the ‘edge of being human’ in a Western context, Titchkosky says he sees disability as ‘a threshold at which no possibility exists.’ The disabled body is in a state of waiting for change, and it sees itself a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hange to others. Instead of representing the disabled person's needs, the surrogate strengthens the system of coercive normality and assigns himself/herself the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healing, and at the same time, he/she makes the disabled a passive object to be rewarded for these efforts. A cure by proxy logic can be

* Dance Critic

found in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eyes that treat the disabled.

This study sees the existing view of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coping with the disabled as otherization, a cure by proxy logic without homogenization, and analyzes and criticiz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himself/herself. The conclusion part contains the argument that traditional folk performances world that does not correct the negative view of the disabled by putting the name of tradition ahead of it, need to eliminate the disability narrative, and think about ways to be transformed artistically in a different way.

Keywords: imitation of the disabled, ownability of the disabled, Byeongshin-dance, Tal (mask)-dance, cure by proxy, otherization,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57 – 180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내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남미정*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내 복지기술 도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복지기술 개발에 대한 4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모전의 구성, 지원내용, 우수개발물, 성과 및 의의,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은 장애인 사회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벌판이자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기술 분야 활성화라는 의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복 주제 검토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복지와 기술 분야의 낮은 이해도로 인한 실적용 어려움이 한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복지기술 개발물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복지와 기술 융합에 대한 교육 제공, 민간 우수 개발물 시범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물 활용도 검증 체계 마련 등이 필요성으로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현장의 우수 개발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의 태도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복지기술, 장애인, 사회서비스, 개발, 공모사업

* 한국장애인재단

I. 서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특히 코로나 19 시작 이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데이터 산업 규모의 확대, 사물인터넷 및 OTT 이용률 증가, 인공지능 산업 매출 증가, 온라인 교육 및 간편결제 활성화, 전자정부이용률이 증대되는 등 관련 산업이 확장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 및 공동체 등 비공식 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비공식 부문을 대체하여 주로 공공부문과 전통적 비영리 민간부문(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공공·비영리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인력·예산 부족을 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혁신은 간병·간호 로봇을 통해 노인,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취약 계층 발굴 등 기존 사회서비스의 인력·예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문영임·정성희·남미정, 2023).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재활의 도구로 복지기술이 주로 개발되었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인간학적 이해에 기반한 복지기술이 개발·적용되고, 2016부터 2022년까지 고도화 시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진아, 2023). 즉 복지기술 초기에는 장애로 인한 손상을 보완하는 수준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 복지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존과는 현저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기술 사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기술 활용 정도에 따라 사회적 관계 수준이 달라졌다는 결과를 보여줄 만큼(신헤리·윤태영·김수경·김영선, 2020) 기능보완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수용과 기존 사회서비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국정과제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가칭) 디지털 혁신 기술 확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장애인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R&D), ICT 기반 정보격차 해소·사회참여 확대, 미디어 접근 보장 강화 등을 내세우며 복지 분야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오미애·안수인, 2023).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 지원 사업(R&D), 스마트빌달트레이닝센터, AI 반려로봇 도입, 복지 안전 서비스, 사회복지행정망 구축, 디지털배움터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복지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돌봄드림 - 빌달장애 아동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조끼’, ‘애드에이블 - 스마트 브리드에어 : 재활 환자 호흡 재활 시스템’, ‘에이치 로보틱스 - 리블레스 : 스마트홈 재활 로봇’ 등 스타트업 중심으로 복지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유지보수의 어려움, 낮은 기술활용도, 시범적용과 상용화 사이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문영임·정성희·남미정, 2023), 복지기술 적용 과정에서 개별 특성,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김수완·최종혁, 2017; 남미정·문영임, 2023).

그럼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에게 혁신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도입된 복지기술은 (김은하 외, 2022)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최종혁·김수완, 2017) 정보 접근성의 증가로 사회복지 대면 기술 가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개별 밀착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높인다(남희 은·백정원·이희윤·임유진, 2017).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복지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높은 활동 참여도를 유도하고(김은하·임정원·한지혜, 2022), 인지기능 향상, 긍정적 정서 효과(이상도·김보희, 202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복지기술이 주로 민간 차원이었으며, 민간 차원의 복지기술은 정부 주도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기기 중심의 복지기술 도입 시도와 달리 개발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민간 분야와 비교 시 정부 주도의 복지기술 개발 시도는 현장과 고리가 크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남미정 외, 2023; 김수완 외, 2017).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복지기술 개발 공모전으로, 공모전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형화된 복지기술과 달리 높은 장애 친화성, 전파력, 활용 가능성을 갖는 맞춤형 APP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사회서비스 현장 내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지만 중요도 대비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의 등장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기준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속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일차적 욕구를 넘어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이라는 상향적 접근 방식의 분석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내 복지기술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복지기술 정의

복지기술이라는 개념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기술위원회에서 2007년 복지기술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IT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의를 돋는 복지서비스의 혁신이라 정의되며 등장하였다(문영임 외, 2023).

복지기술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 복지기술 도입에 대한 시도와 그에 따른 정의가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국외의 경우 노르웨이 복지 센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모든 기술이라 정의하였고, EU Commission은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ng)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기술로 정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복지기술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과 전문지식 혹은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박소영 외, 2017)로 정의되거나,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제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종혁 외, 2017). 복지기술은 일상생활 개별활동을 보조하는 장치 수준에서 생활공간과 사용자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조·지원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으며(Blackman et al., 2016), 아래 〈표 1〉에 정리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복지기술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기술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회서비스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기술”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 복지기술 정의

구분	기관	정의
국외	덴마크 보조공학센터	‘복지서비스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기술적 솔루션’ 개념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설명
	덴마크 기술위원회 (2007)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IT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리를 돋는 복지서비스의 혁신

구분	기관	정의
국내	노르웨이 복지 센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고, 장애인이 나 노인의 보안, 활동, 참여 또는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사용
	북유럽 복지 및 사회이슈센터	복지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 여기에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및 훈련, 고용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서비스 자체 또는 제공방식과 관련된 기술로 인식
	북유럽 장관협의회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북유럽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규정
	Hofmann (2013)	목적과 기능적 요소를 고려해서 크게 7가지 수준, 즉 통신지원, 보조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적, 감정적 지원 등으로 분류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2010)	제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돌봄, 알림 시스템 등 더 광범위한 수준까지 복지기술을 분류
	EU Commission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ng)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와 돌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
	김희연 (2013)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혁신'으로 정의하며 제도적/과학기술적 측면으로 구분 '제도적 측면의 복지기술' :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제도를 보완, 활용해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 및 활동을 포함함. '과학기술적 측면의 복지기술' : 헬스케어나 돌봄 영역에서 I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을 돋구나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적 개념.
	유근춘 외 (2014)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기존 복구의 복지기술, 영미권의 보조기술, 노인을 위한 기술, 유럽 중심의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삶(AAL)' 등 모두 복지기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정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공공분야의 복지제도 및 서비스 운영이 소비적이라는 기존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복지제도의 융합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의 복지기술
	박소영 외 (2017)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과 전문지식 혹은 복지문제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안상훈, 김수완,	복지기술을 돌봄, 안전, 보호, 일상적 활동과 이동,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구분	기관	정의
	박종연(2018)	을 돋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직접 적용되는 기술로서, 수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술로 정의
	최종혁, 김수완(2017)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기술혁신형 제품, 서비스, 시스템

출처: 강종관(2016), ‘사회복지와 ICT의 만남’, 서울디지털닥터단 웹진 2016년 8월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17), ‘북유럽 국가의 복지기술 활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246호. 김수완 외(2021). ‘복지기술은 사회 혁신인가?’ 내용 재구성

2. 국내 복지기술 추진 및 활용 현황

1) 국내 복지기술 추진 개요

국내 복지기술을 위한 정부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1997) 처음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1996. 6.)하며 전자 정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며 정확한 자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초로 공공사회복지행정정보망 보건복지행정망(C/S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2007년 시·군·구 행정업무 효율화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정보 연계를 위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후 점차 증가하는 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시스템과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각 2010년, 2015년 추가하였다.

앞선 관련 정책 흐름이 행정망 구축에 집중되어있다면, 코로나 19 이후로는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발생 되는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및 정보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23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3년 3월에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파악을 위 행안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점차 행정 중심에서 R&D 사업 활성화, 실적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기술 관련 정책 변화 흐름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복지기술 관련 법·제도 연혁

연도	내용
2000년	최초 공공사회복지행정정보망 보건복지행정망(C/S 시스템) 구축
2007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범정부복지정보통합시스템)
2015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년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2023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023년 8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추진

출처 : 정세정(2023) 내용 재구성

현 윤석열 정부(2022~2027)는 국정과제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디지털 헬스·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소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 R&D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며 보건복지분야에 디지털 기술의 도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정과제에 따라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도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 케어 활성화’, ‘ICT 기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장애인 복지 분야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재·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사회서비스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점자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는 복지기술 사용 목적 및 책임 수준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 점차 활성화되는 복지 서비스 분야의 복지기술 도입 활성화와 문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 사회복지관련 법령 중 복지기술 관련 내용

법령	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사회복지시설업무의 전자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조(전자이용권 수단 인정)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강구)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목적) 제7조(편의시설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목적)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점자법	제 3장(점자사용 촉진 및 보급)

출처 : 보건복지부(2023), 복지기술 도입 촉진 및 산업 육성 방안 연구 내용 재구성

2) 국내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기술 도입 사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복지기술 적용을 위한 최근 시도들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정과제와 장애인종합정책을 기반으로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 개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장

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등 신규 사업이 창설되고, 기존 사업에 대한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 사업이 부재한 점과 주로 신약 개발 등 보건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2022 ~ 2023 보건복지부 주요 R&D 분야

사업명	담당/소관	구분	예산 (단위 : 백만원)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신규	3,070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규	4,350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속	10,900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신규	6,250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계속	6,559

출처 : 보건복지부(2023), 복지기술 도입 촉진 및 산업 육성 방안 연구 내용 재구성

그럼에도 적은 비중이지만 복지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도 복지기술과 관련된 사업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주도의 복지 기술 서비스로 복지 안전 서비스, 스마트 벨달 트레이닝 센터, 돌봄로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있으며,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복지기술 서비스로 두뇌건강관리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화 자막 앱 등이 있다.

두 분야의 특성을 비교해볼 때 정부 주도로 제공되는 복지기술 서비스의 경우 교육 훈련, 돌봄, 위기 상황 관리와 같이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민간 분야에서 제공되는 복지기술 서비스는 그 주제가 개별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다.

〈표 5〉 공공·민간 분야 복지기술 사례

공공 분야 복지기술 서비스		
사업명	연도	주관기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	2023~ 계속	행정안전부
돌봄로봇 (욕창 예방용 자세 변화, 이송보조, 배설보조, 식사보조)	2021~ 계속	보건복지부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사업	2019 ~ 계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발달장애인 가상현실(VR)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2021 ~ 계속	보건복지부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	2021 ~ 계속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깔창 지원	2022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1	보건복지부
돌봄로봇 실증플랫폼(스마트돌봄스페이스)	2020 ~ 계속	보건복지부
디지털 배움터	2021 ~ 계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간 분야 복지기술 서비스		
사업내용	업체명	
데카르트 : 두뇌건강관리앱	데카르트	
닷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워치	닷	
리블레스 : 스마트 홈 재활 로봇	에이치로보틱스	
지오에스 : 농출증 환자를 위한 재활 의료기기	지오에스	
시각장애인용 점자변환소프트웨어	센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화 자막 앱	소리를 보는 통로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와 승객 간 의사소통 도구	고요한 M	

출처 : 보건복지부(2023), 복지기술 도입 촉진 및 산업 육성 방안 연구 내용 재구성

위 〈표 5〉에서 제시된 사례들처럼 정부/민간 차원에서 복지기술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며 복지기술은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19 이후 급격히 복지기술 서비스가 도입되며 디지털 역량 부족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개별 욕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남미정 외, 2023).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들은 현재 복지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참여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보조기기 중심의 기능 보조,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 개인에게 있어 낮은 활용도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문영임 외, 2023).

앞서 민간차원 복지기술 개발물을 살펴보았을 때 화려한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

지 않았음에도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분야의 복지기술 활성화는 현장과의 괴리를 감소하고 서비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분야 중 제한 없이 다양한 개발물을 제시해볼 수 있는 복지기술 개발 공모전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내 장애 친화적인 복지기술 개발과 성공적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가지의 공모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연구는 특정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하나의 현상에 대해 면담, 관찰, 시청각 자료,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아직까지 복지기술 개발물 공모사업은 시작단계로 앞으로 제시할 4가지 사업이 복지기술 개발 공모 사업을 통한 개발물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 외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관련 공모전은 제외하고, 실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관련 공모전 중 최소 2회 이상 개최된 공모전만을 선정하였다. 앞선 기준에 따라 피우다 프로젝트,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의 실태분석을 통해 공모전 진행방식, 성과 및 의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피우다 프로젝트

ICT COC에서 주최주관하고 있는 ‘피우다프로젝트’는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주제가 매년 경미하게 달라지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주제로 삼고 있다. ICT COC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개발 교육, 소규모 개발 업체를 위한 장소·기기 대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공모전 개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과 장

비들을 대여해주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회 초기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를 갖고 있었지만 현장실증을 추가한 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 개발, 장애인 여행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우수개발물의 현장실증이다.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실증까지 연계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2022년 성동장애인복지관, 2023년 마포장애인복지관과 마포노인복지센터, 2023년 성동구청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우수개발물의 현장실증은 개발물 활성화 및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분석한 4가지 공모전 사례 중 유일하게 시범적용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수개발물이 실용화·사업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2024년 피우다 프로젝트 공고 내용으로 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전 인터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복지 분야와 개발 분야의 간극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6〉 피우다 프로젝트 공모전 개요

피우다프로젝트	
주최 및 주관	ICT COC
지원 및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공모전 내용	2021 상반기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솔루션 개발
	2021 하반기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영유아)의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웹·앱 등)개발
	2022 상반기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장애인 및 가족 등)를 대상으로 생활 및 복지 관련 문제 해결·개선을 위한 SW 개발(앱·웹 등)
	2023 상반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장애인 및 가족 등)를 대상으로 생활 및 복지 관련 문제 해결·개선을 위한 SW 개발(앱·웹 등)
	2023 하반기 성동구 관련 다양한 문제(교통, 환경, 안전, 보건, 시설 등) 해결을 주제로 솔루션(앱·웹 등) 개발
	2024 상반기 노숙인 생활개선을 위한 SW 개발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멘토링 • 개발 공간 및 장비 제공 • 개발 활동비 지원

피우다프로젝트		
시상 규모 (2024 기준)	총 상금 1,000만원	
장애인 관련 우수개발물	악어톡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보다 쉽게 언어를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림카드 등록 및 카테고리화, 문장만들기, 게시판 등 2023년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싹싹 SEEK SICK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2022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GADA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에게 맞춤 가게 정보 및 경로 제공 2022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프로젝트 온세미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장애인 가구의 소통 부재 해결을 위한 안부 확인 및 효율적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2022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PC 기반 가전제품 제어 솔루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상 장애인을 위한 PC 기반 가전제품 제어 솔루션 안구마우스를 통한 PC 조작 기능을 통해 가정에 설치된 TV,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제어를 돋는 솔루션 2023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모비 MOBBY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위치 기반 모빌리티 이동 솔루션 드론을 활용하여 도보 경사로 등 노면 상태를 관측하여 휠체어 이용자에게 안전한 길 안내 2023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범 적용 계약 체결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 2024) 우수개발물 시범적용 기회 제공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 우수작을 다양한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실증까지 연계하고 있는 유일한 공모 사업 개발 및 현장실증 과정에서 기술적 지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용화까지 진행된 제품이 부재 복지 - 개발 분야 간의 이해도 차이 발생 	

2)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의 경우 (사) 그린라이트라는 취약계층 이동권 관련 NGO 단체가 주최하고, 현대오토에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기술 관련 공모전 중 가장 오랜 기간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큰 주제 변동 없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APP 개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2024년 공모전에 이동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만 본 대회의 경우 별도의 후속 지원 없이 앱스토어 등록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개발물의 효과성, 활용도, 개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만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도교수와 함께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공모전 진행 과정 동안 멘토링, 홍보 마케팅, 앱 개발, 프로젝트 관리, 취약계층 이해 등의 다양한 강의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학생에 대한 인재양성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7〉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공모전 개요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주최 및 주관	(사) 그린라이트
지원 및 후원	현대오토에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전 내용	2017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앱 제작 아이디어 공모
	2018
	2019
	2020 사회적취약계층(장애인 등) 편의증진 관련 앱 아이디어 및 제작 공모
	2021
	2022
	2023
지원 내용	2024 사회적취약계층(장애인 등) 편의증진·이동 관련 앱 아이디어 및 제작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지원금 지급 전문가 멘토링 앱 개발 관련 교육
시상 규모 (2024 기준)	총 상금 1,000만원
장애 관련 우수개발물	눈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 번역 앱 2021년도 대상작
	구구절절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화 교육(발음 교정 및 언어 학습) 앱 2021년도 최우수작
	Safelight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보행 지원 앱 2022년도 대상작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키치캐치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오스크 사용 안내 앱 • 2022년도 최우수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린더 (2023) • 시각장애인 학사정보 기반 학교생활 지원 • 2023년도 최우수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골 (2023) • 시각장애인 사진 정보 및 검색 기능 제공 • 2023년도 우수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inless (2023) • 시각장애인 옷 얼룩 탐지 기능 제공 • 2023년도 우수작
후속지원	앱 스토어 등록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대회 • 사회 문제에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와 비용을 제공하여 복지-융복합 분야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한계	앱스토어 등록 후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을 확인 어려움

3)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복지·기술 융합 공모 사업으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최하며 후원에 보건복지부가 들어가는 유일한 공모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PP 개발물을 접수 받으며 개발 과정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복지 분야와 기술 분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내용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공모전의 한계로는 2년이라는 짧은 운영기간으로 인한 방향성 미흡과 우수개발물 현장 실증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보이며, 2024년 사업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서뇌성마비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표 8〉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 공모전 개요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		
주최 및 주관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및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모전 내용	202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APP 개발 공모전
	202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APP 개발 공모전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 장애 플러스 기술		
지원 내용	앱 개발 및 장애 관련 특강 진행 개발 활동비 지원	
시상 규모 (2024 기준)	총 상금 600만원	
장애 관련 우수개발물	비나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장애인 발음 재활 지원 앱 2023년도 메이커톤 분야 최우수상
	초록소리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보행 신호등 어플리케이션 2023년도 메이커톤 분야 우수상
	COMPASS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GPS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AAC앱 2023년도 메이커톤 분야 장려상
	캣닷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인식을 통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1인 학습 전자 점자 기기 2023년도 아이디어톤 분야 대상
	미리 프렌드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보행에 맞는 경로 안내 2023년도 아이디어톤 분야 우수상
	웨어러블 네비게이션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웨어러블 네비게이션 2023년도 아이디어톤 분야 장려상
후속지원	(2024) 우수개발물 시범적용 기회 제공	
성과 및 의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주최하는 기술-복지 융합 사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운영횟수 현장실증 진행 부재 	

4)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의 경우 국립재활원이 주최로 진행하며, 타이드인스티튜트라는 창업가, 메이커, 혁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본 공모사업은 2022년도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헬렌켈러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디스플레이 기업인 dot이 후원하였으며, 2023년은 메이커 기술을 지원하는 X-GARAGE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 센터인 창업 HERE-RO가 후원하였다.

매번 세부 주제가 달라지지만 보조기기 개발이라는 큰 주제는 동일하며, 참가자격으로 2D/3D 모델링이 가능한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와 코딩 가능 개발자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일한 보조기기 공모전이다.

우수 개발물에 선정될 경우 개발물 소스 공개를 통해 타 단체·개인이 발전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조기기(하드웨어)라는 점에서 민간이나 개인이 적극 활용하기엔 비용 측면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한 별도 지원이 없다면 활성화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9〉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 공모전 개요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		
주최 및 주관	국립재활원, TIDE	
지원 및 후원	(2022) 헬렌켈러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dot (2023) XGARAGE, 창업 HERE-RO	
공모전 내용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개발
	2021	노인·장애인 상지 보조기기 개발
	2022	전농전맹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전농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2023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지원 내용	보조기기 관련 특강 수요자 및 전문가 멘토링	
시상 규모 (2023 기준)	총 상금 400만원	
장애 관련 우수개발물	자동 응급 문자전송 모듈(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 응급 문자전송 모듈 2020년도 대상
	스마트 지팡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 2020년도 입상
	영화시청 도움 장치(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시청 도움 장치(디바이스) 2020년도 입상
	NESSAY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떨림 보정 장갑 2021년도 대상
	ZAMZAM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을 활용한 손가락 관절 재활 보조기기 2021년도 최우수상
	SobleS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 환자를 위한 소프트 웨어러블 글러브 시스템 2021년도 우수상
	보이죠1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S 기술을 활용한 점자플랫폼(EMS 수트) 2022년도 대상
	DatTalk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의 점자로 세상과 소통하는 점자 디바이스 2022년도 최우수상
	Owl Labs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인식, 안면인식을 이용한 방문목적 알림 시스템 2022년도 우수상
	khu-ma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 근력 저하 환자를 위한 보조 웨어러블 기기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대상
편한손길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모델로 물체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서랍장 • 2023년도 장려상
후속지원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오픈 소스로 업로드 및 공개
성과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한 보조기기(하드웨어) 공모전 • 공모작 소스 공개를 통해 타 단체/개인의 발전·활용 가능
한계		보조기기라는 점에서 민간 내 적극 활용 시 높은 비용부담으로 활성화의 어려움 존재

IV. 결론

장애인 분야 내 복지기술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공모사업은 실존적 차원의 1차 욕구를 넘어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기술을 발굴 및 발전시키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피우다 프로젝트의 경우 우수개발물의 적극적 현장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개발물을 발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수의 시범적용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할 만한 개발물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반면 시범적용을 진행하지 않아 효과성 적용 가능성의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

장애 플러스 기술의 경우에도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현장실증의 부재로 효과성, 적용가능성의 명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 측에서 진행하는 기술-복지 융합 사업으로 장애 이해도가 높은 개발물을 발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보조기기 해커톤 대회의 경우 유일한 하드웨어 개발 공모전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하드웨어 특성상 비용 문제로 인해 적극적 참여와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공모사업은 복지기술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될 수 있다. 각 공모사업별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시장에 발매된 복지기술 서비스와 유사한 개발물이 제시된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부 주도의 R&D 공모 사업에서 확보

하기 어려운 개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우수 개발물로 선정된 ‘시각장애인 학사 정보 기반 학교생활 지원’과 같이 정부 주도 개발물과 비교 시 세분화·개별화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례 분석한 4가지 공모전 모두 사회적 경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직 개발자, 예비 개발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활동비, 복지 또는 개발에 대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인 복지기술 융복합 분야의 거름으로 작용하여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기술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분야 내 복지기술 공모 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4가지 공모사업 우수개발물을 살펴보았을 때 중복되는 주제가 다수 존재하였다. 그 중 대표적 상용화 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양성은 높지만 장애인 사회 서비스 영역 내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개발물들은 특정 장애유형과 주제에 편중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물과 공모 주제 선정을 위해 기존 개발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취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공모전을 통해 기회가 제공되지만 복지 분야 내 실적용까지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공모 사업 중 현재 현장적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오직 한 개의 기관이라는 점과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사업으로 주관기관의 특성이 복지 분야보단 공학·개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학·개발 분야 중심으로 개발될 경우 최종 개발물은 기술 분야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복지·기술 융합에 대한 교육, 상향식 복지기술 개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우수 개발물 시범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개발물 활용도 검증 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프로토타입 단계에 멈춰있는 우수개발물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장실증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관과 이용자 요구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친화도와 높은 활용도를 갖출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복지기술 개발물의 높은 완성도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복지기술에 대한 관심과 상용화에 대한 협력을 통해 복지기술 발전 과정에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4개의 복지기술 개발 공모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공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만을 살펴보아 공모 사업의 틀과 방향성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각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우수개발물의 내용, 활용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공모사업 개발물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진아 (2023). 국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기술 연구의 동향 분석(1990 ~ 2022) -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도자료.
- 김남숙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종사자와 이용자간 인식. 디지털 융복합연구, 17(2), 405-412. doi: 10.14400/JDC.2019.17.2.405
- 김수완, 최종혁 (2018). 복지기술적 관점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제약성 분석 :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5(1), 287-320.
- 김수완, 최종혁, 박동진 (20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복지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4), 29-60.
- 김은하, 임정원, 한지혜 (2022).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부모 및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7(57), 211-237.
- 김태은 (2017). 북유럽 국가의 복지기술 활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6, 77-87.
- 김학실 (2021). 디지털 복지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연구: 맥락정보와 고객여정지도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357-375.
- 남미정, 문영임 (2023).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복지기술 도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현장 실무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 재단 4(1), 349-286.
- 남희은, 백정원, 이희윤, 임유진 (2017).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4차 산업혁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8(38), 237-266.
- 문영임, 정성희, 남미정 (2023). 2023 자체연구보고서 장애인 사회서비스 영역 복지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서울:한국장애인재단
- 박소영, 이영석, 강창욱, 박화옥, 배성근, 이재욱, 최승숙 (2017).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국내 복지기술 동향 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295-304.
- 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김영선 (2020).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 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 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75(4), 207-232. doi: 10.21194/KJGSW.75.4.202012.207
- 오미애, 안수인 (2023). 보건복지 분야 디지털 기술의 현재 및 미래 수준 인식. 보건복지포

럼, 319, 76-91.

- 이상도, 김보희 (2022). 디지털 복지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치매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8(12), 555-567. doi: 10.47116/apjcri.2022.12.45
- 정세정, 김기태, 곽윤경, 우선희, 최준영, 이영수 (2023). 연구보고서 2023-04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1.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세종:보건사회연구원
- 최종혁, 김수완, 임정원 (2022). 보건복지 영역에서 복지기술의 사업화 과정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3), 37-67. doi: 10.22944/kswa.2022.24.3.002
- 최종혁, 김수완 (2017).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복지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4), 181-213.
- Blackman, S., Matlo, C., Bobrovitskiy, C., Waldoch, A., Fang, M. L., Jackson, P., ... & Sixsmith, A. (2016). Ambient assisted living technologies for aging well: a scoping review. Journal of Intelligent Systems, 25(1), 55-69.

원고접수 : 24.04.30.

수정원고접수 : 24.06.13.

게재확정 : 24.06.19.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Introduction of Welfare Technology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Public Service Project for Welfare Technology Development

MiJeong Nam*

This study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four public offering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technologies in progress to introduce welfar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The composition of the contest, the contents of support, the excellent developments, the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were analyzed,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ublic offering project is a foothold for diversifying welfare technology services and has the significance of revitalizing the welfare technology field through talent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However, it was difficult to secure diversity due to overlapping themes and developments, and difficulties in performance due to low understanding of the welfare/technical field were limited. Therefore,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collection platform that can comprehensively check information on existing developments at the government level, education on welfare/technical convergence, the development of a pilot application program for

*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llent private develop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verification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developments, and an attitude of active interest and cooperation at the welfare site level for the disabled.

Keywords: Welfare technology, disabled, social services, development, public offering projects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2024 Vol. 5, No. 1, 181 – 210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을 통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윤인지*, 이준우**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참여한 한국어 중심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이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해 총 4명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농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여섯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과 다섯 가지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농인, 농 문화, 결혼 이주 농인 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현상으로 급부상되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이성희·김나연·김현수, 2016). 이에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다각적이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준우 외, 2021).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여성들 중에서 한국 농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로 편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수어가 아닌 자국(自國) 수어를 사용하는 외국 농인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갈 때, 한국어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적인 장벽과 동시에 자국 수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을 이중적으로 경험한다. 그럼에도 농인의 경우 수어가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공유하는 독특한 농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청인이 다른 국가의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청인의 주류문화와 달리 고유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농 문화(Deaf Culture)라 부른다(정진영, 2002; 이준우, 2022). 농인들은 이렇게 수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각적 정보가 두드러지는 농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인다(김경진, 2004; 이준우, 2020). 따라서 농인에게 있어서 수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의사소통 수단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준우, 2022).

이렇게 볼 때, 기존의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서비스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온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농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현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같은 극히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농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호하거나 보장하는 가운데서 이뤄지는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농인 친화적 가족 지원서비스가 아닌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다문화교육과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비장애인 이주 여성들 주된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교육 경험까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교육

적 지원이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실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은 대상으로 하는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인의 수어권리가 보장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자료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경험한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유용했는지,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고충이나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여러 구성 요소들 가운데에 유용하거나 부족한 측면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이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있으나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특수한 의사소통과 문화적 어려움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다(이미선, 2015; 이영미·정임순, 2019; 이영미·이진숙, 2020). 이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을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특성

결혼 이주 여성은 이주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한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을 의미한다(김혜원·임춘희, 2012). 이에 본 연구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은 일반적인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국수어이든 한국수어이든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즉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특징과 농인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지닌 경우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인의 성장 환경을 살펴보면 농인은 농 사회라고 불리는 수어로 공유되는 연대적 공동체와 연결되어 생활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이준우, 2020). 그리고 농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농인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미국의 경우 80~90%가량의 미국 농인이 자신과 같은 미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결혼하고, 농인 부부의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다(Mitchell & Karchmer, 2004; Bishop & Hicks,

2005; Schein, 2009; Holcomb, 2012). 또한 농인이 자국의 농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농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부부간 공용어는 자국수어이든 배우자 국가 수어이든 모두 수어였다. 결국 국가별로 다른 수어임에도 수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다(Preston, 1994; Scott, & Hoffmeister, 2017; Singleton & Tittle, 2000). 농인들은 음성언어의 소리가 아닌 시각적 체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적 요소로 대화하는 게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서로 간에 문화나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청인과는 다른 체계를 가진다(Mitchell & Karchmer, 2006; Bauman, 2008).

이렇게 국외 사례들을 적용해 볼 때(Preston, 1994; Scott, & Hoffmeister, 2017; Singleton & Tittle, 2000), 한국 사회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도 거의 대부분 한국 농인과 결혼한 경우로 추정된다(이영미·이진숙, 2020). 각 나라마다 수어가 다르지만 자국의 수어를 사용하면서 자국의 농 문화 기반 속에서 살아왔기에 농인이라는 공유 영역으로 결혼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생산직의 비율이 높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받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서비스 현장의 환경이 청인의 환경에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성언·최유, 2006; 이영미·정임순, 2019). 그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것과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편견도 있을 것이다(이영미·이진숙, 2020).

2.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접근은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이뤄진다. 사실 언어, 인종, 전통, 지역, 피부색 등이 다른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 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배경으로 이뤄진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국가복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이성언·최유, 2006; 김선녀, 2013; 최희선, 2018).

그럼에도 국외로부터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지원 서비

스와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그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다(최희선, 2018). 즉, 결혼 이주민 각각의 개별 상황과 월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침서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습득하게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크다.

2006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다문화 관련 부처별 사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문화정책 부처별 또는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이 자체 운영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책 내용의 경우 결혼 이주자 또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자녀 등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분절적 서비스들로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영주, 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보제공 및 주입식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 사회에 통합되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침으로 규정된 수준과 범위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에 관한 이해를 갖게끔 하는 것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다문화정책의 실질적인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으로 2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가족친화 문화 프로그램’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기본 프로그램’(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강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가족봉사단 프로그램 등)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기능한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3).

한편 보건복지부는 결혼 이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결혼 이주자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으로 결혼 이주자 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책 홍보, 정보제공 사업 등을 통해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령 결혼 이주자, 새터민 등 다문화 관련 문화 교류 활성화 정책에 맞춰 다문화 이해

증진 및 결혼 이주자들에게 시급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권’을 개발했던 것을 들 수 있다(국립국어원, 2009; 이보라미, 2018).

3. 국내 유일의 수어를 기반으로 한 농인 대상 학습지원센터

한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학습 환경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곳으로, 청각장애인 결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다. 결혼 이주 농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회 정착과 안정 및 실질적인 적응에 유용한 언어적이며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청각장애인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사업
학습 더함팀	교육지원 및 상담서비스 진학컨설팅, 진학상담, 공무원시험지원, 문해교육지원, 영어학습, 자기개발학습, 온라인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학습지원 아동학습지원, 성장멘토링, 영어학습, 독서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사회통합 학습지원 초졸, 중졸, 고졸 검정검시지원, 라온 한글교실, 교과학습, 일상생활 수어학습, 한글학습, 국어학습
	역량강화 사업 인성프로그램, 역량진단 및 강화교육, 학교연계사업, 학습멘토
학습 나눔팀	여가생활지원 설리번 양성교육, 보행교육, 여가활동,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한국어 수다, 식생활교육, 문화체험교육, 귀화면접지원, 귀화모의면접, 수어교육, 문자통역서비스, SK행복IT장학금, LG U+요술통장
	일상교육지원 운전면허증, 한자학습, 한국사, 코다독서교육, 슬기로운 대학생활
대체학습 개발팀	영상콘텐츠 학습에 필요한 수어 및 자막 삽입, 영상학습자료 제작
	온라인학습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관용어 학습
	봉사팀 자원봉사, 지역주민, 기관 등 청각장애 복지서비스 자문제공

출처: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2024) 누리집 프로그램 소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기존 프로그램들은 청인 중심의 한국어 기반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전달되고 있음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도 농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채 구성됨으로 농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적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함경수, 2020). 아울러 교육 참여의 접근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대상자를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있지 않거나, 통역 서비스를 1시간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은 기타 시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 결과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어를 기반으로 한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타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과는 뚜렷한 차별화가 이뤄진 결혼 이주 농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면서도 특화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질적 사례연구는 현재의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일반적이거나 또는 다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상황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제한된 경계를 가진 인생 사례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Stake, 2013).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현재의 현상을 실제 생활 맥락 내에서 연구하는 경험적 탐구로서도 가치가 크다(Yin,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교육 참여 경험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연구참여자를 사례로 선정하여 풍부한 자료 해석이 가능하고, 아울러 다양한 구술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에 참여했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경험을 수어 내러티브로 파악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자국 수어이든 한국수어이든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여성들 중에서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을 마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인 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 대졸 이상은 전체 응답자의 17.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으로 표현된다(여성가족부, 2022). 연구참여자 선정의 범위를 고학력 농인으로 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농인 여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 생활에서도 유사한 생활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대다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일정 수준을 갖춘 고등교육의 경험이 있을 때 이용 욕구와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가 풍성하게 표현될 것으로 유추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은 총 4명이다. 처음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는 5명이었으나 분석 단계에서 한 참여자가 좁은 농사회의 특성상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본인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해 연구 참여를 철회하여 최종 4 사례가 되었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구 분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
연령	40대	40대	50대	40대
장애 시기	3세/고열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현 직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용언어	몽골어, 몽골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말레이어, 말레이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몽골어, 몽골수어, 한국어 한국수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수어, 영어 한국어, 한국수어
출신 국가	몽골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학력	대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

면접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개인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간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이기[移記] 과정을 통해 촬영된 수어문을

원형 그대로 전사하였고, 문장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한국수어 표현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 영상의 답변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수집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면접은 본 연구의 주 저자가 한국수어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작에 앞서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모든 면접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였다. 먼저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익명성과 비밀보장, 동영상 촬영에 관한 내용과 중간에 면접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참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어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주 저자는 10대 때부터 농인들과 함께 수어를 사용하며 상호작용을 해왔고, 25년 이상 전문 수어통역사로서 주요 방송 및 미디어 매체를 비롯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 통역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수어로 구술된 이야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자의 사무실과 연구참여자들의 편의을 위해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카페 등 편안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면접은 연구 참여 및 녹취와 녹화를 위한 동영상 촬영 등을 포함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면접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한국수어 습득 과정', '한국에서 경험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앞으로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한편, 질문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도출하였으며, 혹이라도 면접 중에 불편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인터뷰는 캠코더를 활용해 연구참여자의 수어 장면을 녹화하였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는 주저자가 연구참여자의 녹화된 영상을 직접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 본 후 내용이 모호하거나 좀 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녹취된 파일을 재청취하면서 내용을 정교화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자료들은 배제하면서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한 부분을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인터뷰 영상의 답변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1차 도출된 수어 내러티브에 대한 한국어 번역 녹취자료는 교신저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다. 교신저자는 35년 동안 한국 농인과 교류하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한국수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온 수어연구자로 주저자가 1차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윤리와 엄격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진 모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부터 인터뷰 진행과 촬영, 녹취, 분석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에 임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시각언어인 수어로 표현되는 연구의 특성상 모든 내용이 영상으로 촬영된다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에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세심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별 인터뷰 진행에 앞서 사전에 연구 설명문과 질문지를 전달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특히 인터뷰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녹화 동의 여부, 비밀보장, 익명성, 제3자 제공 여부, 답변에 대한 거절 가능)를 구하는 서면동의를 얻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 4명의 사례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총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 옐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분석 결과

주제	하위주제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 제한된 정보로 인한 소외와 고립 낯선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함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서 온 농인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 이중언어·이중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자조모임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접근성이 강조된 교육과정 개발 교육 대상자에서 전문가로의 도전 후배 결혼 아주 농인 여성들을 위한 바람

1.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1)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아주 여성 농인들은 본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한 차례 일회성으로 끝나고 한국을 홍보하는 간단한 소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전부였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이해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에 와서도 결혼 아주 농인 여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나 지원체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해 당일 하루 6시간 교육을 통해 간단한 정보와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팜플렛을 줍니다. 지원체계가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 떠나기 전 6시간~7시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알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에 와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연구참여자 2)

2) 제한된 정보로 인한 소외와 고립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결이 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각장애 여부가 주요 정보에서 누락되어 전화로 소통할 수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한국생활 초기에는 농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한국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국농인을 만나고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주민센터에 등록함과 동시에 다문화센터랑 연결이 되었고, 집을 방문한 다문화센터 선생님과 보청기를 착용한 다음 대화를 나누었고, 2년간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몽골어를 못하셔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

결혼 후 2년간은 한국수어도 배우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조력자도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친구의 소개로 한국 농인들이 모이는 수어통역센터를 알게 되어 그곳에서 늦게나마 수어를 배웠고 그 후로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3)

3) 낯선 타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낯선 타국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어는 물론 한국수어로도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었던 이주 초기 단계에서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향수병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도 하였다.

몽골에서는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한국에 와서 2년 정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

한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저를 신경을 써주거나 소통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집이랑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다 보니 향수병이 생겨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연구참여자 4)

4)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함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여성 농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고국에서 장애인복지센터, 인테리어 회사, 사무직,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국에 와서도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려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등으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거나 무직상태로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기 전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농인 수어통역사로써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문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몇 년 전에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게 전부입니다. (연구참여자 1)

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였고, 회사 사람들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단순 생산직 일을 하는 회사를 다녔고, 결혼 이주자라는 차별을 받게 되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2)

사무직 회사를 다니다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갖기 원했으나 본국에서의 사회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단순노동 일자리 화장품용기 조립공장에 2년 정도 야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참여자 3)

2.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1) 외국에서 온 농인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대하거나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향한 편견과 여성이며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라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은 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 역시 여전히 개선이 크게 필요함을 말해준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어 신청하면서 수어통역이 지원되는지 문의를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강사의 입 모양을 보며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접하고자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는 저의 모습이 청인들에게는 제가 농인이 아닌 청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1)

먼저는 소통의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농인, 장애인, 외국인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서툴다 보니 뒤처지는 경우도 있고, 전문용어, 단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이 취업을 해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연구참여자 3)

주위에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게 더 심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청인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문제로 섞이지 못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2) 이중언어·이중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편과 작은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에서 오는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익히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한국어-한국수어가 익숙하지 않아 남편과 한국수어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 작은 오해들이 생겨서 사이가 멀어지고, 음식문화도 많이 다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수업을 가면 소통의 어려움이 제일 컸어요.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강의에 집중도 안 되고 강사의 말도 빨라서 입술 독화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와롭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사는 곳이 도시가 아니어서 이웃 간에 서로 인사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농담이나 일상생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웃는데 혼자만 웃지 못하다 보니 점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3)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자조모임의 필요성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경우 남편 외에는 특별히 교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서로 언어적으로 소통하고 심리적으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농인들이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가족 간의 소통단절을 극복하고 구성원들과도 서로 친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참여하는 청인의 모임은 다문화 농인과 맞지 않아서 다문화 농인들을 위한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모임을 통해 다문화 농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1)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잘 알아야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서로 마음을 나

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많은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2)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듣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수어통역센터에 가면 농인들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 농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다문화 농인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함께 참여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오해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는 농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4)

3.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1)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와 지자체, 기관마다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강사들은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가 부족함을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 교육 강사들이 다문화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이 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같이 공감하기 어렵고, 강사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참여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어요. 강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많은 곳을 참여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다문화

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농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다문화 농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강사들의 다문화 농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4)

2)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수어통역이 없다. 수어통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시간의 제약, 지속적인 통역이 제공되기에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일부 농인들은 필담이나 강사의 입 모양을 보고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도 하였으나 맥락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외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민간학원에 등록을 할 경우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배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공이 영어이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수업 참여에 있어 어려움이 많지는 않지만, 주위 환경의 소음이나 그룹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기에 수어통역사가 상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은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기에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몇 번 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모든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않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여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교육에 참여했을 때, 한국어만으로는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부족한 실력

이지만 영어자료도 함께 보면서 겨우 교육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어통역을 제공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닐 때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고도 통역지원이 없어서 강사의 입 모양과 자료를 보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필답으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어렵게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 지원은 1시간 정도 해주는데 그것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역을 부탁할 경우는 개인이 통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되고, 전문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어통역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어, 통역사를 부르지 못한 채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 주위에서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교육 수업에 있어서 통역의 정확성(accuracy)과 전달력(delivery)에 대한 만족이 적다. 통역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수업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크기에 전문 수어통역사의 지원을 받길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관에서 좋은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경우 복지관과 얘기를 나눠서 소액의 통역비로 통역사를 부르게 되는데, 통역이 매끄럽지 않고 질이 떨어져서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반 수어통역사가 아닌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교육에 문제없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S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이 부족하고 한국어 대응수어를 하고 있어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어통역을 잘하는 전문가들을 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잘 되면 그다음에 농인에게 맞는 전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참여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많은 프로그램들이 청인 대상으로 맞춰져서 진행되기에 참여하는데 벽이 많습니

다. 농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어통역을 잘 하는 사람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3)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현행 교육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배울 수 있길 희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직업으로의 연결은 쉽지 않았음을 토로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지부 수어통역센터에서 3개월가량 한국어를 배웠고, 다문화센터도 갔지만 한국어를 늦게 접한 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진도가 너무 느리고 답답함이 많아서 결국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4)

지금은 복지관이나 학습지원센터에서 같은 아주 농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3개월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어는 초, 중, 고급으로 나눠서 꾸준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은 한번 참여를 하면, 재신청을 한 후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진취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데 힘이 듭니다. (연구참여자 1)

교육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를 원할 경우는 단순노동의 일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화장품용기 회사를 야간으로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정도의 기술이나 교육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실에 맞는 기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에 참여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4) 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아주 여성 농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려 하지 않고 거의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녀 양육의 부담과 정부 지원금이 줄거나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남편의 반대로 인해 전문적인 일을 갖기도 쉽지 않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교육비가 부담되어 정부 차원의 교육비 지원이나 감면 혜택을 희망하였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에 단시간의 아르바이트는 허락을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건 남편의 반대가 심해서 많이 싸우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좀 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1)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에 반대가 심합니다. 이런 환경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2)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어 일을 하면 수급비가 줄거나 끊기는 것이 걱정되어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어려워요. 또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이대로의 생활이 좋다는 생각에 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결혼 이주자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부담이 됩니다. 교육비 감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4.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

1) 다문화 접근성이 강조된 교육과정 개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은 결혼 이주 농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학습과 체계화된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연구, 논의를 통해서 개발된 교안을 다문화 농인의 참여로 수 정과 보완이 이뤄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인을 위한 전문가가 양성되고 농인을 위한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희망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초 생활상식,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어-한국수어, 한국요리 등을 배우지만 생활법률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수어통역사가 아닌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차질 없이 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았는데, 지금은 청각장애인학습센터의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문화 접근성 교육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농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결혼 이후 농인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가르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

저는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문화 교육이 많이 진행되지만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얼굴 마사지, 한복 디자인, 가방 등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2)

프로그램이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농인을 위한 다문화센터나 농인을 위한 교육센터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2) 교육 대상자에서 전문가로의 도전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는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지금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대상자에서 자신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하였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하는 결혼 이

주 농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다문화 강사, 인권 강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다문화 강사, 농인 인권강사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싶고, 몽골에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교육을 배움과 동시에 경험을 쌓으면서 강사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1)

현재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관련 정책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에서 농인을 위한 사회복지사로서 농인들을 상담해 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2)

저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결혼 이주 농인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3)

현재 청인들과 농인들에게 수어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인들의 적응을 돋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어 수어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4)

3) 후배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을 위한 바람

연구참여자들은 후배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한국 문화와 한국어-한국수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반복적인 시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주 농인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하였다.

한국에 왔을 때 고립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한국어-한국수어, 문화 예절,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 및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수어통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다각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또 다문화 교육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연구참여자 1)

한국에 와서는 가정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인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한국수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긴급지원도 필요합니다. 청인들처럼 전화 통화가 가능하지 않기에 수어통역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농인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 정보화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3)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한국수어를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연구참여자 4)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의 의사소통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중심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고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으로서 경험한 삶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해 총 4명의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족 지원교육 참여 경험은 ‘한국 생활 적응단계에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다문화 교육 참여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변화를 위한 제안과 바람’으로 4개의 주제와 ‘낯선 한국을 이해하기엔 부족한 지원체계’를 포함한 14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경제적인 안정감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기대감으로 왔지만 남편이나 가족들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단절되어 빠르면 1~2년, 늦으면 2~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농아인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되어 지원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힘들게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고국에서의 직업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한국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어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외국인이면서 장애인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과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은 꾸준히 새로운 교육에 참여하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농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라는 소통의 방법을 공유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농문화로 인해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되며 심리적으로도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청각장애인 배우자를 선택해서 문화적 연속성을 추구하고자 한다(이미선,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생활문화를 배우며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교육 대상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과 같은 환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하였다. 특히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 참여 현장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고충과 현실적인 한계로는, 첫째,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의 장벽과 자국수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이중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이주한 참여자 2와 몽골에서 이주한 참여자 3이 경험한 많은 프로그램들 역시 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여 농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길 희망하였다. 둘째, 결혼 이주민들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 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문화적 영역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한국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데다 결혼 이주민 각각의

개별 상황과 원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농인과 관련된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과 실천적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 이주 농인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방문면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 이주 농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실행된다면 현행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타 기관들에도 지원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청인들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어통역을 잘하는 전문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결혼 이주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비 부담으로 희망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혼 이주자들을 위해 교육비 면제 및 인하 시행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등 다국어 수어통역으로 제작된 생활안내책자, 피해 예방(법률), 가정생활, 장애인정책에 관련한 수어 영상자료가 제작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 이주 농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서울 한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농인들에게는 학습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 지역 단위로 지부가 세워져 학습권에서 소외되고 사회와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농인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주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 농인들의 국적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원어민이 참여한 표준 교육과정 부터 전문 교육과정 교재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 결혼 이주민의 상황과 문화적 요구를 더욱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에 더하여 이주민들의 원 국가 언어를 활용한 양방향 언어 교육을 도입하여 언어적 적응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어민 강사 양성이다. 누구나 언어를 배우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습득한다. 결혼 이주 농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효과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문화 강사, 농인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표현한 연구참여자 1처럼 원어민 강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적인 시스템의 운영이다.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별 이주민의 적응 어려움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 농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 학습과 취업을 분절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합적인 학습 과정이 이뤄지도록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 이주 농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무자들은 결혼 이주 농인들의 언어적·문화적인 다양성과 사회문화를 접하며 문화와 언어의 벽을 경험할 수 있다. 실무자들이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한된 소수 사례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모든 결혼 이주 농인 여성들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생애사적 탐구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차원에서 결혼 이주 농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 김경진 (2004). 통합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농문화 인식 연구. 재활복지연구, 2, 69-85.
- 김선녀 (2013). 한국 이주 몽골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임춘희 (201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27-5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사회통합 정책. 인출 2024.4.30.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1/subview.do>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024). 사업안내. 인출 2024.4.30. https://slcd.or.kr/page/?M2_IDX=32295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 이미선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 이보라미 (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과. 새국어생활, 28(2), 1-30.
- 이성언, 최유 (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성희, 김나연, 김현수 (201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9, 1-25.
- 이영미, 이진숙 (2020). 청각장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젠더와사회, 31, 61-87.
- 이영미, 정임순 (2019). 결혼 이주 청각장애 여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54(2), 129-156.
- 이준우 (2020) 농인의 삶과 수화언어. 파주: 나남.
- 이준우 (2021). 역사적 변천에 따른 한국수어 번역의 형태와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508-524.
- 이준우 (2022).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수어 담화 내용 분석. 인문사회 21, 13(5),

2943-2957.

- 이준우, 박종미, 이진영, 김현숙, 김시내, 강이슬, 김건하 (2021). 2021년도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보고서.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문화 정체성에 미지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 수아동교육연구, 4(2), 99-120.
- 최희선 (2018). 한국의 다문화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경수 (2023).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교육 습득 과정의 경험.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uman, H. (2008). Listening to phonocentrism with deaf eyes: Derrida's mute philosophy of (sign) language. Essays in philosophy, 9(1), 41-54.
- Bishop, M., & Hicks, S. (2005) Orange eyes: Bimodal bilingualism in hearing adults from deaf families. Sign language studies, 5(2), 188-230.
- Groce. N. E. (2003). 마서드 비니어드섬 사람들은 수화로 밀한다(박승희 역). 파주: 한길사.
- Holcomb, T. K. (2021).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6). Demographics of deaf education: More students in more plac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1(2), 95-104.
- Preston, P. (1994). Chameleon voices: Interpreting for deaf parents. Social science & medicine, 42(12), 1681-1690.
- Schein, J. D. (2009). At home among strangers: exploring the deaf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cott, J. A., & Hoffmeister, R. J. (2017). American Sign Language and academic English: Factors influencing the reading of bilingual secondary school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Th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22(1), 59-71.



- Singleton, J. L., & Tittle, M. D. (2000). Deaf parents and their hearing childre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3), 221-236.
- Stake, R. E. (2013).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Guilford press.
- Yin, R. K.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원고접수 : 24.04.30.

수정원고접수 : 24.06.13.

게재확정 : 24.06.20.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InJi Yoon*, JunWoo Lee**

This study focuses on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To this end, it aimed to understand in which areas the Korean language-center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in which these women participated, was helpful and effective, as well as the difficulties and practical limitations encountered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conducting interviews with a total of four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he study results revealed four main themes: 'Difficulties in the Adaptation Stage to Life in Korea,' 'Difficulties Arising from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Challenges Faced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Participation,' and 'Suggestions and Hopes for Change,' along with 14 sub-themes, including 'Inadequate Support System for Understanding the Strange Land of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six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nd fiv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support the adaptation of deaf marriage migrant women to life in Kore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af culture.

Keywords: Deaf, deaf culture, married immigrant Deaf wome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education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1호 (통권 5호)

발행처 한국장애인재단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인 이성규

전화 02)6399-6235

팩스 02)6399-6238

홈페이지 <https://www.kfpd.org/>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순화동 바비엥3)

인쇄처 디자인이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공마리아(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주(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정창호(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복천(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